

山脈) 계통의 수력 전원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노동력, 공장부지, 운수 교통 등 기업 조건도 점차 구비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병진의 지표 하에 이룩될 군수산업의 발달은 틀림없이 비약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북선 방면은 동해쪽 일본과 북만을 잇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교통, 산업, 경제의 약진이 최근 현저하고 거기에 군사적인 중요성도 더하여, 금년도에는 그 중심 항만인 나진에 특수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군 당국과의 연락 협조 하에 현 시국에서 북선이 깊어질 사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 정신적 의미에서는 내선일체를 심화하고, 물질, 경제적, 또 군사적 의미에서는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총독부 시정 방침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 4. 지원병제도에 대하여

반도의 획기적인 시설인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특별한 취지로 창설되기에 이른 것은 참으로 시기가 적절했으며, 그 일반 인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실시 후의 성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모두가 기쁨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군 및 총독부 당국은, 반도인 청년자제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열정을 냉각시키지 않고, 제도의 정신을 더욱 보편화하여 장래 한층 진전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효한 준비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관련하여 양 당국은 항상 협심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사찰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보급, 민도의 향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반도 부인의 계몽과 유식계급의 분기를 촉구하여 우수하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자제가 속속 용감히 뛰어 임무로 향하는 긍지와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시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병사부의 창설은 그 장래에 기대되는 것이 심히 가볍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분려를 특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秘)

### 병사부장회의 일과 예정표

1939년 8월 15일 조선군 사령부

일 차	시 간		행 사	소요시간
8월 22일(화)	오전	9:00	- 군 사령관 고사	0.10
		9:10	- 군 참모장 구연	0.40
		9:50	- 군 보도부장 구연	0.20
		10:10	- 헌병대 사령관 구연	0.20
		10:30	휴게	0.10
		10:40	- 군 고급 참모 구연 (동원 및 특별지원병관계사항)	0.20
		11:00	-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0.20
		11:20	- 군 정보 주임참모 구연	0.20
		11:40	- 군 보도부 부원 강화(신문 검열에 관한 사항)	0.20
	오후	12:00	주식(晝食)	1.00

		13:00	- 간담	1.20
		14:20	- 총독부 학무국장 강화(총독 시정방침 기타)	0.40
		15:00	- 가이다(海田)대좌 강화(지원병 훈련 상황에 대하여)	0.40
		15:40	- 지원병 훈련소 견학	2.30(왕복 약 1.20 포함)
		19:00	회식	
8월 23일(수)	오전	8:00	- 일반 전황 강화(기타(喜多)참모)	0.40
		8:40	- 일영회담에 대하여(오바타(小幡)참모)	0.20
		9:00	- 간담	1.10
	오후	11:00	회식	2.00
		13:00	- 각 병사부마다의 간담	3.00
16:00		해산		
비고	1. 회의장은 용산 해행사로 한다. 2. 본 표는 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			

### 각도 선출자회의 일정 예정표

1939년 8월 10일 조선군 사령부

취지

군이 기도하는 청년 훈련, 특별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철저화하고 그 협력을 피하기 위해 병사부장회의에 연계하여 각도 선출자회의를 개최한다.

구분	일차	시간	행사	소요시간		
제1일	각도 선출자 회의	8월 21일	오전	8:00	해행사에 집합	0.30
				8:30	보도부장 인사	0.30
				9:00	오바타참모 강화	0.50
				9:50	휴게	0.20
			오후	10:10	기타참모 강화	0.50
				11:00	휴게	0.30
				11:30	주식	1.30
				자 1:00 지 3:00	총독부 과장 강화	2.00
제2일	병사부장 회의	8월 22일	오전			
			오후	3:00	가이다대좌 강연 지원병 훈련소 견학	
제3일	병사부장 과 선출자 회의	8월 23일	오전	11:00	회식	2.00
			오후	자 1:00 지 4:00	병사부 관구마다 집합하여 간담식으로 실시한다	
비고	1. 회의장은 용산 해행사로 한다. 2. 본 표는 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다.					

병사부장 및 보도와 각도 선출자회의 출석자 명부

1939. 8. 19 조선군 사령부

제1일(8월 21일)(월)		제2일(8월 22일)(화)		제3일(8월 23일)(수)		
군 사령부	보도부장	후지오(藤尾)소장	군 사령관	나카무라(中村)대장	대략 동상	
	참모	후타미(二見)대좌	군 참모장	기타노(北野)소장		
		야마우치(山内)대좌	참모	후타미대좌		
		오바타소좌		야마우치대좌		
		기타소좌		야마구치(山口)중좌		
	오카다(岡田)통역관	오바타소좌				
	부부(部附)	□소좌	기타소좌	부부		오야부(大藪)소좌
보도부 부원	아쿠다가와(芥川)소좌	오카다통역관	부관	나카오(中尾)대좌		
"		스기모토(杉本)소좌		기타니(木谷)소좌		
현병대 사령부		가토(加藤)중좌	보도부장	후지오소장		동상
총독부	□하라(□原)		동 부원	□소좌		
	학무국장		"	아쿠다가와소좌		
	노부하라(信原)		□□부원			
	문□과장			미야자키(宮崎)소좌		
	야기(八木)					
	학무과장					
	이토(伊藤)	오후부터	19사	참모	하시지마(橋島)대위	
	경무과장			사□	이시구로(石黒)대좌	
	모리(森)			보도부장	사가라(相良)대좌	
	학무국 사무관	오전 중에만		□병장	와타나베(渡邊)대좌	
□□□□과 사무관		동 부원		다케무라(武邑)중좌		
무라카미(村上)	내무국측	□병장		후쿠토메(福留)대좌		
무라□		동 부원	구리타(栗田)중좌			
총독부			20사	참모	스기모토중좌	
				보도부장	오카모토(岡本)소장	
				동 부원	이시가키(石垣)대좌	
				"	야스다(安田)대위	
				사□	니시무라(西村)대좌	
				경병장(京兵長)	에사카(江坂)대좌	
				동 부원	모리야마(森山)중좌	
				평병장(平兵長)	이구로(伊黒)대좌	
				광병장(光兵長)	가와무라(川村)대좌	
				대병장(大兵長)	요시모토(吉本)대좌	
		육군 장고장	요다(依田)대좌			
		현병□사령부	가토중좌			
		□하라 학무국장				

			총독부	가이다대좌 노부하라 문□과장 야기 학무과장 이토 경무과장 □□경무국속 무라카미 무라□ 내무부 속	동상 1일 동상 동상 1일
비고	1. 본회의에 출석한 각도 선출자 이름은 별지와 같다.		1. 군 사령부 출석자 중에는 담임한 사항에만 출석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 제3일의 각도 선출자회의는 해행사 아래층에서 실시한다. 단 병사부장회의에 열석하는 경우에는 동실로 한다.		

각도 선출자회의 출석 인명표				1939년 8월 18일 조선군 사령부	
병사구별	도별	주소	신분	씨명	
경성	경기 강원	개성부 춘천부 양구군 고대리 강릉군 읍내	부 부의장, 상회두(商會頭), 실업가 의사, 자산가 도의(道義), 지주 실업가	손홍준 이임수 최준용 박기돈	
	충북	영동 역전 청주부 내	목사 도의, 지주	이창재 김원근	
평양	평북	의주읍 신의주부 영정 강계읍 초산읍 용암포읍	금수(金水)조합 <sup>23</sup> 이사장, 사상보국연맹 지부장 변호사 실업가 "	고일청 이희적 김경희 김문걸 황관하	
	평남	평양부 안주읍 의천읍	변호사 교사 도 의	주간흠 정응수 최창호	
	황해	해주부 안악읍	" , 실업가 " , 지주	김상혁 김홍량	
		경북	대구부 안동군 풍산면	상업 "	서상일 이준태
대구	경남	의성읍 동래읍 사천읍	도 의 관 의 실업가	류시균 김동규 최연무	
		충남	예산읍 공주부 신태인읍	도 의, 실업가, 지주 목사 "	이종덕 엄재희 곽전근
	광주	전북	전주부 김제군	실업가 농업	양상경 임종환
전남		목포부 담양군 광주부 함평읍	도 의, 상업 " , 지주 부 의, 변호사 지주	김철진 국홍현 송화식	
		함남	함흥부 함주군	부 의, 실업가 농업	이재혁 한장경

		신고산읍	실업가	이용신
나남	함북	청진부 신암동	도 의, 실업가	이창인
		"	우편소장	조동운
		무산읍	도 의, 재목상	한계룡
		명천읍	" , 실업가	김익
		단천읍	실업가	김주근

병사부회의 제2일의 착석표

탁자

○나카무라대장

후지오소장◇  
오카모토소장◇

◇기타노소장  
◇학무국장

총 독 부 측	스기모토 중좌		니시무라대좌	사가라대좌		이시구로대좌	나카오대좌		후타미대좌	
	다나카 소좌		이시가키대좌			하시지마대위	야마구치중좌		야마구치중좌	
	이구로 대좌		야스다대위		후쿠토메 대좌		와타나베대좌	가토중좌		오바타소좌
	가와무라 대좌		에사카대좌				기타소좌			□소좌
	요시모토 대좌		모리아마중좌	구리타중좌		다케무라중좌	아쿠다가와 소좌		스기모토소좌	
	가이다 대좌		□다(□田) 소좌				오야부소좌		기타니소좌	
	이태완		양상경	류시균		정응수	고일청		미야자키소좌	
	한장경		임중환	김동규		최창호	이희적		오카다통역관	
	이용신		엄재희	송화식		김상혁	김경희		손홍준	
	이창인		곽전근	이재혁		김홍량	김문걸		이임수	
	조동운		최연무	김철진		서상일	황관하		최준용	
	한계룡		이종덕	국홍현		이준태	주간흠		박기돈	
	김 익								이창재	
	김주근								김원근	

지방측 방청석

주 : 총독부측은 오후 1시부터, 지방측은 오후 3시부터 동석하기로 한다.

<출전 : 「鮮內兵事部長會議書類提出ノ件」, 『密大日記』, 1939년 2월>

23) 금융조합과 금융조합.

#### 4) 히라야마(平山泰三), 『조선징병독본』(1943)

##### I. 징병제의 의의와 징병훈(徵兵訓)

###### 제1. 건군(建軍)의 본의와 징병제도

###### 1. 역사적인 조선의 징병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sup>24)</sup>이 일어난 뒤로 우리 황군은 대륙 몇 만 리에 걸쳐 아직껏 세계의 전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는 웅대한 작전으로 큰 전과를 거두면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성업(聖業)을 착착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결실을 맺고 황민화의 일도(一途)를 밟고 나가는 반도 동포에게 영예의 징병제도를 실시하기로 정부는 작년 5월 8일 결정한 이래 이에 따르는 그 개정 병역법도 이미 3월 1일에 공포되고 본년 8월 1일 즉 일청(日淸)전쟁 선전의 조칙봉대(詔勅奉戴) 기념일을 기하여 이를 시행, 오는 1944년도부터 제1년의 징집을 행하기로 되었으니 역사적인 조선의 징병제도가 드디어 완전히 실현하게 되었다.

2천 4백만 우리 반도 동포가 오랫동안 대망하여 마지않은 숭미(崇美)한 징병제가 이제 완성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일천만승(一天萬乘)<sup>25)</sup> 일시동인(一視同仁)<sup>26)</sup> 하옵시는 성지(聖旨)에 의함이니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하옵신 황은에 감읍하여 더욱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여 성은에 봉부(奉副)<sup>27)</sup>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제 징병제가 조선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랫동안 병역(徵兵制 : 징병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조선 사람으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국민다운 본의(本義)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남아의 의기를 보일 날도 머지않으며 이로부터는 내지(內地)<sup>28)</sup> 동포와 함께 국방의 큰 소임을 나누어 갖게 된 동시에 바야흐로 세계는 새 역사를 만들고 대동아건설의 위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일본 동포와 한 가지로 공을 쌓는 길이 열린바 되었으니 우리의 광영이 이에 더 큰 바 없다 하겠다.

###### 2. 조선에 징병제도실시의 의의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조선 사람이 황민(皇民)으로서의 그 자질이 향상한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 사람과 한 가지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를 열어줄 것이다. 우리 반도동포에게 병역이라는 귀중한 의무를 질 국방의 제1선에 일본동포와 함께 나감으로써 대동아의 신질서를 세우는 세기적 큰 사업에 그 추진력이 되고 충심(忠心) 노력(勞力)이 될 일본동포와 똑같은 우월한 지위(地位)를 조선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를

24)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말함.

25) 천자(天子)나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26) 모두를 평등(平等)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

27) 받들어 맞이함.

28) 식민지를 지배하는 본국으로서 일본을 뜻함. 이하 일본으로 바꿈.

□□□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하여 이 광영의 지위를 잘 보전하여 나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내선일체의 결실을 올리어 황민화하는 한 길이 있을 따름이며 그렇게 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적 자질의 연성(鍊成) 향상에 힘쓰고 내 자신의 실력을 충실하게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이 빛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의 임무를 잘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제국의 징병제는 고래(古來)의 철칙

제국의 징병제도가 정식으로 실행된 것은 1873년 1월 10일의 일이나 이보다 앞서 1872년 11월 28일에 징병령이 공포되었는데 그 때의 내각(內閣)인 태정관(太政官)은 칙(勅)을 받들고 전국에 고유(告諭)를 발하여 “우리나라 상고(上古)의 제(制) 해내거(海內擧)하여 병(兵) 아니 됴이 없나니 유전(有專)의 일(日)엔 천자(天子)가 원수되시고 장정(壯丁)으로 병역에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 복종치 않는 자를 치다”라 하여서 제국의 국민개병의 제도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인 것을 세상에 밝혔던 것이다.

그러므로 천황폐하는 국가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신 동시에 대원수 폐하가 되시어 국군을 거느리시고 국민은 모두 군대가 된다는 전통의 제도가 이미 조국(肇國)의 초부터 있었던 것이요, 다만 중세에 이르러서 병마(兵馬)의 권(權)이 무가(武家)의 손에 들어간 것과 같은 한 때의 변태(變態)를 이룬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메이지유신(明治維新)때에 다시금 옛날 제도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오늘날 세계에 비교할 데 없는 무적황군을 이루었음이 모두 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다 숭고한 국체 아래서 국민개병이라는 천고(千古) 부동(不動)의 전통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바이니 저 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징병제도와는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천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 4. 병역의무와 군인정신

매번 한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그 국민이 그 나라를 수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 남아로서 군문에 들어 국가방위에 서고 내 나라의 독립과 영창(永昌)을 확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남아로서 떳떳한 일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어 이것이 값있는 존재라 하면 그야말로 거룩한 존재일 것이니 따라서 국민된 자가 병역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영예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니 그러므로 병역은 의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에 있어 도의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한 관념을 저 외국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관찰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있어서 달리하는 바가 있다. 소위 문명강국이라 자궁하고 있는 미영(米英)의 무리를 두고 보더라도 저들은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한낱 진보된 한 개의 사회조직의 관념에서 행하여지는 책임관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절대로 황군이 가지고 있는 군인정신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충효는 대체로 국가도덕의 줄기가 되고 병역의무에 가장 근본정신이 되는 것인데 제국군인은 최후까지 신명(身命)을 걸어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忠誠)을 다하여 군국에 보답하려는 독특한 군인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은 준엄한 국체 아래에 오랜 전통과 훈련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충의의 정신이라. 이것이 곧 일본정신이니 저들 외국에서는 도저히 시늬도 낼 수 없는 바이며 제국의 징병제도도 그 본

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장렬한 육탄 용사도 될 수 있고 진주만 특별 공격대의 구군신(九軍神)이 되어 내 생명을 군국(君國)에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오랫동안 더욱이 이조(李朝) 500년간에 너무도 문(文)에 기울고 무(武)를 멀리한 탓으로 문약(文弱)에 빠져 용무(勇武)의 기풍이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지금이야말로 국민개병의 군국정신에 스스로 불타게 하여서 대동아의 지도자가 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을만한 정혼(精魂)을 기르고 국민적 자질을 연성할 절호의 때라고 믿는다.

## 5. 황군의 전쟁은 정의의 성전

제국은 도의를 조국(肇國)의 이상으로 하고 건군의 본의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황군의 전쟁은 정의의 성전이 된다.

진무(神武)천황께서 고대의 어동정(御東征)하신 사실(史實)도 악한 무리를 처벌하시고 천하의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려는 팔굉일우(八宏一宇)<sup>29)</sup>의 대정신에 행하옵신 정의의 성전이셨다. 이리하여 황군의 싸움이 예로부터 도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의의 싸움인 만큼 항상 천우(天佑)와 신조(神助)가 따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일청(日淸)전쟁이나 일러(日露)전쟁이 모두 다 이러한 전쟁이념에서 행하여진 정의의 성전이어서 당시 어려운 전쟁이었으나 큰 승리를 얻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며 이번에 국운을 걸고 싸우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sup>30)</sup>도 저 무도한 미영의 나라를 쳐 없애고 세계만방으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팔굉일우의 도의정신에서 행하는 정의의 성전인 것이니 지금 동아의 10억 민족은 바야흐로 일본의 황도정신에 깨우친바 되어 미영의 포악한 질오(桎梏)를 벗어나고 공존공영의 큰 깃발 아래에 세기의 대 진군을 하고 있는 중이라 황군장병의 의기는 더욱 충천(衝天)하고 ‘전필승공필취(戰必勝功必取)’의 큰 전과를 거두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 6. 군문(軍門)은 국민교육의 아성도장(兒成道場)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국방국가를 이루는데 전투력을 만들기 위하여 그 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군대 교육을 시키고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황군의 군대교육은 단순히 국방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본시에 있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군대교육을 받게 하여 일본정신을 기초로 하는 국민교육의 완성을 꾀하고 일단 유사한 때에는 국가의 간성(干城)<sup>31)</sup>이 되도록 기른다.

즉, 황군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될 군대의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정의의 실천자가 되고 성전에 나아가서 훌륭히 싸울 전사가 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심신을 단련시키고 기르게 함으로써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어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용사가 되게 하고 평시에 군문을 나오면 심신이 건전한 청년으로 내 지방의 중견(中堅)청년이 되어 후진(後進)의 모범이 되므로 자연히 군문은 국민

29) 온 천하가 한집안이라는 뜻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건 구호.

30)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뜻함.

31)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교육을 완성시키는 국가적 도장이 되어 일국의 사기가 진작되고 국민적 자질은 연성 향상하게 된다.

## 7. 병영(兵營)은 군인의 일대 가처(家處)

징병제 곧 병역은 국가가 국민에게 똑같이 준 지극히 공평한 영예인고로 군문에 들어가게 되면 부가(富家)의 자질이나 빈가(貧家)의 자질이나 귀족이나 상인을 막론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취급을 받고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없이 군대생활을 같이하여 고락(苦樂)을 한 가지로 하게 되므로 한 집안, 한식구와 같이 된다.

그러나 군대의 본령이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절대의 명령계통을 세우고 질서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 위로는 원수로부터 아래로는 일병(一兵)에 이르는 군대의 계급이 마련되고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나 그 정의는 서로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여 한가지로 군국에 바칠 전사의 몸이어서 부자와 형제간과 같은 육친의 정을 이루고 지나므로 병영의 생활은 한 가정을 연장시킨 것과 같고 그 부형(父兄)들은 안심하여 내 아들 내 동기를 병영에 넣게 하고 훌륭한 군대교육을 마친 뒤에 씩씩한 용사가 되어 나오는 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 8. 병역의 사명과 조선인의 각오

징병제도의 사명과 조선에 실시될 징병제의 진의(眞意) 또는 조선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각오의 요념(要念)은 대강 이상 말한 것과 같거니와 사실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조선의 징병제도는 앞으로 닥쳐온 실제의 큰 문제일뿐더러 반도동포로 하여금 최초의 중대(重大) 시련(試鍊)이 되고 그 성과 여하에 있어서는 직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장정을 뽑는 징집병 제1년에 있어 광영의 문에 들어갈 청소년의 책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직접 광영의 문에 들 청소년 자제의 부모 되는 분이 나, 친척 선배 되는 이에게 있어서도 그 책임이 또한 극히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일반의 찰정(察庭)도 자못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빛나는 첫 시련의 징병제가 반도에서 꽃이 피고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자면 끝임 없는 노력으로 숙련을 쌓아야만 비로소 이를 수 있는 것이라 믿으며 무엇보다도 조선 사람은 명실공히 일본 사람과 같은 수준에 들도록 하여야 하는데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은 일본정신의 진수를 바로 파악하여 국민적 자질의 연성 향상에 힘을 써서 내 자신의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역의 징집에 응할 당면의 문제로 가장 급하고 긴요한 것은 징병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계몽과 지도에 힘쓰며 먼저 군제(軍制)의 내용이라든가 병역에 관한 법의 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식으로 이해하고 징집에 응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징병지도의 요건이라 믿는다.

## 제2. 징병지도에 대한 준비요령

### 1. 징병 적령자의 심득(心得)<sup>32)</sup>

32) 충분히 이해함.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 사항.

이번 시행 되는 조선의 징병제는 1944년도부터 실시되어 1944년의 징병 적합자로부터 뽑(徵集 : 징집)는다. 1944년의 적령자라는 것은 1913년 12월 2일부터 1914년 12월 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를 이름인데 이 적령자 이후의 청소년은 매년 그 해에 적령이 됨을 따라서 징집하게 되고 그 이전의 청년, 즉 1913년 12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조선 사람은 법률상으로 병역관계에 있어 특별히 자진하여 군이된 자는 열외이지만 그 외의 일반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1944년의 적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호주가 호적관계를 충분히 정비해 두었다가 금년 10월 초 1일로부터 11월 말일까지의 기한 안에 징병 적령계를 본적지(本籍地)의 부윤(府尹)이나 읍면장에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징병적령계는 군대에 뽑힐 나이가 되었다는 신고인 것이다.

이 징병적령계를 본적지의 부윤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본적지에서는 그 적령계와 호적과 대조한 다음 그 해의 징병조사를 받을 청년이 각 지방마다 얼마나 되나 하는 그 인원수를 똑똑히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결정되면 이것을 본인에게 어느 월 어느 일에 어느 징병조사소(징병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또 징병검사를 받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하면 본적지주의로 되어 있는 것이로되 타 지방에 기류(寄留)<sup>33)</sup>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기류지에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지원(志願)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기류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 징병조사와 징집요령

징병검사는 대체로 예년 4월 중순경으로부터 7월말까지의 사이에 적령자에게 출두를 명한 날 하루 정도에 행하되 징병검사의 내용으로 말하면 신체(體)자격검사와 신상(身上) 조사 및 병역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인데 체격상황을 군의(軍醫)가 자세히 검분(檢分)하여 그 체격에 따라서 갑종(甲種), 을종(乙種), 병종(丙種), 정종(丁種), 무종(戊種)으로 판정한다. 또 그 중에서 을종을 다시 제1, 제2, 제3을종(乙種)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 체격에 대한 등위를 판정하여 어느 병종(兵種)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니 곧 체격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현역에 적당하는가 보충병역에 적당하는가 하는 그 병종에 해당할 순위를 결정할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병종을 결정하되 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신상을 조사하여 당자의 특기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도관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군대에 있어서도 철도병으로 입대시켜 본인의 특기를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며 기술관계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육군기술부병으로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등 본인의 기능에 따라서 선병(選兵)이라는 것을 행한다. 또한 가정 사정이라는 것도 자세히 조사하여 결국 어느 병역의 종류로 하여 입대 시킨다는 것이 결정하게 된다. 이리하여 징병검사의 결과로 현역병이라든지 보충병이라는 것을 그 해의 8월부터 9월경까지는 결정하여 그 해 12월 다음해의 4월 안에는 각 부대에 배속을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1944도의 제1년의 징집으로 현역병이 될 장정은 1945년 4월까지의 사이에 입영하게 되는데 입영부대는 아마도 전부가 한 부대로 가기 어려우리라 믿는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원적지(原籍地)

33) 다른 지방이나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살. 법률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일.

주의이므로 원적지에 가까운 연대에 입영하게 되지만 조선 안은 아직 부대수가 적은 관계로 그 부대가 한 부대에 입영하기가 어려울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조선 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만주나 지나 방면, 또는 남방까지라도 일본인 초년병이 가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부대라도 가입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밖에 약간의 특례도 있으니 그것은 징병적령전의 청년 즉 20세 미만이 된 사람이라도 17세 이상의 청년이 자진하여 현역병을 지원한다면 현역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물론 일반의 징병과 똑같이 검사를 받고 합격되어 채용된 자에 한하는 것이며 또 징병 적령에 있더라도 현재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그 학교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징집을 연기도 한다.

대체로 보통, 진학한 사람이면 각각 그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으나 중도에 낙제를 하였다든가 혹은 오랫동안 이 학교로 저 학교로 같은 정도의 학교를 전학해 다녔다면 별 문제로 하고 보통으로는 전문학교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징집연기를 허가하기로도 되어 있고 이것은 재학징집연기구분에 의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본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가족이 생활 할 수 없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그 징집하는 것을 연기함과 같은 특별한 취급도 하는 수가 있다.

### 3. 호적정비와 기류계(寄留屆)의 필요

첫째로 준비를 급히 해두어야 할 것은 호적의 정비인데, 병역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가장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자는 것이 기초가 되어있는 만큼 이 공평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것이나 특히 중시되고 있는 호적문제는 지역적인 부담에 큰 관계가 되어 있다. 그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점으로만 본다면 대단히 체격이 좋은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군대로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가령 서울의 장정이 체격이 좋지 아니하면 적게 뽑고 농촌의 장정이 좋으면 거기서 많이 뽑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지방에서는 펍 많이 뽑게 되고 어떠한 지방에는 적게 뽑게 되는 현상이 될 것이므로 국민의 숭고한 의무를 공평히 지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사기와 군로(軍路)상으로 보아서도 자못 아름답지 않게 된다.

이번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던지 사변이 있을 때에 어느 지방에만 출정군인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어느 지방에만 전상병(戰傷兵)이 많이 나게 된다면 병역의 영예를 주는 점에서도 불공평한 일이고 생명을 걸고 봉공하는 중대한 임무에 대한 부담의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며 또한 산업방면으로 보더라도 한 지방에만 인적 부담을 편벽되게 하는 일이 자못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전국이 같은 비율로써 징집하여 지역적으로 병역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지역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는 기초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은 호적을 충분히 정비하여 놓고 어느 지방에 얼마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군대를 가장 공평히 뽑기 위하여 징병구(徵兵區)를 두고서 그중에 몇 '퍼센트' 혹은 몇 '십 퍼센트'를 정하여 뽑는다. 그리고 그것은 원적지(原籍地) 본위로 하는 것이므로 호적을 본적지에서 잘 정비하여 놓는다면 공평한 산업이라든지 징병의무에 대한 지역적 부담이 근본적으로 잘 될 것은 물론인 일이며 이렇게 하는 데는 호적정비가 가장 필요성을 갖게 된다. 또 한 가지의 주요한 것은 현재에 어디 있다 하는 기류(寄留)의 계출(屆出)을 태만히 하지 말고 소재를 밝혀 놓아야

한다. 더욱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본적지를 떠나 있을 때에는 기류령(寄留令)에 의하여 바로 기류계(寄留届)<sup>34)</sup>를 기류지의 부윤(府尹)이 나라 읍면장에게 내놓지 아니하면 안된다.

#### 4. 국어보급의 급무

황국신민으로써 국어<sup>35)</sup>를 잘 모른다는 것은 한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데 더욱이 군대에 나가서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고 장래에는 대동아의 지도자로서 크게 웅비(雄飛)할 청년이 국어를 잘 해득(解得)하지 못하고는 동아 모든 민족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이 사실이며 물론, 국어를 알고 모르는 것과 군대로 뽑는 징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국어를 못하여도 규격에 맞는 사람이면 전부 뽑게 되는 것이니 국어를 모르고서 입영한 본인이 먼저 고생이 될 것이오, 여러 가지로 곤란을 받게 될 것은 사실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을 시키는 이도 따라서 고생이 적지 아니할 것이며 부대에서도 국어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는 믿으나 황군은 목하(目下) 큰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비상시에 있어 군대에 들어간 뒤에 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도 성의 없는 일이고 국가에 대해서도 미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국어를 모르면 부대에서 자기 집으로 편지를 낼 수도 없게 된다. 그것은 언문 글씨로 된 편지는 부대에서 못 내게 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걱정이 될 것이며 본인은 물론이오, 가정의 부형(父兄)되는 이도 국어로 쓴 편지를 읽을 못하고 말할만한 정도의 국어만은 해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5. 병역봉공과 가정관계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다 마치고 못하는 데에 가정의 힘이 자못 중대한 관계가 되어 있다. 군대에 들어가는 당사자의 각오로만은 그 임무를 다하기가 어려운 바가 있다. 첫째 가정에서 병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잘 성원해주고 전혀 뒤를 돌아볼 염려가 없이 다만 봉공에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병역에 대하여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군대가 세계에서 최강의 힘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군인정신에 있는 소이(所以)이거니와 또는 싸움터로 나아가는 출정군인이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됨이 없이 안심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도리어 가정에서 싸움하러 나아가는 군인을 고무(鼓舞)하고 편달하여 주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내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가정에서는 한층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여기에는 어머니의 힘이 더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영과 입소자의 상비훈련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대로 뽑혀 들어가기 전에 미리부터 총질이라든지 검술을 배우지 않고는 입영한 뒤에 곤란을 겪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바이나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34) 기류한다는 뜻을 그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

35)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입대하기 전에 이러한 예비훈련을 충분히 갖고 있다하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나 그것을 모른다고 입대하여 곤란을 받을 것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입대한 뒤에도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군대에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군대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 6. 징병검사와 수검자(受檢者)의 주의사항

### 1) 징병서(徵兵署)에 출두까지의 주의

징병검사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대의 명예이고 또 중대한 의무일뿐더러 국민의 일생에 있어서도 가장 신성한 행사의 하나가 되는 만큼 수검자는 미리부터 심신을 연성시키어 갑종(甲種) 합격을 목표로 하고 제정(濟淨)한 기분과 씩씩한 마음으로써 수검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1) 건강상의 주의 - 군인에게 군인정신이 가장 큰 근본조건이 될 것은 다시 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징병의 첫 조건이 신체에 있는 만큼 신체를 단련시키어 튼튼하고 훌륭한 체격이 되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든지 혹은 신체가 약한 사람은 미리부터 건강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고 검사 일까지는 기어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2) 의복과 용의(容儀)

수검할 전날에 꼭 입욕(入浴)하여 신체를 정결하게 씻고 두발도 짧게 깎은 후 복장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민복이나 청훈복(靑訓服)같은 것을 입고 질소(質素)하게 하여 예의에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마다는 볼기와 양각(兩脚)의 관계 등을 검사하는데 부당하므로 뒤를 좁게 털 훈도시를 차는 것이 좋다.

(3) 휴대품 - 신체검사와 한가지로 필요한 서류도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는 잊지 말아야 한다.

①징병검사 통달서, ②청년학교수첩, ③학교교련합격증서, ④학교졸업증서, 기타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자동차 운전수, 항공기 승원등의 직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기술증명서. ⑤각 원서류(가부후보생 채용원등)등을 제출하는 자는 그 원서에 날인(捺印)한 것과 동일한 인장. ⑥검사할 때 의복을 벗어서 쌀 보자기와 점심(도시락)

### (4) 기타의 주의사항

①검사의 일시를 틀리지 말 것 - 검사통달서에 적힌 출두의 일시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한 시각에 지참(遲參)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외방(外方)에 가 있는 자로서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고향에 돌아온 자는 반드시 검사 마칠 전날까지에 귀성(歸省)하여 소할(所轄)의 부청(府廳)이나 읍면 사무소안의 병사계에 제출(届出)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하라.

②자기 신상을 양지하여 들 것 - 호적에 관계된 일과 기타 자기의 신상에 관하는 일에 대하여 물음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대답하도록 다음과 같은 것은 미리부터 잘 알아 두어야 한다.

본적지(기류자는 기류지도), 호주(戶主)와 속병(續柄), 씨명과 직업, 학력, 교련의 합격 불합격 기타 필요사항.

③사고로 하여 검사에 출두 못하게 되는 경우 - 상이(傷痍), 질병(疾病), 범죄,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에 출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사를 담당한 자로부터 부윤(府尹) 또는 읍면장에게 이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출서는 법규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고 경우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와 헌병 또는 경찰관사의 증명서를 요하게 된다.

## 2) 징병서에서의 주의

수검자는 절대로 정각에 늦지 않도록 징병서에 출두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고 또 징병관의 허가 없이 징병서를 자의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사 개시함에 당하여 징병관이나 병사부장 병사관 등의 훈시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일(一) 정숙(靜肅)히 듣고 그 교훈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사할 때의 주의 - 검사를 시작하게 되거든 사어(私語)나 담소를 그치고 정숙히 계관(係官)의 지시를 좇아서 자기의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되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주의하여 보아 틀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학력고사를 행할 때에는 필기나 해답을 정확 명료히 하고 구두(口頭) 시문(試問)에 대해서는 동작을 바로하고 민활(敏活)히 하여 명쾌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체격과 체력 조사 때의 주의 - 내 순번이 되어 계관이 부르거든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관의 앞에 나아가서 각각 검사를 받되 계관의 물음에는 조금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동작 등은 구두시문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하고 민활히 가져야 한다.

## 7. 칙유(勅諭)의 5개조와 군인의 수덕(守德)

황송하옵게도 메이지(明治)천황께서 군인에게 내려주신 칙유에 특히 '짐(朕) 이렇게도 깊이 너희들 군인에게 바라매 더 훈유(訓諭)할 것이 있다.'하시고

- 군인은 충절(忠節)을 다함을 본분으로 하라.
- 군인은 예의(禮義)를 바르게 하라.
- 군인은 무용(武勇)을 숭상하라.
- 군인은 신의(信義)를 중히 하라.
- 군인은 질소(質素)를 지(旨)로 하라.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칙유의 5개조야말로 제국 군인이 폐부(肺腑)에 깊이 새기어 실천하는 군인정신의 정수(精髓)인 것이며 적어도 제국군이 된 자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고마우신 어훈유인 것이다.

칙유에 말씀하신 군인정신을 참으로 정성껏 지키고 행하면 그것으로 군인이 된 자는 충분한 것이나 군인으로 잘 알아 두어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행하여야만할 군인의 심득(心得)<sup>36)</sup>이 있다.

1) 군기(軍紀) - 군인이 규율을 엄수하고 상관(上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여 협동일치로써 군무

36) 충분히 이해함.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 사항.

에 힘을 써야 한다. 군기는 군대를 성립시키는 본줄기가 되고 군의 명맥이 된다.

2) 풍기(風紀) - 군인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 군대의 체면과 위신을 보(保)하는 군대의 풍의(風儀)를 이름이니 군인은 군의 풍기를 엄숙히 지키고 바르게 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해야 한다.

3) 복종(服從) - 때와 장소를 물을 것 없이 절대로 상관의 명령에 좇아서 지성으로 실천함에 있다. 상관에 대한 절대의 복종이 있고야 적진을 뚫고 탄환우비(彈丸雨飛)하는 속이라도 용진(勇進) 불퇴하여서 적을 쳐 멸하고 우리의 승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4) 견인불발(堅忍不拔) - 어떠한 신고(辛苦)와 난관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참고 감당하여 이기어 나갈 수 있는 심신을 기르고 단련하여야 한다.

5) 협동일치 - 서로 힘을 모으고 심(心)을 합하여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상하가 서로 믿고 치하며 자기의 불리(不利)는 서로 참아가면서 희생적 정신으로 전우를 도와가며 자기의 임무에 전력을 다하는데 비로소 협동일치는 이루어진다.

6) 공격정신 -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자진하여 적을 공격하고 쳐부수려 하는 기개를 이름이니 이 정신은 물론 충군애국의 지성에서 나오는 군인정신일 것이나 또한 무아(無我)의 지대한 신앙심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니 평소 때부터 이러한 왕성한 기백(氣魄)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필승의 신념 - 황군이 출사하여 아직껏 한 번도 패해 본적이 없고 황군이 출동하는 것은 천명에 의하는 정의의 사(師)이므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 가져야 한다.

## 8. 제국군인의 본령

황국육군의 본령이 어떠한 것인가 대하여 그 일례로써 보병(步兵) 조전(操典)중에서 그 강요(綱要)를 제출하여 아래에 기하기로 한다.

1) 군의 주로 하는바 전투다. 고로 만사가 모두 전투로써 기□(其□)으로 할 것 그리고 전투 일반의 목적은 적을 압도 섬멸하여 신속하게 전첩으로 획득함에 있다.

2) 전첩의 요(要)는 유형무형의 각종 전투 요소를 종합하여 적의 위력의 요점에 집중발휘시킴에 있다. 훈련 정도(精到)하고 필승의 신념으로 군기(軍紀) 지엄하여 공격정신 충일(充溢)한 군대는 능히 물질적 위력을 능가하고 전첩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필승의 신념은 주로 군의 광휘 있는 역사에 근원하여 주도한 훈련으로써 이것을 배양하고 탁월한 지휘통수(指揮統帥)로서 이것을 충실히 한다. 혁혁한 전통을 가진 국군은 더욱 충군애국의 정신을 지려(砥礪)<sup>37)</sup>하고 더욱 훈련의 정열을 거듭하여 전투 참렬(慘烈)의 극(極)이 소지(所至)하더라도 상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의연(毅然)히 필승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4) 군기는 군대의 명맥(命脈)이다. 군기가 있고야 전장이 이르는 곳마다 경우를 달리하고 또 제종(諸種)의 임무를 가진 전군으로 하여금 위로는 장수로부터 아래로는 일병에 이르기까지 맥락 일관 능히 일정한 방침에 따라 중심일치(衆心一致)의 행동에 취하게 할 수 있나니 즉 군기의 이장(弛張)은 실로 군의 군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기의 요소는 복종에 있다. 고로 전군의 장병으로 하여금 신명

37) 학문이나 품성 따위를 갈고 닦음.

(身命)을 군국에 바쳐 지성상장(至誠上長)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확수(確守)함으로써 제2의 천성을 이루어야 한다.

5) 범병전(凡兵戰)의 사(事) - 독단을 요하는 바 번다하다. 그리고 독단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결코 복종과 상반하는 바가 아니다. 항상 상관의 의도를 명찰(明察)하여 대국을 판단하고 상황의 변화에 응하여 스스로 그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최량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기의(機宜)<sup>38)</sup>로 제(制)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군대는 항상 공격전 정신이 충일(充溢)하고 지기(志氣) 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격정신은 충군 애국의 지성에서 발하는 군인 정신의 정화(精華)이며 공고한 군대 지기(志氣)의 표징(表徵)이다. 무기에 의하여 정(精)을 이루고 교련에 의하여 광(光)을 방(放)하고 전투에 의하여 승리를 거둔다. 생각건대 승패의 수는 반드시 병력의 다과(多寡)에 의하지 않고 정련(精練) 또 공격정신이 풍부한 군대는 능히 부족함으로써 무리(衆)를 격파할 수 있는 까닭이다.

7) 협동일치는 전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 병종(兵種)을 물론하고 상하를 불문하고 육력협심(戮力協心) 전국일체의 실을 거하여야만 비로소 전투의 성과를 기할 수 있으며 전반의 정세를 고찰하여 각기 전책(戰責)을 존중하고 일의(一意) 임무의 수행에 노력함은 즉 협동일치의 취지에 합당하는 바이다. 그리고 모든 병과의 협동은 보병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시킴을 주안(主眼)으로 하여 이를 행함으로써 본의로 한다.

8) 전투는 만근(輓近)<sup>39)</sup> 대단히 복잡하여 강인(強韌)의 성질을 띄우고 또 자재의 충실 보급의 원활은 반드시 항상 이것을 바랄 수는 없다. 고로 군대는 견인불발(堅忍不拔) 능히 곤고결핍(困苦缺乏)에 견디고 난국을 타개하여 전점의 일도(一途)에 매진함을 요한다.

9) 적의 의표(意表)에 출(出)함은 기(機)를 제(制)하여 승리를 얻는 요도(要道)이라. 고로 왕성한 기도심(企圖心)과 추수(追隨)를 허하지 않는 창의와 신속(神速)한 기동으로써 적에 임해야 항상 주동의 위치에 서고 전군이 서로 계엄(戒嚴)히 아군의 기도를 비닉(秘匿)<sup>40)</sup>하고 곤란한 지형과 천후(天候)라도 극복하여 질풍신뢰(疾風迅雷)<sup>41)</sup> 적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할 책이 없게 함이 긴요하다.

10) 지휘군은 군대 지휘의 중추(中樞)이며 또 단결의 핵심이다. 고로 상시 치열한 책임 관념과 공고한 의지로서 그 직책(職責)을 수행함과 같이 고매(高邁)한 덕성을 겸비하여 부하와 고락을 같이 하고 출선공행(率先窮行) 군대의 의표(儀表)로 그 존신(尊信)을 받아 □뢰탄우(□雷彈雨)의 속에 서서 용맹(勇猛) 심착(沈着) 부하로 하여금 우러러 부□(富□)의 중함을 위(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하지 않는 것과 지의(遲疑)<sup>42)</sup>함은 지휘관이 가장 경계할 바다. 이것이 양자의 군대를 위태에 빠지게 하나니 그 방법을 그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심한 것이 있다.

11) 보병은 군의 주병이며 모든 병종협동의 핵심이 되어 항상 전장에 있어서 주요의 임무를 부담하

38) 시기나 형편에 알맞음.

39)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40) 은닉.

41) 심한 바람과 번개라는 뜻으로, 빠르고 심하게 변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42) 의심하고 주저함.



고 전투에 최종의 결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병의 본령은 지형과 시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투를 실행하고 돌격으로써 적을 섬멸함에 있다. 그리고 보병은 비록 타 병종의 협동이 결여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병은 항상 병기를 존중하고 탄약(彈藥) 자재(資材)를 절용(節用)하여 애호할 것이다.

12) 전투에 있어서 백사(百事) 간단하고 또한 정련한 자가 능히 성공을 기할 수 있다.

전령(典令)은 이 취지에 기하여 군대 훈련상 주요한 원칙과 제식(制式)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의 운용(運用)의 묘(妙)는 하나로 그 사람에게 있다. 물론 합부로 전칙(典則)에만 □하지 말고 또 이에 구속되어 실효(實效)를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공부를 쌓아 창의(創意)에 면(勉)하여서 천차만별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략)

### Ⅲ. 병역법의 요의(要義)

#### 제1. 병역의무자

##### 1. 병역의무

###### 1) 병역법의 요념(要念)

병역제도 곧 병역은 국민이 당연히 저야할 국방에 대한 일반적 의무가 되므로 국민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병역에 대한 내용과 이것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둘 필요가 있다.

제국의 병역법은 헌법 제20조에 기본해서 국방에 필요한 전투력을 구성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인적 책무의 부담을 규정한 법률인 것이며 통칭하여 병역법이라 하면 병역법과 이에 따르는 부속법령을 총칭함이 된다.

###### 2) 병역과 병역의무의 의식

병역 곧 징병제도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전투력을 구성시키고자 국민으로 하여금 충성한 용무(勇武)의 정신에서 행할 인적 책무의 부담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민이 그 책무의 부담을 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군무(軍務)에 복역할 의무가 병역의무인 것이다.

국가는 군비의 목적을 위하여 때론 경제적 자원의 급부(給付) 또는 인적 자원의 징발과 같은 것을 명령하되 병역 의무는 순수하게 군문에 들어가서 군무(軍務)에 복역하는 것이니 헌법 제20조에 '일본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좇아 병역의 의무를 유(有)함'이라하여 헌법상으로 규정한 병역의 의무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방의 본분을 국법으로 정한 것이어서 제국 신민된 자는 노약남녀를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병역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헌법상으로 본 의미의 병역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국가의 전력을 '유효 적절히 구성시키는 데에 있어 병대(兵隊)가 되고 또 병대가 될 지위 상태에 있게 할 그 의무와 범위와 종류 등을 일정한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어 이 법률에 의하는 병역의 의무가 법률상의 병역의 의무인 것이니 보통 가리켜 병역의무라는 것도 이것을 이름이다.

### 3) 병역의 총력범위

일본(内地)·사할린(樺太)·조선·대만의 제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은 병역법중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종래의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 곧 징병제는 일본인에 한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여 있기 때문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국신민의 남자는 법령의 정한 바의 자격에 따라서 지원에 의하여 군인이 되는 길이 있을 뿐이었고 이에 의하여 군인이 된 때에는 스스로 병역의무의 권내(圈内)에 들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광영의 징병제가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한 결과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라 하였으므로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 조선인도 일본인과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 4) 조선의 징병제와 병역법중 개정의 요점

제국의 병역사상에나 조선의 역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조선의 징병제가 대동아전쟁하에 실현됨에 따르는 병역법 중의 개정된 주요 목적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과 똑같이 숭고한 의무를 갖게 하여 영예의 병역에 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요점은 종래의 병역법에 의하는 병역의무의 부담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일본호적법에 상당한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이라는 조항을 병역법 중에 가한 점이나 곧 병역법 중 제9조 제2항과, 제23조 제1항 중에 '호적법' 밑에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가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담할 것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할 때까지에 징병 적령을 지난 사람은 그 전대로 병역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부칙(附則)에 의하여 규정한 바 되고 또 1943년 12월 1일로 징병 적령이 되는 만 20세의 반도인 장정은 조선인 징병제도의 최초의 적용을 받아 1944년도 징집병으로서 동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서 입영하게 되든지 또는 제2국민 병역으로서 병역의 의무에 복무하게 된다.

1943년 3월 1일부(법률 제4호) 병역법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9조 2항과 제23조 1항 중 '호적법'의 하에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을 가함.

병역법 제9조 제2항

제2국민 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상비병역 보충 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자 이에 한함

### 5) 병역의무의 성질

병역의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헌법상에 상정된 국민의 2대 의무의 하나이고 법률상으로 보아 병역의무는 강제징병제로 되었으며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 (1) 징병의무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로서 또한 충성을 요하는 의무이다.
- (2) 징병의무는 국민이 저야할 일반적 의무이나 법률상으로 특히 남자에 한한다.
- (3) 병역의무는 절대로 거부 못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 (4) 병역의무는 대리인이나 또는 대상(代償)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의 의무이다.
- (5) 병역의무는 자연인에 부과하는 개인의 의무로서 일가나 또는 법인에게는 과하지 아니한다.

## 6) 병역법의 목적

병역법은 국방국가의 무력체제에 있어 인적 책임의 부담을 규정한 법률인 것이나 또한 근본 조건은 국민의 의기와 신체를 평상시에 연성(鍊成) 훈육(訓育) 하여서 일국의 용무(雄武)의 풍(風)을 보지(保持) 하게 함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니 요컨대 유사( 유사)의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게 하고 평상시에는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게 하는 국민적 자질의 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 2. 병역의 의무자

### 1) 병역의무자의 의의와 종류

병역의무자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이룸이며 그 병역의무자라는 것을 이룸이며 그 종류를 대별(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 (1) 징집에 의하여 병원(兵員)이 되고 또는 병원이 될 지위와 상태에 있는 자.
- (2) 지원에 의하여 군인이 되고 병적에 편입된 뒤 병역의무자의 범위에 들어간 자

### 2) 병역의무자의 자격

(1) 징집병원 -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자로 연령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졌다.

제국신민인 남자는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함.(병역법 2조)

제1국민병역의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에 한함  
제2국민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로써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 병역에 있지 아니하는 연령 17세로 40세까지의 자에 이에 복무함(병역법 제9조)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년 12월 1일로부터 그의 년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 연령 20세에 달하는 자는 본 법중 별단(別段)의 규정 있는 것은 제한 외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요함.

전 항에 규정한 연령은 이를 징병적령이라 칭함.(병역법 제23조)

주(註) : 밑줄은 병역법중 개정된 점. 단 개정병역법 시행할 때 징병 적령을 지난 조선인은 병역을 면제할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다.

(2) 지원병원 -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병적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할 자의 병역에 관하여서는 칙령의 정한 바에 의함.(동 3조)

현 병역은 연령 17세 이상 징병적령 미만의 자로서 현병역으로 하여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 재영(在營)할 것을 지원하는 자로써 이에 충당할 수 있음.

### 3) 병역제외자와 면제자

(1) 병역제외자 - 6년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된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가 없다.(병역법 제4조)

(2) 병역면제자 - 병역에 감당치 못할 자에게는 병역을 면제시킨다.

현병역,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해당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된 자는 이를 다른 병역에 전(轉)하게 함. 단 질병 기타에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병역을 면제함.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하는 자의 복무할 병역과 복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칙령으로써 이를 정함.(병역법 제21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를 징집하지 아니함.(병역 34조)

징병검사를 받을 자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에 기하여 신체검사를 행함이 없이 병역을 면제함을 득함.(병역 37조)

병역제외자와 병역면제자와는 그 성질과 주지(主旨)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 즉 병역 제외자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부담할 자격을 잃은 자라 국가가 병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지인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국민된 자로서 큰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병역 면제자는 그 개인의 불행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하여 국가가 병역의 부담을 해지하는 것이 그 주지인 것이다.

### 4) 지원병원의 징역관계

국가는 징병제로만 가지고 병원을 충족하게 함은 군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없는 점이 있게 되어서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복역 연한(年限)을 한정치 아니하는 자유 의지의 약정에 의하여 군사상의 근무에 복무할 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병역법 제3조에 규정한 바의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일반의 징병과 그 근본의 취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들어가게 된 자와 일반의 병역 의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일반의 병역의무자라는 것은 병역법 제1조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는 것이고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는 군사상의 근무에 한하고 있는 동안에는 징병할 수 없는 것이나 만약 병적으로부터 제외하게 된 때에는 일반 병역 의무자와 똑같이 이를 징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는 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무관, (2)해군각료 소위후보생, (3)육군의 모든 생도, (4)해군의 학생과 생도, (5)지원에 의한 병

### 3.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될 자의 병역관계

#### 1) 무관과 무관후보자

무관은 헌법 제10조 문무관의 임명대권에 기하여 임명하게 되는 자이라 문관과 같이 국가의 관리이

다. 그리고 관리인 특질에 있어서는 일반의 문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직무의 성질로 인하여 문관의 권리의무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무관은 문관보다 그 기율(紀律)에 있어 엄중한 구속을 받고 또 신분상에 특수한 지위에 있게 되고 무관의 보충에 관하여서는 육군에 육군 보충령이 있고 해군에 해군무관 임용령과 해군 예비령이 있다.

## 2) 무관의 병역관계

무관의 병역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 제1장 제1관(款)(무관과 무관후보자)에 규정한 외에 따로 정한 바 법령에 의한다.

무관과 해군 각료 소위 후보생의 병역에 관하여서는 본관(本款)에 규정한 것 외에 따로 정한 바에 의함.(병역법시행령 1조)

주(註) : 따로 정한 바라 함은 육군무관복역령, 육군무관분한령, 해군무관복역령 등을 의미한다.

무관으로 될 육군의 모든 생도(육군 보충령 제115조 제1항 제6호 해당자, 간부후보생과 조종(操縱)후보생을 제함) 또는 해군의 학생생도가 되어야 병적에 편입하여 있는 자의 병역상의 신분 취급은 현역에 준함.(병역법시행령 제2조)

무관 또는 무관의 후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기 전부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병적에 있는 동안 병역 검사를 행함이 없음.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역에 복무한 기간, 부대의 기간, 연습으로 하여 그 기간 2년에 만(滿)하는 날로써 징병종결 처분을 경(經)한 자로 간주함.(병역법시행령 제5조)

## 3) 지원에 의하는 병과 그 후보자의 병역관계

지원에 의하는 병의 병역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 제1장 2관에 규정하여 있다.

현역병은 연령 17세 이상 징병적령 미만의 자로 현역병으로써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 재영할 것을 지원하는 자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음.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은 병역법과 본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현역병으로써 징집되는 자의 자격에 동(同)함.

보충병(輔重兵) 또는 슬생병(衛生兵)은 지원에 의하여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규정한 연령은 지원하는 해의 12월 1일에 있어서의 연령으로 함.

전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이 되려는 것을 지원한 자의 채용 여부는 육군병에 관해서는 연대구(聯隊區) 사령부, 해군병에 관해서는 해군 인사부장이 이를 결정함. 단 해군에 채용할 인원은 해군대신의 인가를 받음을 요함.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병에 채용한 자는 이를 채용한 연대구의 그 해에 있어서의 현역병의 배부요원(配賦要員)에 충당함.(병역법시행령 제7조)

## 4. 병역의 종류

병역의 의무를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국민병역으로 분하되 다시 이것을 상비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

로 나누고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누고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눈다.

### 1) 병역의 종류

- (1) 상비병역 - 현역, 예비역
- (2) 보충병역 -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 (3) 국민병역 -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 5. 병역행정의 기관

병역에 관한 사무는 육군대신의 관리에 속한 것이나 해군병의 복역, 소집에 관한 사무와 같은 순연(純然)한 해군 군정에 속하는 사무는 해군대신의 관리에 속한다. 또 징병사무의 일부에 관해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육군대신과 내무대신이 연대하여 행하는 것도 있고 소집면제인가의 사무와 같은 것은 내각 총리대신의 관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병역행정의 중앙관청은 육군대신이라도 사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해군대신, 내무대신 또는 내각총리대신을 중앙관청으로 하게 된다.

병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관청으로서 육군에 있어서는 육군사령관, 사단장, 연대구 사령관이 되고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진수부 사령장관, 해군인사부장으로써 한다.

군사령관 사단장과 진수부 사령장관은 통수기관인 것이나 특히 병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며, 연대구 사령관과 해군인사부장은 병역행정을 시키기 위하여 특설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역사무는 이 외에 일부를 일반의 지방행정기관에 담당하게 한다. 곧 지방장관과 그 소속의 관공서의 장에게 병역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한다.

## 제2. 복역(服役)

### 1. 복역자의 관할

복역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군무에 복무할 부담의 상태를 이룸이며 병역에 복하는 복역자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 1) 육군의 현역병(귀휴병(歸休兵)을 제함)은 소속부대의 병적에 편입시킨다.
- 2) 육군의 재향병원은 본적에 있는 연대구의 병적에 편입시키고 그 연대구 사령관의 관할에 두게 한다.
- 3) 해군의 현역병, 예비병은 그 본적지를 관할하는 진수부(鎭守府)의 병적에 편입시킨다.
- 4) 해군의 보충병은 육군의 재향병원과 똑같이 관할한다.

현역병,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당해(當該)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가 된 자는 이것을 타의 병역에 전(轉)하게 한다. 단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한다.(병역법 21조)

## 2. 병역 구분과 복역 연한(年限)

병역구분이라 함은 어떠한 자격의 자가 어떠한 종류의 병역에 복한다는 구분을 이룸이며 복역 연한은 병역에 속할 기간을 이룸인바 병역은 이것을 상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이것을 구분한다.

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여 징집된 자에 복함.

현역병은 현역중 이를 재영(在營)하게 함.(병역법 제5조)

예비역은 육군에 있어서는 15년 4월, 해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하여 현역을 마친 자 이에 복무함.(병역법 제6조)

제1 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하여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해 소요의 현역병원에 초과한 자 중에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무함.

제2 보충병역은 17년 4월로 하여 현역에 적합한 자 중에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역으로서 징집이 아니 된 자가 이에 복무함.(병역법 제8조)

제1 국민병역은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역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 이에 복무함.

제2국민병역은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로서 상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년으로부터 40년까지의 자 이에 복무함.(복역법 제9조)

### 1) 상비병역

(1) 현역 - 징병검사의 결과로 갑종(甲種) 또는 을종(乙種)에 합격한 자의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가 복무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교육을 받고 전시부대의 골간(骨幹)이 되며 그 복역 연한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이다.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는 것으로서 현역을 마친 뒤에는 고향에 있으면서 전시의 요원이 되며 그 복역 연한은 육군은 15년 4월, 해군은 12년이다.

### 2) 보충병역

(1) 제1보충병역 -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해 소요의 현역병원에 초과된 자중에서 소요의 인원이 된 자가 속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며 또는 필요한 때에는 소집하여 필요한 군대 교육과 훈련을 시키어 전시에 요원으로 충당한다. 그 복역 연한이 각각 17년 4월이다.

(2) 제2 보충병역 -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않은 자가 복무하는 것으로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에 필요에 응하여 소집하고 그 요원으로서 충당한다. 그 복역 연한은 육해군이 각각 17년 4월이다.

### 3) 국민병역

(1) 제1 국민병역 - 상비병역을 마친 자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보충병역으로서 보충병역을 마친 자가 연령 40세까지 이에 복무한다.

(2) 제2 국민병역 - 상비병역, 보충병역, 제1국민병역에 복하지 않은 자로서 연령 17세로부터 40세인 자 이에 복무한다.

### 3. 복역의 전이(轉移)

복역의 전이 즉 전역(轉役)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병역을 마치고 다른 병역으로 옮기어 가는 것을 이룸이니 이 복역의 전이에는 원칙적 전역과 특수적 전역의 두 가지 성질의 것이 있다.

1) 원칙적 전역 - 정규적으로 병역법 6조 내지 제9조의 제1항에 좇아서 한 가지 병역을 완료한 뒤에 다른 병역에 추이(推移)하는 상례적 전역이니 이 원칙적 전역에는 별다른 병역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한 가지의 병역을 마친 뒤에는 그 다음 날로서 다음의 병역에 복무하게 된다.

2) 특수적 전역 - 병역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 변태적 전역이니 이것에는 반드시 전역 처분을 받은 뒤야만 그 효력을 갖게 된다.

- (1) 빈곤에 인하는 현역 면제(병역법 제20조)
- (2)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는 전역과 병역 면제(동(同) 제21조)
- (3) 복역기간의 연장 (동 제19조)

### 4. 복역의 특례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영예의 병역의무를 공평히 부담시키고 있으나 국방상의 요구에 방해가 없는 한에 있어 병역과 문교(文教)의 협조를 꾀하는 데와, 중요 정책상의 견지(見地)로서 병역의무의 경감 또는 복역상의 특례 등을 두고 있다.

#### 1) 재영(在營) 기간의 단축

현역병은 현역 중 이것을 재영하게 하고 좌와 같은 특수한 자에 대해서는 군사상에 방해가 없는 한에 있어 복역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해군 현역병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직에 나아갈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1년 60일 이내의 단축을 할 수 있다.

- (1) 청년학교 수료자 - 청년학교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品行方正하고 학술근무의 성적 우수한 자.
- (2) 정원에 대하여 과잉(過剩)된 자.
- (3) 교육기능의 병종(兵種) - 현역병으로서 1년 6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시킬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

#### 2) 복역 연기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역의 기간을 연장시킨다.

- (1) 전시 또는 사변이 생겼을 때
- (2) 출사의 준비 또는 수비 혹은 경비로 하여 필요 있을 때
- (3) 항해 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 중일 때.
-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한 관병(觀兵)의 계획이 있을 때



(5) 천재 기타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하여 어찌 할 수 없을 때.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복역을 연기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 기간에 이것을 통산(通算)을 한다.

### 3) 특수 전역과 면제

(1) 현역면제 - 재영 중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현역을 면제함. 단 고의로 그 사고를 작위(作爲)할 때에는 이 한에 부재(不在)함.(군역법 제20조)

(2) 병역 면제 -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병역에 감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함.(병역법 제21조)

(3) 특수전역 - 현역병, 예비병, 보충병으로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해당 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병역에 복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 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된 자는 이것을 타의 병역에 전(轉)하게 함.(병역법 제21조)

## 제3. 징집

### 1. 징집의 요념(要念)

징집이라 함은 현역 또는 보충병역에 취역(就役)시키기 위한 병역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니 곧 병역법에 의하여 장정의 적령자를 뽑아 상당한 병역에 복역하게 함이다.

징집은 본적주의로서 행함이 원칙이고 현주(現住)주의로써 행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한해서는 현주주의도 아울러서 행하나 병역에 대한 처분은 총체적으로 본적주의로 한다.

현역병과 제1 보충병의 원수(員數)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다시 이를 징모구(徵募區)에 배부함.

전 항에 규정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부터 이를 징집함.(병역법 27조)

병역검사는 병역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소재의 징모구에서 이를 행함. 단 신체 검사에 한하여 본적소재의 징모구 이외의 지에서 행함을 득함.(병역법 29조)

### 2. 병원 징집구역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두고 이것을 징모구로 나눈다.

징병구라는 것은 당해군의 부대의 병원을 징집하는 구역을 이룸이며 징모구라는 것은 징병구내에 있어서 징병사무를 집행하는 구역이다. 징병구는 이것을 군관구 사관구와 연대부로 구별하고 그 구역은 육군군영표가 정한 바에 의한다.

징병사무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징모구를 검사구로 분할 수 있으며 군관구내에 있는 부대와 병원은 그 군관구로부터 이것을 징집함을 예로 한다.

부대의 위치 또는 종류에 따라서 한 개 내지 수 개의 군관구 또는 각 군관구로부터 당해 부대의 병원을 징집할 수 있고 해군의 병원은 각 군관구로부터 이것을 징집한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구는 이것을 군관구, 사영구, 병사구로 구별한다.

### 3. 징병관과 징병사무

징병관이라 함은 징병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문무의 관 합의제(合議制)로 된 관청을 이룸이다.

징병관은 총리(總理) 징병관, 군관구(軍管區) 징병관, 사관구(師管區) 징병관, 연대구(聯隊區) 징병관 과 연대구 연합징병관으로 구별하고, 총리징병관은 육군 대신과 내무대신으로써 하여 전국 징병의 사무를 통할하고 군관구 징병관은 군사령관으로써 이에 충당하여 군관구 내의 사단장이 행사할 징병의 사무를 통할하고, 사관구 징병관은 사관 내 도(道)·부(府)·현(縣)마다 사단장과 지방장관으로써 이에 충당하고 사단장을 수좌(首座)로 하여 징병사무를 통할한다.

연대구 징병관은 연대구내 도·부·현마다 연대구 사령관과 당해 부·현·도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지방사무소장)과 시장으로써 하되 연대구 사령관은 수좌로 하여 징병사무를 집행한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군관구 징병관(조선사령관, 조선총독) 사관구징병관은(사단장, 도지사) 병사구 징병관은 [육군병사부장과 도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경시(警視)와 부윤(府尹)]으로 한다.

조선에 있어서는 연대구를 병사구로 연대구 사령관을 육군병사부장으로 하고, 도(道)의 병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시(사무관)는 지방사무소장에, 부윤(府尹)은 시장(市長)에 준용(準用)한다.

### 4. 징병검사

#### 1) 징병검사의 의의

징병감사라 함은 징병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필요한 여러 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체검사와 신상조사를 하고 병종을 선정함에 있는 것이다.

#### 2) 징병검사 수검의 의무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호적법 또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수험의 연령은 전 년 12월 1일부터 그 익년 11월 2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 연령 20세가 되는 남자이다. 그러나 특정의 자는 이 연령을 지난 뒤라도 징병검사를 행하고 또는 징병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도 징병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징병 검사의 수검의무에는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그 정한 바의 장소와 기일과 방법에 좇아서 이것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 3) 징병검사의 집행권한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 소재의 징모구를 관할하는 연대구 징병관 또는 그의 대리관에 의하여 이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한하여서는 타의 연대구 징병관 또는 그의 대리관이나 특정의 조사관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4) 징병적령자

전년의 12월 1일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연령 20세에 달하는 해를 징병적령이라 한다.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이에 대한 계출(屆出)을 요하는데 이것을 징병 적령계라 하고 이 계출의

의무자는 호주가 이에 당한다.

단 특정의 자는 이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주는 그 가정 중 매년 12월 1일로부터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연적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 11월 중에 1월 1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적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년 11월 중에 본적의 시·정·촌(市町村)장(이)에 준할 자를 포함함)에 제출할 것. 호주 연적 20세가 될 때 도 또한 같다.

단 명령으로써 정한 자에 대해서는 이 한에 부재함.(병역법 24조)

- 서면으로 할 때의 징병적령계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징병적령계의 양식

징병적령계(徵兵適齡屆)			
본적지	군, 부, 읍, 면, 정동리, 번지		
본인현주소	○○		
수검예정지	○○(본적지 또는 현주거지에서 수검하는 자에게는 본적지 또는 현주거지라고 기록할 것)		
호주와의 관계	모(某) 「장(2)남」 「형(제)」 (본인이 호주라면 「호」라고 기록할 것)	본인 씨명	씨(氏)                    명(名) (씨명에는 독음을 쓸 것)
출생	년    월    일    생		
본인의 직업	현재의 직업과 그 취직년(겸직이 있으면 쓸 것) 종전의 직업과 그 취직년 (항공 면허를 가진 자, 의사, 약제사, 치과의사, 수의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자는 기재)		
특유한 기능	승마, 수영, 유도, 검도, 가무음치 등		
취학정도	국민학교졸업(○○ 졸업) 등 실제 수업한 학력(불취학자는 그것을 기록)		
청년학교 이상으로 인정된 과정 또는 학교교련을 받은 정도	□청년학교에서 몇 년의 과정을 수업 중이거나 또는 ○중학교 졸업했을 때 학교교련의 검정에 합격하여 지금 ○○학교에서 계속 수업 중으로서 현재 학교교련을 받는 등(이상의 과정 또는 학교교련을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그 수득(修得)을 증명한 자는 그 사실을 기록할 것) (청년훈련소의 과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현재 재소중에 있는 자는 위 양식에 준하여 기입한다)		
위 징병적령에 달한 자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주거지(본적지 이외에 현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것)			
년            월            일 호주 씨                    명    인 ○○부윤(읍면장) 전(殿)			

○ 징병 적령계를 아니한 자에게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좌의 명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병 적령계를 필요치 않는다.(병역법 제75조)

- ① 육해군의 병적에 편입한 학생생도
- ② 전 호의 자로서 병역을 면제한 자
- ③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하고 있는 자
- ④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는 또 현역면제, 현역 예비역 면제, 현역과 보충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가 된 자
- ⑤ 병역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년의 병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자)
- ⑥ 본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징병 적령계 차출 기일 후에 있어서 재판 확정에 인하여 취적한 자

#### 5) 연대구(병사구)징병서(徵兵署)

연대구 징병서는 징병사무(□□사무를 제외함)를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에 임시로 개설하는 관서(官署)이다.

연대구 징병서는 이것을 징모구마다 설치하되 징모구를 검사구에 분한 경우에는 검사구마다 설치하게 된다.

연대구 징병서의 개설 기일은 매년 4월 16일로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기일, 장소 기타의 징병서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연대구 사령관의 타의 지방 측의 징병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다.

주(註) : 연대구(조선에서는 병사구) 연대구 사령관(조선에서는 육군병사부장)

#### 6) 장정(壯丁) 조사

징병조사를 받을 자의 조사는 징병사무집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 조사는 부윤, 읍면장이 먼저 그 관내의 본적자에 대하여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각급 징병관은 각각 그 관내의 장병인원 수를 취합(取合)하되 이 조사에 의하여 얻은 수검자의 견입수(見込數)는 곧 배부를 하는 기초 인원이 된다.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수할 자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육군 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징병검사 통달서를 교부할 것.

#### 7) 징병 검사의 통달

징병검사를 받을 수검의 의무는 징병검사의 통달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리고 이 통달서를 하는 것은 시정촌장(이에 준하는 부윤, 읍면장)의 직권인 동시에 그의 책임이 된다.

징병검사의 통달에는 반드시 징병검사통달서를 사용하되 이 통달서는 본인에게 이것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그것을 수령할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연대구징병서 개설일할표 결정한 때에는 병사관, 지청장 또는 시장은 매일 검사를 행할 정(町)촌(村)의 순서, 인원과 출두 시각을 정하여 병사관 또는 지청장은 이것을 정촌장에 통지함. 단 출두시각에 대해서는 미리 연대구 징병관에 협의함을 요함.(병역법시행규칙 110조)

시정장은 전 조의 결정 또는 통지에 기초하여 징병검사통달서를 만들어 이것을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게 교부할 것.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자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통달서를 교부할 수가 없이 된 때에는 그 호주 또는 가족 중 가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

시정촌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자 또는 전 항에 규정한 수령인이 부재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에 통달서를 교부하고 또는 징병검사에 출두할 것을 통달할 것.(동 110조)

주(註) : 조선에 있어서는 부윤을 시장에 읍면장을 정촌장에 준함.

(1) 징병검사 통달서의 양식 예

수령서									
<p>1. 징병검사통달서                  (년 월 일 시 ○장소 열린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요지의 통지서)                  위의 것을 수령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날인이나 사인으로 가능함)</p> <p>○○ 부윤(읍면장) 전</p> <p style="text-align: right;">(본인 대신으로 수령한 자는 본인이름의 다음에 기명 압인할 것)</p>									
징병검사통달서									
<p style="text-align: right;">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씨 명</p> <p>위 징병검사집행에 대해 다음의 기일에 징병서로 출두하여 본서를 가지고 징병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출두일시</td> <td style="padding: 5px;">년 월 일</td> <td style="padding: 5px;">오후(오전) 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징병서</td> <td colspan="2" style="padding: 5px;">○○군(부)읍(면)정동리의 ○장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부윤(읍면장) 씨 명 직인</p>				출두일시	년 월 일	오후(오전) 시	징병서	○○군(부)읍(면)정동리의 ○장소	
출두일시	년 월 일	오후(오전) 시							
징병서	○○군(부)읍(면)정동리의 ○장소								

징병조사통달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해(該) 통달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을 기입하고 날인(징병검사를 받을 자에 대하여 수령할 자는 기명날인)하고 곧 이것을 반부(返附)할 것.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 대하여 통달서를 받은 자는 곧 확실 신속한 방법으로써 본인에 교부하는 처치(處置)를 할 것. 단 교부 지연(遲延)의 우(虞)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출두할 지명,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신 등으로서 미리 본인에게 통지함을 요함.(병역법시행규칙 113조)

8) 연대구(병사구) 징병서에 출두

징병검사통달 등을 받은 자는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연대구징병서에 출두함을 요한다. 만일 이 징병 검사통달서를 받고도 출두를 아니 하게 되면 법에 의하여 상당한 처단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징병감사자에 중대사고(事故)가 있는 때의 수속

연대구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명을 받은 자가 그 기일에 있어 중대한 일로 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병역법시행규칙 118조)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를 명한 자 출두할 기일에 제하여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사 당일까지의 본인으로부터 본적지(기류지 수검자에 있어서는 기류지)의 징병관, 또는 부윤에 제2항에 기재한 양식에 기재한 사항을 제출(届出)할 것. 단 부(府) 이외의 구역에 재해서는 읍면장을 경유할 것.

- (1)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精神)의 이상(영 제69조에 기재한 것을 제함)에 인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때.
- (2) 본인의 소재 불명한 때.
- (3) 육해군 지원자로서 응모 수검을 하기 위하여 출두하기 곤란한 때.
- (4) 기타 전 호(號)에 상당 필할 수 없는 사고에 인하여 출두하기 어려운 때.

○ 서면으로서 할 경우에 있어서 계서(届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불참계	
1. 본인	씨명
2. 본적지	군부읍면정동리 자(字) 번지
3. 현주소	○○
4. 불참의 사유	년월일로부터 ○○ 질병에 의해 정양(靜養) 중(소재불명)(○○)
5. 사고발발 추정일수	○○일
위의 양식을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계출인(본인 ○○○) 씨</span> <span>명</span> <span>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도 병사관(○○부윤)</span> <span></span> <span>전</span> </div>	

연대구 징병서에 출두를 영하게 된 자, 출두할 기일에 제하여 좌의 각호의 일(一)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전 조의 징병검사 불참계에 준하여 징병검사 기일의 변경을 원출(願出)할 수 있음.(병역법시행규칙 제119조)

- (1) 본인의 직계 존속 처자가 사망할 때 또는 중태일 때



10) 징병서 출두와 수검자의 주의 사항

징병검사를 받을 수검자가 징병검사통달서 또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달서를 가지고 징병서에 출두하여야 하되 만약 통지를 받은 자로서 통달서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 기일의 시일에 도착하는데 늦게 될 경우가 있게 된 때에는 통달서를 휴대하지 않고 출두하여도 무방하다.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하라는 명을 받은 징병 수검자는 출두에 앞서 청년학교의 과정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득(修得)하였으면 이것에 관한 증서, 교련검정합격증명서, 교련증명서 국민노력수장, 체력검장 또는 학업 기타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자동차 운전수, 항공기 승무원 등의 직업에 관하는 졸업증서, 수업증서, 면허증, 기량(技倆)증명서 등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각 해당 증서의 종류를 또는 현역 장교를 배속한 학교에 재학 중의 자로서 교련을 받은 자인 때에는 이것에 관하여는 해당 배속장교의 증명서를 병사구 징병서에 출두할 때 휴대하여야 한다. 또는 지원자훈련소수료증서, 우량증서, 훈련수첩, 특별연성소수료증 등.

11) 수검자와 병역면제관계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질병이든지 기타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에 기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지 않고도 병역을 면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병역면제원을 징병 검사하는 당일 까지에 본적의 병사관(읍면장 경우)에게나 또는 부윤에 제출하여야 한다.(병역법시행령 제69조와 동 규칙 제125)

(1) 징병면제원의 양식

병역면제원		
1. 본인	씨명	
2. 본적지	군부읍면정도리 ○번지	
3. 본인의 현주소	○○	
4. 면제의 사유 (맹인, 병어리 등 영(令) 제69조에 갈음할 수 있는 사고를 기입할 것)		
위의 사유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출인(본인 ○○) 씨            명    인 징병사구징병관(徵兵事區徵兵官)    전



병역면제원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것.

연대구 징병관은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전 항의 서류의 외 증상을 확인할 사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됨을 득함.

제1항의 진단서의 서식은 제120조에 기재한 양식에 준함.(징병법시행규칙 126조)

병사관 지청장 또는 시장 병역면제원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意)를 부(附)하여 이것을 연대구 징병서에 차출하라.

연대구 징병관은 전 항의 서류에 기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또 연대구 징병 의관(醫官)의 의견을 모아 법 제37조 및 법령 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때에는 병역면제증서(제220조에 규정한 것에 동일하다)를 교부하고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인정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위해서 출두를 명하고 또는 제118조에 규정한 불참서에 준하여 취급하라.(병역법시행규칙 127조)

특수의 사유에 인하여 연대구 징병관 징병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행할 필요가 있다. 인하는 자 있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다시 연대구 징병서에 출두 할 것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행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대구 징병관의 명으로써 그 출두를 명할 것으로 함.(병역법시행규칙 제128조)

## 12) 병사구 징병서의 사무분장

- (1) 육군병사부 장병 - 신체검사의 감독과 병종의 선정
- (2) 병사관 또는 부윤 읍면장 - 신상조사
- (3) 병사구 징병 의관 - 체결등위의 결정

## 5. 신체검사와 병종결정

### 1) 수검자의 신체검사

징병검사에 있어 수검자의 신체검사는 가장 중대한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는 체격검사와 이에 따른 필요한 신상조사 및 체격 등위의 반정을 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신체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된다.

- (1) 현역에 적당한자(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
- (2) 국민병역에 적당하나 현역에는 적당하지 않은 재병종(丙種)
- (3) 병역에 적당하지 않은 재정종(丁種)
-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무종(戊種))

이리하여 각 체격 등위를 반정하는 표준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細部)는 다시 육군신체 검사규칙으로서 정하여 있다.

병역법 제32항의 규정에 의한 표전과 동법(同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한 체격 등위는 좌와 같음.

- (1) 현역에 적합한 자는 신장 150Cm를 이상으로써 신체 강건한 자로 함.

현역에 적당한 자는 그 체격의 정도에 응하여 이것을 갑종(甲種), 을종(乙種)에 을종은 이것을 제1을종과 제2을종과 제3을종으로 나눔.

(2) 국민병역에 적합하되 현역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는 신장 150Cm를 이상으로써 신체 을종에 차(次)한 자와 신장 145Cm 이상, 150Cm 미만자로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함. 이것을 병종(丙種)으로 함.

(3) 병역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는 신장 145Cm를 미만의 자와 좌에 게시한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로 함 이것을 정종(丁種)으로 함.

- ① 전신기형
- ② 근골 매우 박약한 자
- ③ 악성종양
- ④ 불치의 정신병 또는 불치의 신경계병
- ⑤ 불치의 영양실상
- ⑥ □
- ⑦ 소경(盲)
- ⑧ 귀머거리(聾)
- ⑨ 병어리 (啞)
- ⑩ 구개(口蓋) 파열 또는 현저한 토진(兔唇)
- ⑪ 사(斜□) 또는 척추 골반의 기형으로서 운동에 방해가 되는 자
- ⑫ 흉복(胸腹)부 장기의 만성 질환으로써 일반 영양 상태에 방해가 있는 자.
- ⑬ 탈항(脫肛), 치질(痔疾) 또는 항문기형으로서 그 정도 중한 자
- ⑭ 비뇨생식기의 만성병 또는 결손(缺損)기형으로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⑮ 골(骨), 골막(骨膜) 또는 관절의 만성병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자와 그 계발증(繼發症)
- ⑯ 4지의 결손 또는 현저히 사지의 단축(短縮) 만곡(彎曲)
- ⑰ 지체의 결손, 강강(強剛), 유저(癒著) 또는 기형으로서 현저히 기능 장애가 있는 자
- ⑱ 변족(鬮足), 마족(馬足)
- ⑲ 전 각호에 준하는 질병 그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서 육군대신이 정하는 자.

(4) 병역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신체검사를 받는 해에 있어서는 질병 중 또는 병 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갑종(甲種) 또는 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그 다음 해에 이를 때에는 갑종 또는 을종에 합격할 가장 있는 자로 하고 이것을 무종(戊種)으로 함.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에 인하여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 병종 또는 정종(丁種)으로 할 세부의 표준은 육군대신이 이것을 정한다.

## 2) 병종(兵種)의 선정과 징집구분

(1) 현역에 적합한 자는 이것을 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에 구분하고 각 징모구에 배부될 현역 병과 제1 보충병은 그 배부 인원에 응해서 다시 갑종 을종으로 하여 신장 150Cm를 이상의 자로부터 이것을 징집한다. 또 신장 150Cm를 이상의 자로써만 배부 인원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체격 등위에 대하여 똑같이 차(次) 신장의 표준을 내려뜨리고 배부의 요원을 충족하게 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2) 현역병과 제1보충병의 체격 등위의 우열에 의하는 징집 순서는 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의 순서로 한다.

(3) 체격 등위가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병종에 따라서 추첨(抽籤)의 방법으로 그 징집 순서를 정한다.

(4) 병종의 선정은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하여 징집할 자에게 이것을 행한다.

(5) 징병은 징모구의 배부 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 예능, 직업에 따라 이것을 정한다.

(6)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 아니된 자는 제3보충병으로 징집한다.

현역에 적합한 자는 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격 등위의 우열에 좇아서 각 징병구의 배부 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것을 징집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체격 등위가 동일한 자는 본법 중 별단(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 병종마두 추첨의 법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함.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할 병종은 각 징모구의 배부 인원내 응해 그 신체(身材),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이것을 정함.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 아니 된 자는 이것을 제2보충병에 징집함. 현역병으로써 징집이 될 자도 그 속할 병종이 정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가하는 일이 없이 현역병이 이것을 징집함을 득함(병역법 제33조)

### 3) 병종의 구분

징병검사의 결과로서 정한 병종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 단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직에 나아갈 자격을 가진 자를 해군에 있어서는 이 가을 수병(水兵)으로 한다.(병역법시행령 제75조)

구 분		병 종
육군병	병과병 (兵科兵)	보병, 기병, 전차병, 야포(野砲)병, 산포(山砲)병, 기포(騎砲)병, 야전중포(野戰重砲)병, 중포(重砲)병, 정보(情報)병, 기구(氣球)병, 공(工)병, 철도병, 체신병, □행(行)병, 방공(防空)병, 박격(迫擊)병, 치중(輜重)병
	기술부병	병기병, 항공병
	위생부병	위생병
해군병		수병, 정비병, 기관(機關)병, 공작병, 위생병, 주계병(主計兵)

○ 전 항에 규정한 병종의 구분은 현역병과 제1보충병으로서 징집한 자에게 이것을 행함.

### 4) 기류지 수검 수속

본적지를 떠나서 지방에 기류하는 징병 적령자가 그 기류지에서 징병 감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을 해의 1월 31일까지에 도착하도록 하여 기류지의 병사관이나 또는 부윤에서 기류지수검통상원을 내어 놓아야 한다.

(기류지수검통상원)

기류지수검통상원(寄留地受檢通常願)

올해 다음 기록한 기류지 소재의 징병구에서 징병신체검사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다음 기록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번지  
 호주 ○○○ '장(2)남' '형(제)' 본인 호주인 경우는 호주라고 기입할 것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년 월 일  
 ○○도병사관(○○부윤) 전

기류지수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기류 변경에 의하여 신기류지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기류지의 병사관이나 또는 부윤에서 기류환수검원을 낼 수도 있다.

(기류환수검원의 양식)

기류환수검원(寄留換受檢願)

올 해 아래 구 기류지소재의 징모구(徵募區)에서 징병신체검사수험의 허가받은 거처의 기류환치는 다음의 신 기류지소재 징모구에서 수검받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 기류지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구 기류지   ○○  
 본적지   ○○  
 호주 ○○○ '장(2)남' '형(제)' 본인 호주일 때는 호주라고 기록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재류지병사관   ○○관(직) (부윤) 전

주 : 병사관에게 제출할 원서는 읍면장을 경유할 것.

## 6. 추첨(抽籤)

### 1) 정리증병서

추첨의 목적은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에 대해서 그 징병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리 징병서라는 것을 두되 이것을 연대구 정리징병서와 연대구 연합 정리징병서로 나눈다.

### 2) 추첨의 실행

정리(整理)는 연대구 징병서에 있어서 사무를 끝난 뒤의 8월 하순경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상례이며 병종과 체격 등위마다 추첨을 행한다.

정리징병서는 연대구 마두에 또는 연대구 내 도부현 마두에 이것을 도부현청 소재지에 개설함. 단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대구 사령부 소재지 또는 타의 편의에 의한 곳에 이것을 개설할 수 있다.

주(註) : 조선에 있어서의 연대구 정리징병서는 병사구 정리징병서라 한다.

## 7. 징병처분

징집처분이라 함은 징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룸이니 이것을 대별(大別)하면 ①현역편입처분 ②보충병역편입처분 ③징집면제처분 ④병역면제처분 ⑤징집연기처분으로 구분하고 ① 내지 ④의 처분을 징병종결처분이라고 한다.

1) 현역편입처분 - 병역법 33조와 병역법시행령 제74조, 75조 등의 규정에 기하여 현역병으로 징집하고 현역에 편입시키는 행정처분이다.

2) 보충병역 편입처분 - 병역법 33조와 병역법시행령 제74조 등의 규정에 기하여 보충병으로 징집하고 보충병역에 편입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이것에는 다시 제1보충병역 또는 제2보충병역으로써 편입의 처분을 한다.

3) 징집면제처분 - 병역법에 의한 징집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단 병역법 제34조에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현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징집하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도 편의상 징집면제처분에 들 수 있게 된다.

4) 병역면제처분 - 병역법 제35조와 제37조의 규정에 기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징병검사를 받을 자 칙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인 자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에 기초하여 신체검사를 행함이 없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음.(병역법37조)

5) 징집연기처분 - 병역법 제36조와 제39조 내지 제44조에 기초하여 징집을 연기하는 행정처분이다.(본편 제9장 「징집연기」 참조)

징병처분을 행하는 권한은 현역편입, 제1 보충병역편입에 대한 처분은 연대구 사령관이 이것을 행하고 기타의 징집처분에 대해서는 연대구 징병관 함의로 행한다. 단 현역편입, 제1보충병역편입의 처분 이외의 구분에 대해서도 연대구 사령관에 단독으로서 행할 경우도 있다. 또 현역편입, 제1보충병역편입

의 처분에 대해서는 추첨종료한 후의 5일 이내에 행하고 기타의 징병처분은 연대구 징병서에 이것을 행함이 상례로 되어 있다.

## 8. 현역병 입영

### 1) 현역병 입영과 규정

현역병의 입영에 관하여 그 입영기일과 입영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하는 규칙 곧 병역법시행규칙 제4편 제16장에 규정하여 있다.

2) 현역병으로써 입영할 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소명(所命)의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할 당일까지에 본인이 부윤(府尹)이나 읍면장을 거치어 현역병 증서를 교부받은 육군병사부장에서 입영 불능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입영지 또는 집합지에 이르기 어려운 때
- (2) 병역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범죄로 하여 입영 기일에 올 수 없게 된 때)
- (3) 본인이 소재불명한 때
- (4) 육해군의 지원자로서 응모(應募) 수검(受檢)인 때
- (5) 기타 전 각 호에 상당하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

(입영불능계의 양식)

(입영연기원도 본 양식에 준함)

입영불능계(연기원)	
1. 본인	씨명
2. 입영부대	○병 ○부대
3.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4. 편주소	○○
5. 불능사유	연 월 일로부터 구유중 (○○) 등
6. 사고	□□ 추정일수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본인, ○○)    씨    명    인 ○육군병사부장 전	

현역병입영에 제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소명의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병역법시행규칙 제344조에 제시한 구분에 좇아서 입영 연기원을 낼 수가 있으며 이것은 입영기일까지에 본인으로부터 본적지의 부윤·읍면장을 거쳐서 현역병증서의 교부를 받은 육군병사부장에게 입영 연기원을

내되 그 양식은 입영 입능계(入能屆)에 준한다.

- ① 본인의 직계존속 처자가 사망한 때 또는 중태일 때
- ②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사망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뒷일)을 할 자가 없는 때
- ③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중태하여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의 간호를 할 자가 없는 때
- ④ 본인의 주거(住家)의 화재, 유실 또는 도괴(倒壞) 기타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후시말을 할 자가 없는 때

### 3) 귀향 처분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입영 할 대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질병 기타에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 이내에 치료될 가망이 없고 또 근무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집면제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는 자 외에는 이것을 귀향하게 하였다가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 9. 징집 연기

징집적령이 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집을 연기한다.

### 1) 병역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기 어려워 행하는 징집연기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징집을 연기하고 적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 이를 때까지 매년 징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36조)

### 2) 범죄 등에 인하는 징집연기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좌의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1)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할 범죄로 하여 예심(豫審) 또는 공판(公判)중일 때
- (2) 범죄로 하여 구금중인 때
- (3) 형의 집행 정지중인 때
- (4) 가출옥중인 때
- (5) '소년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소년 교호소 또는 '조선소년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감화원, 조선총독부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때

전 항의 규정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써 아직 징집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것을 준용한다.(병역법 제39조)

### 3) 가사 고장(故障)으로 인하는 징집연기

징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써 징집하게 되므로 인하여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확증이 있을 때에는 2년간 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게 된 자가 그 연기의 기간 내에 있어서 그 사유가 중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제40조)

#### 4) 재학(在學)에 인하는 징집연기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자라도 칙령으로 정한 학교에 재학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 연한에 따라서 연령 26세까지 징집을 연기하되 상세는 「재학징집연기구분」에 의한다.

#### 5) 제국외의 지에 재하는 자의 징집연기

징병적령과 그 전부터 제국 외의 지역(地)에 재한 자(칙령으로 정한 자를 제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게 된 자는 그 사유가 지(止)한 년 또는 그 익년에 징병검사를 행한다.(병역법 제42조)

이 규정은 제국 외의 지역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에게도 이것을 준용한다.

### 10. 학교 재학자의 징집연기

#### 1) 병역법시행령 개정과 재학자 징집연기

차대(次代)의 황국을 지고 나갈 학교의 재학자, 즉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와 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징집연기의 제도를 정하고 그 수학(修學)을 수료하도록 하여온 바이지만 지금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 싸우고 있는 이때에 학생들만이 홀로 그 권외(圈外)에 안연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학 기간을 단축하고 될 수 있는 한 속히 군 또는 총력전에 전사로 참가하도록 하여 왔었는데 이번에 또 학제개혁과 아울러 현하 결전 태세의 요에 응하여 이에 따르는 병역법시행령 중의 일부를 개정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바 그 개정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징집연기를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중학교·실업학교·고등학교 심상과에 재학 중이 자는 만생(晩生)으로 만 21세까지 징집 연기할 수가 되게 있으나 금회에 내외지를 통하여 이것을 폐지되고 학창에 있는 자도 결전하 하루라도 빨리 무력전에 참가하여 의용봉공하는 영예를 지우게 하였다.

단 적용은 본년 4월 1일 이하의 입학자에 한하고 현재의 재학중인 자는 종전과 같다.

(2)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징집연기의 연령을 개정한 재학징집연기 구분대로 개정 되었다. 즉 사범학교, 임시교원양성소, 청년학교교원 의성소의 생도는 재래보다도 1년이 연장이 되고 고등학교 고등과의 대학령에 재하는 대학 예과 생도는 종래보다도 1년이 단축되었다.

단 이 적용은 본년 4월 1일 이하의 입학자에 한하고 현재의 재학중인 자는 종전과 같다.(조선총독의 소할(所轄)학교로 전 호의 학교에 준하는 학교는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2) 개정된 재학징집연기 구분

학교의 구분	징집을 연기함을 득할 기간	
	1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4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
고등학교 고등부 대학령에 재하는 대학 예과 수업 연한 그 년의 청년학교 교원 양성소	연령 22세까지	연령 23세까지
사범학교 임시교원양성소 수업연한 3년의 청년학교 교원양성소 실업학교교원양성소 수업연한 3년 또는 4년의 전문학교 고등사범학교	연령 23세까지	연령 24세까지
수업연한 5년의 전문학교 대학령에 의하는 대학부(의학부 의학과 를 제함)	연령 24세까지	연령 25세까지
대학령에 의하는 대학의학부 의학과	연령 25세까지	연령 26세

3) 학생, 학도의 징병검사와 심득(心得)

학생 생도의 징병검사에 있어 그 심득의 개요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재학징집연기원의 제출 - 4월 15일까지에 본적지의 병사구 징병관 앞으로 하여 재학징병연기원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고 본적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월 15일까지에 재학증명을 제출하기 어려운 자는 5월 15일까지에 제출을 득한다.

또, 이미 징집을 연기된 자라도 계속하여 학교에 재학할 때에는 매년 새로 재학하는 학교장의 재학증명서를 교부를 받아 4월 15일까지 전 항의 요령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 허가를 얻은 자라도 수학의 실력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

(재학징집연기원의 양식)

재학징집연기원	
1. 본인	씨명 및 출생년월일
2. 본적지	○도 ○군부, 읍면정동리번지
3. 현주소	○○
4. 재학하는 학교	○○학교 제 ○학년
5. 입학 연월일	○년 ○월 ○일
위의 기준으로 재학중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징집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인 씨 명 인 ○○병사구 징병관 전	

(2) 사고지계(事故止届) - 징집연기중인 자로서 징병연기의 사유가 중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징집연기 사고지계를 본적지의 병사구 징병관 앞으로 부윤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4월 15일까지에 일시 사고지계를 제출하고 입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학 징집 연기원을 제출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4월 15일까지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일시사고지계를 제출할 것이 없이 전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학 징병연기의 수속을 하면 된다.

① 재학징집연기사고지계의 양식

재학징집연기사고지계(在學徵集延期事故止届)

○년 ○월 ○일로써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징집연기의 사유가 끝남에 따라 그 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적지

본인    씨    명    인  
년    월    일    생  
○○병사구징병관 전

② 일시사고지계의 양식

일시사고지계(一時事故止届)

1. 본인    씨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리지번호  
3. 현주소    ○○  
4. 졸업학교 및 졸업년월일  
5. 입학희망학교, 입학시험기일, 예정입학기일  
위 일시사고가 끝남에 따라 정지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씨    명    인  
○○병사구징병관 전

③ 전교(轉校)시의 수속 - 징집연기중인 자로도 전교만하면 징집연기의 사유가 소멸된다. 그러나 전교가 14일 이내에 행하는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전교를 행하게 되는 자로 4월 15일까지에 타의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라면 전교 후 14일 이내에 신규학교장의 입학과 퇴학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병사구 징병관에게 전교계를 제출해야 한다.

(전교계의 양식)

<b>전교계(轉校屆)</b>	
1. 본인	씨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지	도부군읍면정동리번지
3. 현주소	○○
4. 최초 징집을 연기했던 년	○년
5. 퇴학	○년 ○월 ○일 ○○학교 퇴학
6. 입학	○년 ○월 ○일 ○○학교 입학
위와 같이 전교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 씨    명 인 ○○병사구징병관 전	

④ 재학 징집연기와 해외유학 - 재학징집연기중인 자로서 이를 계속하여 외국 유학하고자 하는 징집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 11. 징집처분 미제(未濟)의 취급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해에 이것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해에 이것을 행한다. 여기에 징병검사를 받을 자라 함은 오직 징병적령자에 한해서 이름이 아니고 징병을 연기한 자가 징집될 신분이 된 경우에도 똑같다. 또 징병검사를 받을 연령이라 말함은 징병연령만을 말함이 아니고 널리 징병검사를 수검할 해를 이름이다.

징병처분 미제한 자는 사실상 징병 연기와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연기의 권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 징집을 그 해에 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해에 있어 이것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 제4. 소집(召集)

##### 1. 통설(通說)

소집이라 함은 귀휴병(歸休兵)·예비병·보충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재향하는 것을 군무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군대로 소치(召致)하는 행정 작용을 이름이며 소집을 받은 병원(兵員)을 응소원(應召員)이라 한다.

보충병은 보충병역에 징집한 후 소집으로써 군대에 입영하게 함과 미입영 현역병을 군대에 들어가게 함을 입영이라고 한다.

소집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 제4장 병역법시행령 제4장과 육군(해군)소집규칙에 의한다.

소집을 명령함에는 영장으로써 이것을 본인에게 통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써 대(代)할 수 있다.

전국 소집에 관한 사무는 육군에 있어서는 육군대신,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대신이 이것을 통할하고 육군에 있어서 사단장, 연대구 사령관과 해군에 있어 해군진수(海軍鎭守) 부사령관, 해군 인사부장은 각각 그 사무를 분장(分掌)하여 본다. 그리고 소집사무에 관한 지방의 최고기관은 육군에는 사단장, 해군에는 진수부사령장관으로 한다.

소집은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함을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평시의 소집은 일면에 있어 전시나 사변의 때의 소집에 대한 연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집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소집사무에 대해서는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정한 규정은 지방장관, 헌병대장과 그 소부(所部)한 관공리(官公吏)는 이 규정을 준행함을 요한다.

소집은 본적주의로 되어 있고 그 기류지에서 행하는 것은 다만 연습 소집중의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 1) 소집의 종류

소집은 이것을 대별(大別)하면 ①전시 또는 사변시에 하는 소집과 ②평시의 소집이 있고 소집의 일종으로 간열(簡閱)<sup>43)</sup>과 점호(點呼)가 있다.

간열점호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소집의 하나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소집과 그 상태가 다르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간열점호를 소집의 범위에 더하고 또 편의상으로 이것을 평시 소집 중에 더한다. 그리고 간열점호는 응소(應召)하는 문사(文詞)에 대신하여 이것을 참회(參會)라고 함을 예로 한다.

주(註) : 귀휴병(歸休兵) - 현역병으로서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현역병의 정원에 대하여 여분으로 된 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병원의 재영할 연한을 줄여서 어느 기간 동안 향리(鄉里)에 돌아가 있는 것을 허하는 바 이러한 병원을 귀휴병이라 한다.

## 2. 전시 사변시의 소집

### 1) 소집의 종류

(1) 충원소집 - 동원에 당하여 모든 부대의 요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병 이외의 재향병원을 소집함을 이른다.

동원이라 함은 군대를 평시의 상태로부터 전시의 상태에 이동시키는 작용을 이르고 해군에 있어서는 이것을 충원이라 한다.

(2) 임시소집 -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임시로 국민병 이외의 재향병원을 소집함을 이른다.

(3) 국민병 소집 -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국민병을 소집함을 이른다.

---

43) 낱낱이 가려서 조사함.

## 2) 소집의 직권

(1) 육군 - 소집요원의 배당과 기타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는 사관 내에 있어서는 해당 사단장이 하고 연대구관 내에 있어서는 연대구 사령관이 행한다.

어떤 사람을 소집하느냐 하는 즉 소집할 자의 결정은 국민병을 제한 외에는 연대구 사령관이 이것을 행하고 국민병에 관해서는 시정촌장(부윤, 읍, 면장)이 이것을 결정한다.

(2) 해군 - 해군에 있어서 소집할 자는 진수부 사령장관의 명에 의하여 해군인사부장이 이것을 정한다. 그러나 시기 절박하여 명을 청할 새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군대 지휘관이 소집을 진행할 수가 있다. 임시 소집은 임시동원령 또는 육군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이것을 실행한다. 단 총원 소집의 실행 후 그의 수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단장이 이것을 시행한다.

국민의 소집은 국민병동원령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영장의 교부 및 응소원(應召員)의 심득

본인에 대한 소집영장의 교부방법과 본인의 응소심득 등에 관해서는 육군소집 규칙 제4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 되었다.

영장의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영장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시를 기입하고 날인(응소원에 대하여 수령한 자는 기명 날인)한 위에 곧 이것을 반부(返附)할 것.(육군소집규칙 제26조)

응소원에 대하여 영장을 받은 자는 곧 확실한 신속한 방법으로서 소집부대, 도착일시를 본인에 통보(도착 지연할 근심이 있는 때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신 등으로써)하고 또한 속히 영장을 교부할 처치를 할 것.

연습소집, 교육소집 또는 귀휴병 소집중의 자에 대한 영장을 받은 자는 그 연습소집, 교육소집 또는 귀휴병 소집 부대에서 이것을 송부(送付)할 것.(육군소집규칙 제47조)

(1) 응소원의 응소는 좌의 각 호에 의한다.(육군소집규칙 제48호)

① 영장을 가지고 지정한 일시에 도착하여 소집사무에 제출할 것, 단 영장을 휴대함을 필요하지 않는다.

② 영장 또는 소집의 통보를 받은 일시의 관계상 지정한 시일에 도착지에 도착하기 불가능한 자는 소재지의 헌병 또는 경찰 관리에게 영장 또는 통보를 받은 일시와 출발일시의 증명서를 받아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 폐쇄(閉鎖)후인 때 또는 집합장에 집합할 때에는 곧 소집부대)에 도달하여 제출할 것.

(2) 응소원으로서 사고로 하여 지정한 일시에 도착지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자의 수속은 좌의 각 호에 의한다.(육군소집규칙 제47조)

① 질병에 인한 자는 연대구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곧 이것을 본적지의 시정촌장(출발 후인 때에는 소집사무소에도)에 제출할 것.

② 전염병 예방으로 하여 교통차단, 격리 또는 정류(停留)를 명하게 된 자, 기타 부득이한 사고에 인한 자는 연대구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를 곧 본적지의 시정촌장(출발시인 때에는 소집 사무소에도)에 제출하고 또한 기타의 지응장(支應長), 시정촌장, 헌병 경찰관리, 반장 또는 역장(驛長)의 증명을 받아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 폐쇄후인 때 또는 소집장에 소집할 때에는 곧 소집부장)에 도달하여 이것을 제출할 것.

③ 범죄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고에 인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응소원에 대하여 영장을 받은 자로부터 연대 사령관에게 하는 계서에 헌병 또는 경찰 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곧 본적지의 시정촌장에 제출할 것

④ 비상사변에 인하여 교통을 차단하게 된 자는 그 뜻을 가장 가까운 부대(부대 없는 지방에 있어서는 시정촌장, 헌병 또는 경찰관리)에게 제출할 것

전 항 각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집 기일을 연기함이 없다.

주 : 조선은 연대구사령관을 육군병사부장에, 시정촌장을 부윤·읍면장에 준한다.

(도착기일연기계의 양식)(1)

○○의 도착지연계			
도착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
도착지	○○		
소집부대	○○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번지		
	징집년 역종관등급 씨명		
위 ○○의 도착하기로 되었던 기일에 도착이 어려워 의사의 진단서(○○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년	월
	위	씨	명
		일	인
		○○육군병사부장 전	

(도착기일연기계의 양식)(2)

도착지연계			
도착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
도착지	○○		
소집부대	○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번지		
	징집년역종관등급 씨 명		
위 응소도중 ○곳에서 질병이 발생(○○에 의해) 소집기일에 도착이 어려워 의사진단서(○○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년	월
	위	씨	명
		일	인
		○○부대장 전	

(불응소계의 양식)

범죄(소재불명)의 불소응계			
도착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		
도착지	○○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모번지		
		징집년 역종관등급	씨      명
위 범죄(소재불명)로 도착지에 도착이 어려워 헌병(경찰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위 소집통보인	씨      명      인
			(호주 또는 가사담당자)
			○○육군병사부장 전

소집을 받은 자가 지정한 일시에 도착지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사고가 중지한 때에는 본적지의 부운읍면장에 제출하고 곧 소집사무소(소집사무소가 폐쇄 후인 때 또는 집합장에 집합할 때에는 곧 소집부대에) 도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착지연사고지계의 양식)

도착지연사고지계(到着遲延事故止屆)			
도착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		
도착지	○○		
소집부대	○○부대		
본적지	도군부읍면정동리 모번지		
		징집년역종관등급	씨      명
위 소집의 명을 받은 ○○의 사고로 인하여 아직 소집에 응하지 못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씨      명      인
			○○부운(읍면장) 전

### 3. 평시의 소집

#### 1) 평시소집의 종류

(1)보결(補缺)소집 (2)평시의 임시소집 (3)연습소집 (4)임시연습소집 (5)교육소집 (6)방위소집 (7)간열점호

## 2) 평시소집의 실제

(1)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소집한다.

(2)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인하여 귀휴병을 소집하되 더 병원을 요할 때에 이것을 소집한다.

(3) 예비병은 근무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예비병역을 통해 5회 이내 이것을 소집할 수 있고 또 이 소집은 1년 1회로 하여 1회의 일수는 육군에서는 실행 횟수를 2회로 하고 실행 일수는 21일로 한다.

(4) 제1보충병의 교육소집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118일 이내 이것을 소집할 수 있고 청년 학교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는 소집 않기로 되어 있다.

(5) 간열점호 - 귀휴병, 예비병과 보충병은 매년 1회의 간열점호를 행할 수 있다.

예비병과 교육병 소집 완료한 제1보충병은 복역 기간을 통하여 간열점호를 5회로 하고 통상으로 1년의 사이를 두고 행한다. 또 아직까지 군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제1보충병은 그 복역 기간을 통하여 간열점호를 4회로 하고 통상으로는 2년을 새로 두고 행한다.

## 3) 소집의 직권

(1) 임시소집과 보결(補缺)소집은 주무(主務)대신의 명에 의하여 또 그 인가를 받아서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이것을 행한다. 그러나 시기 절박하여 명을 기다릴 사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의 부대 지휘관은 소집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습소집은 주무대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단장 또는 진수부 사령장관이 그 기일, 인원, 부대와 일수를 정하고 육군에 있어서는 사단장이 필요한 사항을 연대구 사령관에게 통달하고 연대구 사령관은 그 통달에 기하여 연대구내의 필요 소집자를 정한다. 그리고 해군에 있어서는 진수부사령장관의 통달에 기하여 해군인사부장이 필요 소집자를 정한다.

(3) 교육소집은 육군에 한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일, 인원 부대와 일수는 육군대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단장이 이것을 정한다. 이리하여 그 인원은 육군대신의 통달에 의하여 사단장이 이것을 연대구에 배당하고 연대구 사령관은 보충병의 총수(總數)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징모구에 배당하고 보충병의 징집 순서에 의하여 이것을 소집한다.

(4) 방위소집은 적기의 공습 혹은 낙하산부대 강하 기습적전상륙 등 여러 가지의 사태를 예상하고 만전의 국방위 태세가 필요한 바 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재향의 군인을 소집하고 그 부근 방위에 당하게 한다.

## 4. 소집의 연기 면제

### 1) 근무연습소집과 간열점호의 소집

귀휴병, 예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근무자 연습소집 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함을 득한다.(병역법 제61조)

(1) 남은 사람으로서 대신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 대우자



- (2) 시정촌장, 조역, 수입역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 (3) 제국의회, 부현회, 시정촌회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의원. 단 그 회의 중에 한함.
- (4) 제국 외의 지역(地)에 여행 또는 재류한 자
- (5) 제국 외의 지역(地)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

주(註) : 병역법 제61조 제1호에 기재한 자의 근무연습소집 또는 간열점호의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청은 미리 그 자의 본적지, 기류지, 역종(役種), 병종(兵種), 징집년, 예비역 편입년, 관등급 씨명과 이 유 등을 갖추어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자는 그 인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관동주 또는 만주국에 여행 또는 재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연습소집 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하지 않는다.

## 2) 군사고장에 의하는 소집면제

소집된 자의 소집에 인하여 가족(호주를 포함하고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확증이 있을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고사를 만든 때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하다.(병역법 제63조)

주(註) : 병역법 제63조에 의하여 소집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윤 또는 읍면장과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집의 면제를 소집부대장에 원출해야 하고 부윤 또는 읍면장과 경찰서장은 군사부조 기타의 방법을 청하여도 오히려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이것을 수리(受理)하고 또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3)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는 소집 면제

소집의 된 자가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1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함을 득한다.

소집이 된 자가 병역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소집 기일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하게 된 자, 그의 연기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집 기일 또는 소집의 연차(年次)를 변경한다.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내(堪耐)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인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병역법 제62조)

〈출전 : 平山泰三, 『兵役法要說 朝鮮徵兵讀本』, 世昌書館, 1943년, 33~63쪽, 114~196쪽〉

## 5) 『징병제실시 기념 전선공직자대회 회의록』(1943)

징병제시행 감사와 적 미영(米英)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 기록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

### 대회의사록 속기록

제1일 (오전 11시 3분 개회)

경성(石森久彌군) 지금으로부터 징병제시행 감사와 적인 미·영 격멸결의 선양 전선(全鮮)공직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동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경성(石森久彌군)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경성(石森久彌군) 조서(詔書)낭독, 봉독자는 함남의 笹川恭三郎군.

(조서봉독)

경성(石森久彌군)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으로부터 총독각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총독각하 훈화.

조선군사령관각하 축사.

진해 경비부사령관각하 축사.

경성(石森久彌군) 총독각하, 군사령관각하, 정무총감각하 퇴장하심. 일동기립하기 바랍니다.

대회 의사속기록(제1일)

(전원 기립)

총독각하, 군사령관각하, 정무총감각하 퇴장하심.

경성(石森久彌군) 이상으로 오전 중의 행사를 마치기로 합니다.

오전11시50분 휴식,

오후1시10분 재개,

경성(森安敏暢군) 오전에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정하기로 생각합니다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경기(元村 肇군) 매우 외람되지만, 제가 좌장을 추천하고자합니다. 賀田直治군을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찬동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다.)

(좌장 賀田直治군이 등단)

좌장(賀田直治군) 외람되지만 좌장자리를 더럽히겠습니다. (박수) 의사(議事) 통제(統裁)를 위하여 정·부의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대구 (杉原長太郎군) 의장은 1명, 부의장은 2명으로 하고, 그 지명은 좌장의 지명에 의하고자 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며 박수치다).

좌장 (賀田直治군) 의장에 伊達四雄군, 부의장은 四元嘉平次군, 大峯丙朝군을 추천합니다. (박수치다).

경성 (森安敏暢군) 정·부의장의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장 등단)

의장 (伊達四雄군) 우리는 추천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의 자리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만사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부터 회의를 열겠습니다. 의사진행상 石原憲一군, 石森久彌군, 中村郁一군, 森安敏暢군, 夏山茂군, 中本弘鐘군, 賀田直治군에게 회의계를 위촉했으니 이상 양지하기 바랍니다.

경성 (森安敏暢군) 夏山茂군으로부터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성夏山茂군 등단)

경성 (夏山茂군) 참으로 외람됩니다만, 불초 저로부터 그 사이의 경과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즈음하여, 먼저 본 대회를 개최하기로 된 동기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들 공직자는 각각 주어진 공무상의 직책을 완수해야 할 것은 물론, 어떤 때는 관민간의 연쇄체(連鎖體)로서, 어떤 때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평소에도 그 책임은 참으로 중대한 것이나, 특히 유사 이래 처음인 이 시국을 즈음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책임이 더한층 무거워진 것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결전(決戰)에 이어서 결전하에서, 우리들은 출선공행함으로써 전력의 증강에, 생산 확충에, 국민이 단결함에, 사상모략의 방어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상주하는 전장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오로지 미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반도는 신정(新政) 이래 30여 년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인구는 1천만 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육 및 산업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격세적인 진전을 이루고, 사회 문화와 민도의 향상은 엄청나며 옛날의 모습을 쇠신하고, 반도동포는 이제야 황국신민으로 똑같이 전향했으므로, 그 애국의 지성은 참으로 괄목하게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기백은 경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앙정부에도 인정이 되어, 드디어는 반도동포에게도 병역법이 시행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선일체의 대 정신 아래 병역의무를 다 하게 하는 세기적인 은전으로서, 물론 능위(稜威)가 베푸는 것인 바, 1억 국민이 똑같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반도 2천5백만 민중은 전부 일어서게 되고, 이것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 공직자의 책임은 그것을 위하여 더한층 무거워졌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야 서남태평양에서 적의 반항작전은 날이 갈수록 가혹해 지고, 피차의 결전양상은 참으로 낙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들 1억 국민은 똑같이 결의를 공고히 하고, 적인 미, 영을 격멸하는 기개(氣概)로써 총 진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때마침 지난 8월 중순, 경성 부회의원 약간명이 회합을 할 즈음, 시국의 중대성을

이야기하며, 또 징병제실시에 관하여,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 이것을 경성의 伊達부 의장을 통하여 경성부회의원의 간담회에 자문하는 한편, 경성에 있는 경기도회의원에게도 의논하였 든 바, 모두 열렬한 찬성 아래 전 조선의 걱정을 함께하는 동지들인 우리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격을 함께하고 아울러 미, 영을 격멸하지 않고서는 그만 두지 않는 결의를 새로이 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준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경성부회의 원으로부터 약간 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드디어 전선 공직자대회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50여 일 남짓 동안 각각 사무를 분담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특히 전선 각지의 공직자 계(界)의 주된 분이나 전선 각 도회(道會) 및 부회(府會)의 부의장 여러분께 자문을 받은 바, 모두 마음 으로부터 찬동해 주셔서 나아가서 발기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회의원, 부회의원, 읍회 의원은 전선에 걸쳐서 2천5백여 남짓이 있기에, 이 분들에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실은 면협의회원 분들에게까지도 그 범위를 미치게 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로 본 대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만은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회는 원래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하 기로 되어 있으나, 전시수송력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인원에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원은 4백 명으로 한정했으나, 아직도 각지에서 열렬하게 참가신청이 쇄도하여 그 열성의 나타남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었으나, 부득이 기정방침에 따라 여기에 모인 여러분 이외의 참 가신청은 거절했던 것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본 대회는 오직 일시적인 집합에 그치지 않고, 이 회합으로 전선(全鮮)의 우리들 공직자 자신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며, 또한 현재 피차 결전의 양상이 가 혹함을 감안하여, 반도재주국민으로서 각각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거론하며 실천공행(躬行)하고자 하는 염원 하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1의제 및 제2의제를 제출 하였으며, 각각 구체적인 의견제안을 구하고 있는 바, 제1의제에 대한 제안 78건, 제2의제에 대한 제 안 76건, 합계 154건이며 마감 후 접수한 것도 23건과 같이 많은 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에게 배포한 별책과 같은 내역으로 어느 것이나 적절하고 또한 열렬한 의견들뿐입니다.

요는 본 대회는 그 참가신청의 양상이나 제안내용이 참으로 진지한 것으로서, 결전(決戰)하에서 반도공직자의 열의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회를 개최함에 이르렀던 동기 및 그 사이의 주요 경과입니다. 또 본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군 및 관의 각 방면에서 절대한 원조를 받았음을 보고함과 동시에 깊이 감사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경성부회는 본 대회개최를 위하여 즉시 임시부회를 초집(招集)하여 이 대회를 위하여 많은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의결하고, 경성부당국은 일금1만 원이나 되는 기부금을 계상했 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국에 비추어 공무 다단함에도 불구하고 부 당국에서는 浜田이사를 비롯하 여 많은 부 직원의 여러분이 우리들 준비위원의 도움을 주어서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 다. 이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군사령부, 본부(本府) 기타 각 도 도청에서도 여러분과 연락협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 대적인 원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여기에 보고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뜻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대강 보고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수치다.)  
 경성(森安敏暢군) 지금으로부터 伊原조선군참모장 각하의 군사강연이 있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伊原조선군참모장 등단) (군사강연 34쪽)  
 경성(森安敏暢군) 지금으로부터 해군무관부 松本해군대령의 강화가 있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松本해군대령 등단) (군사강연 49쪽)  
 경성(森安敏暢군) 재무국장 각하의 전시재정에 관한 강화가 있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水田재무국장 등단) (전시재정 강화 56쪽)  
 경성(森安敏暢군)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끝내겠습니다.  
 의장(伊達四雄군)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오후4시10분 산회

### 제2일 (오전 9시 개회)

경성(石森久彌군) 지금으로부터 전선공직자대회 제2일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무총감 각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田中正무총감 등단) (다나가 정무총감 강연 21쪽)  
 의장(伊達四雄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의 제를 낭독합니다.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완벽을 기함과 동시에 고마우신 성지(聖旨)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시켜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의견.”

#### 제1의제에 대한 제안

1. 일본정신의 양양 평남도, 청주읍, 황주읍, 함흥부, 북청읍, 예산읍, 공주읍, 경성부, 방어진읍, 영흥읍, 부산부, 강원도, 조치원읍, 충북도, 경북도, 평북도, 함남도  
 (가) 천황 귀일(歸一)  
 (나) 경신(敬神)숭조(崇祖)  
 (다) 도의(道義)양양(昂揚)  
 (라) 보은(報恩)감사(感謝)  
 (마) 미영(美英)사상의 절멸(絶滅)
2. 군인원호사업의 보급강화 목포부, 함흥부, 안성읍, 경성부, 안동읍, 영흥읍, 신포읍, 남원읍, 경북도, 전북도, 강원도
3. 연성(鍊成)의 강화 목포부, 함흥부, 북청읍, 안성읍, 경남도, 순천읍, 영흥읍, 평양부, 신포읍, 원산부, 제천읍, 전북도  
 (가) 청소년 연성  
 (나) 지도자 연성  
 (다) 노장년계발 및 연성

4. 국어 상용 강화철저 방어진읍, 함흥부, 경성부, 여수읍
5. 강연, 강화, 좌담회 및 영화, 환등 및 그림 연극에 의한 주지(周知) 철저 경기도, 청주읍, 북청읍, 예산읍, 경성부, 공주읍, 방어진읍, 경남도, 황주읍, 순천읍, 포항읍, 진영읍, 충북도, 제천읍, 충주읍, 여수읍, 춘천읍, 강원도, 신의주부, 함북도
  - (가) 부락단위의 순회강화, 영화, 좌담회
  - (나) 쉬운 사실(史實)이야기의 인쇄배포
  - (다) 표어 또는 선언에 의한 주지철저
  - (라) 고마우신 성지(聖旨)를 구현하는 대중적인 창작의 현상모집과 이것의 영화화
6. 부인층의 계발 청주읍, 목포부, 북청읍, 안성읍, 연안읍, 경성부, 방어진읍, 안동읍, 대구부, 영흥읍, 평강읍, 원산부, 부산부, 충북도, 거창읍, 전북도, 무산읍
  - (가) 어머니회 개최
  - (나) 부인보도원의 설치
  - (다) 군인 어머니의 미담이나 가화(佳話)의 그림 연극
  - (라) 군 막사 및 지원병 훈련소 견학
  - (마) 1944년 적령자의부형모자회 개최
7. 징병제 시행 감사기념일 설정 및 기념탑 건설 목포부, 평북도, 강원도, 평강읍, 남원읍, 춘천읍

본 의제에 대한 제안은 7건이 있었으며, 그 내용의 배열은 각자 앞에 배포한 인쇄물에 기재한 대로 입니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고 하는 자가 있다)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합니다. 제안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고 즉시 제안자의 설명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경성(森安敏暢군) 제안자가 67명이나 있다고 한다면, 전원에게 설명을 요청한다면 시간관계상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지명으로 한 사람이 약15분간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도록 동의를 제출합니다.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伊達四雄군) 지금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는 의장이 지명하기로 하고, 한 사람이 약15분 이내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회의원인 榑富太郎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榑富太郎군 등단)

전북(榑富太郎군) (박수) 지금부터 지명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선반도 통치역사상에 새롭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일 페이지를 추가하는 바, 극히 의의가 중대한 바의 오늘 공직자대회에서 우견(愚見)발표를 허락받은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며 또한 잊지 못할 감격입니다. 지금부터 명예에 의하여 제1의제인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여 이것을 어떻게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 투철 시키느냐 하는데 구체적인 시책에 대하여 생각을 피력하여 여러분의 지도를 바라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농촌에 있는 관계로 조선 2천5백만 중에서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민중에 대한 지도와 침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라는 것은 반도 2천5백만 동포의 무상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들 백성 1억의

무한한 영광으로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상 참으로 획기적이고 성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민초 1억은 3천년 이래의 진충(盡忠)보국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전 능력을 짜내어 전 지능을 기울여 이 문제에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 정신을 일반대중에게 이해 침투시키고, 또 어떻게 이 감격을 2천5백만의 민중과 나누며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게 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지도계몽문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는 이 지도계몽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도기구 문제입니다. 현재의 기구를 생각해 보면, 행정관청, 총력연맹, 혹은 또 징병제실시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신문, 라디오, 모든 언론보도기관을 총동원하거나, 또는 부락의 총동원이라든지 강연회, 영화회, 모든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착실하게 그 성과가 오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지도계몽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끼는 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보편성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유식층에 대해서는 매우 유효하지만, 조선의 아주 시골의 농촌 일반대중을 대하거나 또 부인층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현재방법으로서는 그 침투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持久)계속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발표되자 신문도 라디오도 모든 잡지가 한 색깔로 뒤덮이지만, 차차 세월이 흐르게 됨에 따라 자연히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보편성이 모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성이 빈약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의 지도 계몽운동의 통폐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시 지도계몽기구의 확립과 강화정비라고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병제도의 지도계몽을 위하여 재단법인과 같은 조직에 따르는 것입니다. 독립된 지도 계몽 기구의 설립도 생각해 보았으나, 다만 현재의 행정기관의 간소화와 정비이념에 따라서, 또한 현재의 총력연맹 애국반에 이르기까지 사업정비가 진척되고 있어서 착실하게 효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연맹기구의 일부를 이것을 위하여 강화 확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맹기구를 보면, 그 활동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관공서의 직원이나, 혹은 일반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바쁜 직장을 갖고 있어서, 연맹자체의 직책에 몰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병제도와 같은 중대안건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연맹의 일부에 병제(兵制)부를 신설하여, 이 병제부에는 부장 이하 전임을 상치기관으로 해서, 도, 부, 군 연맹에 이 제도에 대한 선전, 공작, 운영에 종사시킨다면 대단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맹의 선전입니다만, 이 선전부도 역시 병제부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강화를 해서, 이곳에 전임을 상설하여 임직원을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맹의 지구 강화에 관해서는 비상인원과 또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만, 국가를 위하여 그와 같이 중대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산 같은 것을 내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도계몽입니다만, 지도계몽은 정도에 맞추어서 지도계몽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즉 피지도자의 정도를 생각하면서 지도강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반도의 일반 농촌대중이 이해력

이 낫다는 것은 국민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교재로 이야기해도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며,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을 접하고 있을 때 통절히 느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잡지, 좌담회, 강연회는 역시 일반대중의 것이 아니고, 유식자용으로 일반대중은 생각한 대로 이것으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활동사진도 역시 시골 사람들에게는 장면이 고답적이라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영화의 템포가 빠르다고 한다든지 해서 그들 농촌대중의 흥미와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화라든지 그림 연극이라 해도, 유식자용과 또 일반용으로 음미하면서 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계몽운동에 지도력이 모자라며 계속성이 없어서, 이후에는 피지도자의 정도문제를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데서 2, 3가지의 문제를 또 생각해 보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극히 간단하게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로써, 또 농촌지역에는 농촌의 지식을 가지고 지도할 것, 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합니다. 다음은 군인 및 군인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친숙한 마음을 환기할 것,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대중으로 하여금 군인생활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 간부가 가능한 한 시골 쪽으로 행군 같은 것을 해서 조선농촌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그들도 마음깊이 조선생활에 친숙하게 될 장면도 있기에 그러한 군대와 조선대중과의 참다운 접촉을 촉진해 나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장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대한 교육, 이것은 현재는 특별 연성령(鍊成令)이 있으며, 장정해당자는 매우 연성이 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역시 얼마간 연성이 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하여 연성을 강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식 상층계급의 실천수법, 어제 도 井原 참모장 각하의 강연에 있었던 바와 같이 지원병 중에는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은 겨우 영점 및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래도 상층계급의 동향이라거나 행동이라는 것이 매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상층계급의 실천수법으로써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이때 종이 울리다) 우리들 공직자로서, 이 전선(全鮮)의 공직자에 의하여, 새로이 나오게 된 결의와 분기를 가지고,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다음으로 목포 부회의원 中島健三군 등단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中島健三군 등단)

목포 (中島健三군) (박수) 저는 목포부의 나카지마입니다.

제1의제에 대하여 각지로부터 각자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본 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7개의 요목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3개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견의 세 번째에 들었던 연성의 강화, 특히 저는 청소년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 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은 각각 상당한 훈련을 받고 있으나, 졸업 후 징병적령기까지는 폐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면 소위 뒷걸음을 쳐서, 모처럼 학교훈련의 효과가 감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기에, 졸업 후 계속해서 징병적령기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 양면의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학교를 중퇴하거나 퇴학자 또는 아무런 학적을 안 가진 징병전의 청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 청년에게 실시 중입니다. 청년훈련소, 청년특별연성소는 특히 그 필요성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상 각종 청소년에 대한 훈련을 일정한 법제 하에 내지의 청년학교의 예를 본받아 이것을 통합하여 청소년훈련소의 방도를 확립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의 훈련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제(部制) 등으로 중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국민학교졸업자, 학령기가 없던 자들로 구분하여 3개 또는 4개의 부로 편성하여 각자 직책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국을 선택하고 또 징병검사까지의 훈련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훈련시국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기로 하여, 명량한 징병적령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자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6에 들고 있는 부인층의 계발, 그것의 일부분으로서 징병적령자의 어머니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제에 대한 모성의 감화는 참으로 큰 바가 있어서, 적령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의 정신적인 교양, 지도가 필요한 것은 징병제도의 실시가 획기적인 크나큰 발전이라는 것과, 현하 반도 대부분의 모성이 가정에 있어서의 실정으로 고찰해 보면,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 지도와 교양의 성패가 본 제도의 운용상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말씀드릴 것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머니회라는 것은 상설기관의 명칭이 아니며, 각 도회지마다에서 개최하는 적령자의 어머니를 지명해서 임시로 회합을 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실행날짜가 이미 눈앞에 당도하고 있어서, 하루속히 실행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각 지방마다 이미 실행해 나가고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각 지방이 보조를 맞추어서 부, 읍, 면, 동을 단위로 하여 수시로 이것을 전선적으로 개최하여 징병에 관해 일반여성에게 정신적인 강화나 군국미담, 주된 전황보도, 영화, 조선야담, 만담, 강담 같은 것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군사사상을 보급하고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충군애국의 본의를 철저하고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제7에 들고 있는 징병제시행 감사기념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징병제기념일이라고 하기로 했으나, 그와 같이 정정한 것 같습니다. 반도동포에 대한 징병제 실시야말로 참으로 반도시정의 획기적인 일대 진전이었으며, '일시동인 내선일체'를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는 마음을 받들어 모시고 황송하고 감격의 극치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고마운 성지(聖旨)를 2천5백만 동포에게 침투시켜 반도를 통틀어 진충보국의 정성을 받들기 위하여 징병실시의 날 즉, 8월 1일으로써 징병기념일(이것은 가칭입니다.)을 공포하여, 그 당일에는 고마우신 성지의 침투철저와 군사사상의 보급과 군사원호사업의 강화철저나 청소년층에 대한 지조의 진작과 반도인민의 필승신념, 감투정신의 함양 등 징병제 실시에 대한 정신적인 근간을 배양함과 함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제도의 운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현하의 매우 중요한 요무(要務)라고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대조(大詔)봉독, 국기계양, 강연, 환동, 그림연극, 영화, 군인

원호사업자금의 전국적인 각출, 이것에 대하여 한 마디 첨가해 두고자합니다. 8월 1일의 기념일으로써 애국반 등을 통하여 군인원호사업자금으로서 전 조선에서 한 집 당 먼저 10전 정도를 각출금으로 내게 하여, 이것으로 원호사업자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의 행진운동이라거나 표어게시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행정 각 청의 기구나 또는 총력연맹의 기구를 통하여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이것을 실시하는 의의를 이 해시키며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본 대회 이름으로 당국에 이상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도록 특별히 요청할 것을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대구 부회의원 靑田永德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靑田永德군 등단)

대구 (靑田永德군) (박수) 제1의제 아래에서 각 부, 읍, 면에 부인보도원을 두고 부인층의 계몽을 도모한다고 하는 출제 아래, 그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병제도가 시행되고, 그 징집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야 반도청소년은 그 패기가 꺾이지 않는 기개가 하늘을 찌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천황의 방패가 될 장정을 보다 낫게 그 자질을 연성하여 이것을 나라에 바치는 것은 무엇보다 부인들의 힘 즉 어머니에게 기대는 바가 극히 큰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 어머니가 어질고 그 자식이 불초한 자는 없고, 애비는 현명해도 불량한 자는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아도 어머니의 교훈이 얼마나 그 자식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반도출신의 전투조종사가 출세하여 고향방문을 왔을 때 그 어린 독수리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늙은 모습, 사나이다운 모습을 누구보다도 빨리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이고자 그의 어머니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감격과 아들의 기쁨은 도저히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어머니인 반도부인층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 그 대부분은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국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는 점이 많으며, 오히려 그 자식의 타는 듯한 애국적인 순정에 빠져 들어가는 현상이었습니다.

반도도 그 옛날 신라시대에는 확고한 무사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사도정신과 완전히 합치하고 있었던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간단하게 들면 당시에 김유신이라고 하는 무장이 있었으며, 그 무장은 늙어서 그 자식이 전장에 출정하여 전쟁에 지고 돌아 온 자식에 대하여,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 대해 한번 전장에 나가면 승리하거나 죽음이 있을 뿐 진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결단코 우리 집 문턱을 넘게 하지 않겠다고 엄하게 꾸짖으며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늙어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즉시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떠했는가. 그의 어머니도 또한 불초 아들로 아무래도 칠칠치 못하다, 그 칠칠치 못한 꼴이 무어냐 하며, 결코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들은 크게 발분하여 흥기(興起)하는 바가 있어서 세 번 전장에 나가서 큰 공훈을 세워서 돌아와, 비로소 그의 어머니가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라의 무사도정신은 면면히 이어와서 우리를 반도인의 핏줄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5백년간 부인을 가볍게 보고 무사도를 경시하는 시대정신에 덮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이

번 징병제도가 시행되자 홀연히 또다시 그 핏줄이 되살아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백성에게 혼이 되돌아 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도부인으로 하여금 징병제가 시행하게 된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모시게 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이 지상의 영예임과 동시에 한 집안 한 몸의 명예인 것을 주부층의 뇌리에 강하게 새기기 위하여 반도의 부, 읍, 면의 부인보도원을 두고 좌담회나 강연회 등의 집회를 이용하며 친숙하게 그들의 안방을 방문하는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이러한 취지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현하의 급선무로, 황국의 간성(干城)을 내보낼 때에 그 어머니의 늙은 태도야말로 그 장정이 전선에서 공훈을 세울 것인가 마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부인보도원 한 사람에게만 위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공직자들도 출선해서 그 일익을 맡아서 한껏 가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금을 통해서, 특히 대동아전쟁하의 군국의 어머니로서 참으로 건장하고 여러 눈물겨운 실화, 미담 등을 언문으로 직역하여 널리 반도부인층에 읽히게 할 때는, 종이 연극 등으로 결전(決戰)하에서 어머니 된 자의 임무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인식시키는 데는, 역시 친밀하게 그 어머니와 기쁨을 함께 하고 걱정을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며, 손을 잡고 이끌 수 있는 부인보도원의 활동이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통감하여 굳이 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국에서도 이점을 잘 통찰하셔서 채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단을 내려가고자 생각합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君) 다음으로 경북도회 金田龍周君을 지명합니다. 등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田龍周君 등단)

경북(金田龍周君) (박수) 명에 의하여 제1의제에 관해서 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반도 거주 2천5백만 민중이 광대무변한 황은을 감격해 마지않는 징병제의 실시를 맞이하여, 어떻게 해서 그 완벽을 기하고, 성지(聖旨)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철저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먼저 그것의 첫째 급선무는 반도민중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일본정신문화의 진수에 투철하고, 참다운 정신적인 내선 일체화를 꾀함으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 5가지 항목을 들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 방면에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전 민중으로 하여금 경신(敬神)과 신앙생활을 시켜서, 일본 신도(神道)의 진수를 투철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세일계의 천황을 추대하고 그 국체를 세계만방에 유례가 없는 숭고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황조(皇祚)조국(肇國)의 대본인 제정(祭政)일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천황은 코오타이신구우(皇大神宮)의 대 제주(齊主)이시며, 또한 국가의 원수가 되시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치정(治政), 즉 정사(政事)는 황조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皇祚天照大神)의 신칙(神勅)과 신덕(神德)을 받드는 황손이신 천황을 받들어 모셔서, 위로는 신려(神慮)를 편안히 모시고, 아래로는 만민을 구제하시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정치도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부분이어서, 이것이 일본국체의 정치윤리인 것입니다. 군신일체, 국민일심도 여기에서 생겨나, 인간 일생은 유일무이한 생명을 호국의 귀신으로서 기꺼이 용감하게 지며, 우리 대군(大君)의 주변에는 바다에 가면 물에 절인 시체, 산에 가면 풀이 무성한 시체가 되는 일본무사훈도, 귀여운 내 자식을 야스쿠니(靖國)의 신에게 받치는 일본 어머니가 강한 것도, 그 근원은 신과 천황에게 귀일하는 국민

의 표현으로서 신국(神國) 일본은 국가국민의 근원을, 조국(肇國)의 신과 그 황손이신 천황에 귀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반도의 실정은 유식계급은 별도로 하고, 일반민중은 아직 일본신도(神道)와 국체의 본의(本義)에 침투하지 못하고, 종래의 다신적인 인습에 의하여 일본신도와 종교적인 신 아울러 미신적인 귀신과의 인식이 판연(判然)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곤란한 사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징병을 내보내는 반도의 부모로서, 내 자식을 조국의 신에게 기꺼이 받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서 야스쿠니신사에 봉사(奉祀)되는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신에게 귀일한다는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고 현세의 신이신 천황에 귀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선이 동조동근이라는 사실(史實)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코지키(古事記)에는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가 타카마가하라(高天原)로부터 신라에 천강(天降)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끝없이 많은 내선관계의 사실(史實)이 있으며, 내지로부터 반도에는 임나일본부, 백제에의 원군 등 커다란 역사와 반도로부터는 나라조(奈良朝), 평안(平安) 조(朝)시대에 많은 학자나 기술자, 정치가가 건너와서 조정에 중용되었다는 등 거의 한 나라와 같이 왕래가 빈번했으며, 지금부터 천수백년전 칙명을 받들어 만들어진 신찬(新撰)성씨록에는 킨키(近畿)지방의 사족(士族)계급의 성씨근원을 조사했더니, 약3분의 1이 반도방면에서 건너와서 황화(皇化)되었다고 합니다. 또 반도의 신라 제4세의 옛날 탈해왕은 왜의 동북쪽 천리 다파나(多婆那)국으로부터 건너왔다고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왜는 지금의 큐슈지방으로서 다파나국은 뒤쪽 일본인 타지마(但馬)인 것입니다. 또 신라건국 제1세 혁거세 왕으로부터 제4세 왕까지 통리대신을 맡았던 표공(瓢公)은 왜로부터 표주박을 허리에 차고 신라에 건너갔다고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화시대부터 우리들 조상의 전통을 재인식시키고 사기양양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가 문약(文弱)하고 무기력에 흐른 것은 근대에 와서 일입니다. 그 옛날 반도의 무사도는 참으로 일본무사도와 공통되게 치열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라의 화랑제도는 일본의 무사도와 완전히 공통된 것으로서 임금에 충, 부모에게 효, 친구에게 믿음,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 강령으로서, 삼국사기에는 화랑제를 설명하기를 현좌와 충신이 이로부터 솟아나고, 양장과 용졸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의 사기가 어떻게 충용하고 의열(義烈)했는지는 역사에 많은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운명을 결정한 황산벌의 대회전에서 백제장군 계백이 선모(善謀)하면서 용전하여 실력 있는 신라군이라 할지라도 대장군 김유신도 처부술 방법이 없고 기력은 완전히 다하며 드디어 총와해가 되는 위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때 우(右)장군 흠순(欽純)은 그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기를, '신(臣)이 된 몸은 충성을 다해야 하며, 자식이 된 자는 효도를 다해야 한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면 충과 효의 양쪽을 다 잃는다.' 반굴은 삼가 부명(父命)을 받들어 적진에 돌입하여 멋지게 전사했다. 좌(左)장군 품목(品目)은 그 아들 관상(官狀)을 불러 세워 말 앞에 서게 하고 여러 장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 이제 열여섯 살이 되지만 사기가 매우 용맹스럽다, 오늘 역할에 3군의 표적이 잘 될 것이다.' 관상은 군마와 창 하나로써 적진에 돌진하여 적의 장수 계백에게 결전을 걸었다.

백제장군 계백은 그가 나이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서, 그를 해치기를 차마 못하여 살려 보냈다. 관상이 부친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가 적숙에 들어가서 적장을 잘 베고 깃발을 세우지 않은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며 더듬어 말하면서 손으로 우물물을 떠 마시고 또다시 적진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듣고 있다. 계백은 그를 잡아 목을 베어서 말안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품목은 아들의 목을 잡고 푸른 피(碧血)의 소매를 보이며 말하기를, '내 아들의 모습이 살아 있는 것 같구나, 잘도 왕을 섬기며 죽어서 행복할 것이다.' 3군의 군사들은 이것을 보고 감격과 분개하여 결사적으로 진격해서 백제를 격파했다고 삼국사기에 쓰여 있다.

이조 초기 단종은 그의 숙부 세조 때문에 폐위가 되어 왕위를 찬탈당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대신들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고자 할 때, 세조에게 잡혀서 처형될 때에, 세조는 국민들 앞에서 가령 한마디라도 대신으로부터 임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수 있는 한의 극형을 가해서 고통을 준 것이나, 그중에서도 성삼문은 달구어진 인두로 온 몸을 지짐을 당하면서, 이래도 신(臣)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따졌으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정통성이 없는 나리에게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쇠는 식었다, 다시 달구어 오라'고 화내며 절규하였다. 그중에는 산채로 온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극형을 가해도 정통성이 없는 당신은 임금이라고 절규했다. 그와 같이 충렬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 사(死)대신의 사적(事跡)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조상들이 충렬했는가의 편린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이 어떻게 자손에게 사기(士氣)를 미치는가는, 저 대충신인 쿠스노기(楠)공(公)의 칠생(七生)멸적(滅敵)의 충훈이 어리어 온지 6백여 년, 명치유신에 피를 끓이고 대군(大君)을 위하여 존귀한 피를 흘린 몇 천만의 결과가 명치유신의 대업을 성취한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의용(義勇)충렬(忠烈)한 조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자손인 자들이 분발해서 그 전통을 흠집 내지 않을 각오를 가지게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종이 울리다).

네 번째는 징병원호사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병역은 우리들 국민의 가장 큰 영광으로서, 또한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원호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이것을 완수하도록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반도의 현실은 우리들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 원호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실천방법으로서 순수한 민중으로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열성을 원조하고 지켜나가면서, 이것을 파악하고, 순 민간단체를 각 면에 설치하고, 관과 협력하여 직접 지도와 원호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주지철저의 건입니다. 당국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반도의 민지(民知)계발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럽게贅言(贅言)을 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의 부수와 신문정도로서는, 아직도 그것 가지고는 전체 민가를 철저히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일신보는 매주 한 번 정도 백만부의 언문주보를 발행하여, 미, 영, 화란의 과거 수백 년 동안 동아침략의 실정 및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약소 전패국가 민족의 말로가 어떻게 참담 비애를 겪는 것인지를 명시하여, 정부를 향해서 나아갈 길을 나타내어, 1억 국민은 굳게 단결하여 죽어도 이겨 낸다는 결심을 굳히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다음에 경성부회의원인 大宰군의 등단을 바랍니다.

(大宰 明군 등단)

경성(大宰 明군) (박수) 경성의 大宰입니다. 제1 의제에 대해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국어 상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징병제 시행을 맞이하여,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일본정신을 철저히 켤 필요가 있는 것은 말씀드릴 것까지 없으나, 우리 2천5백만 조선동포에 대하여 소집을 받는 사람은 물론 그 부모, 형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일본정신의 철저 즉, 황도주의, 순국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제일입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은 '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첫째가 되기 때문에,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본정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국어를 스스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것을 상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도 역시 곤란하리라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 국어 상용의 부르짖음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곳곳에 유감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식자, 지도자계급 사이에서의 회합에서도 공적인 회합이나 사적인 모임에 있어서도, 조선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불의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어 상용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경솔하게 조선말로 이야기를 걸며, 뜻밖에 조선말로 답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층, 유한청년 간에서는 아직도 멀었으며, 혹은 학교에서는 상급생 중에 휴게시간이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꽤 많이 조선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국어를 쓰고 있는 하급생에 대하여 백안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유한청년에 이르러서는 길거리에서 짝을 지어 활보하면서 큰소리로 조선말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으나, 이러한 무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족의식이 덜 빠진 것인가, 혹은 일본정신을 철저히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의심받아도 변명할 말은 없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징병제 시행에 대한 감격을 기념하여 조선에서 유식계급, 지도자들 스스로 국어 상용의 철저와 강화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조선말의 불사용, 조선말을 쓰지 않는다는 합의 혹은 결의라든지, 자기반성이라든지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천하에 모범을 보이며, 일반민중의 지도를 담당할 것을 제창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1 의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본정신에 철저히 하는 전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치다).

의장(伊達四雄군) 다음으로 함흥부회의 岸川於菟松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岸川於菟松군 등단)

함흥(岸川於菟松군) (박수) 제1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8항목에 걸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각 항목을 전부 말씀드리려는 것은 허락받은 시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목을 일단 읽어서,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항목의 첫째는 일본정신의 양양입니다. 둘째는 신사(神社)숭경(崇敬)의 중심입니다. 신앙적인 존숭(尊崇)에 귀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성(鍊成)의 강화철저, 특히 계행(禊行)의 연성으로 지도자를 하여금 습련(習練)시킨다. 이것을 널리 전선(全鮮)에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국어의 완전 이해, 국어 상용을 한층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반도 대중생

활문화의 일본화입니다. 여섯째는 반도 가정부인의 각성 및 이에 따르는 한집안 가정의 단란한 풍조를 더욱 증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천병(賤兵)관념의 불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반도동포 특히 청소년을 가급적 많이 내지에 보내어, 그리하여 내지의 실정을 널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8항목입니다만, 그 중 제1, 제5, 제6항에 든 일본정신을 양양하여서, 이것을 반도가정에 확실히 도입하여 생활문화의 일본화를 피하며, 더욱이 이리할 때 특별히 반도가정부인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에 따르는 가정단란의 풍조를 조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반도가정생활의 양식을 이때 단호하게 고쳐나가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국민 결전체제, 총력발휘가 오늘날만큼 통절하고 철저하게 요망되고 있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절실하게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전력의 증강이라고 하는 국민생활의 결전화(決戰化)는 필경 이것은 개인의 가정생활의 모든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조직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세히 반도가정의 실정을 볼 때 유식자나 일부계층을 제외한 지방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정 화락(和樂)을 중심으로 항상 가정 안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부되는 자의 교양정도가 매우 낮으며, 종래에는 남존여비라거나 여자의 삼종지도(三從之道)라고 말하는 사상이 이어져 왔던 관계로, 부인의 인격이 매우 낮게 밖에 인정되지 않는, 남자의 일개 부속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왔던 것에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도징병제, 해군병제를 보게 된 오늘날, 더한층 일반은 물론 반도인 자체가 이때 크게 각성을 첫째로 발분(發奮)흥기(興起)함으로써 옛날부터의 고루한 습성을 단호하게 내던져 명랑화락의 도의적인 가정생활을 재현해서 훌륭한 건민(健民)과 건병(健兵)을 계속 송출함으로써, 황국의 융흥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말할 필요까지 없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어라고 해도 생활의 도장(道場)이며, 화합, 단결, 실행의 최소단위인, 이것의 기본인 가정생활의 바로 세움이 초미의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은 여러 가지 있다 하겠으나, 8항목의 강화와 철저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뒷단에서 말씀드린 반도가정생활을 바로 세움으로써, 참다운 결전체제의 실현을 도모하여 이것의 실천에 강력 매진함으로써, 본 의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실천이야말로 현하의 급선무라고 굳게 믿는 자입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최근에 도연맹의 주창아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로 반도의 가정생활 재건에 대해서 전도 대중에게 힘차게 소리를 질러, 맹렬한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박수가 일어나다)

의장 (伊達四雄군) 신의주부회의원 平井熙迪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平井熙迪군 등단)

신의주 (平井熙迪군) (박수) 저는 신의주의 히라이입니다. 제1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집은 대대로 군인이 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특별한 감격과 영광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한 마디 감격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들 반도동포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사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제가 나풀나풀 말씀드릴 것까지 없습니다. 우리들 인간에게는, 인륜,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인륜이 귀한 것은 임금에게

충,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써 제일로 삼으나,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관념이 있었느냐, 각자가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1938년 시행의 육군특별지원병을 당국이 잘 지도하여 반도동포의 염원에 응답하고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충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외람되게도 명치천황의 칙어 속에 군인을 옥체의 수족과 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존귀하고도 최고지상의 영광인 신병(神兵)제도, 즉 징병제도가 반도에 실시하게 되어 반도동포에게까지 고마우신 어심(御心)을 미치게 해주셔서, 이것 모두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일시동인, 평등무차별, 이것 모두 짐의 수족이라고 하신 성지(聖旨)는 받들기만 해도 오직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인애(仁愛)아래, 반도청소년은 그러한 영예가 있는 폐하의 수족(股肱)이 되어 동양평화의 숙적인 미, 영, 아니 세계평화의 숙적인 미, 영 격멸의 때가 오늘에야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래에 우리 반도동포들은 국민으로서 직접 국가에 봉공하고자 해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영예를 갈망해도 그 등용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래에 우리반도동포들은 함부로 작게 위축하여 죽으려도 죽을 곳이 없고 개죽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후에 반도청소년은 외람되게도 폐하의 수족이 되어 저 폭거가 이를 데 없는 미, 영 격멸에 매진, 한 죽음으로써 순국하는 때, 이제야말로 폐하의 진념(軫念)<sup>44</sup>을 편안하게 받들고 함께, 종래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불명예, 이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연은 간단하게”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고마운 영광에 기뻐하는 감격을 우리는 물론입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칠생보국의 정신을 두들겨 넣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종이 울리다, 박수소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래의 공직자대회의 가는 방향은 대체로 결말을 내지 않고 방치한 상태여서,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박수소리) 어머니를 지도하여 이 감격, 이 영광을 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으로 마칩니다.

경성(森安敏暢군) 제7의제의 제안은 아직도 설명이 많이 남아 있으나, 시간 관계상 유감이지만 이 정도로 끝낼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박수가 일어나다)

의장(伊達四雄군) 지금 森安敏暢군의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제1 의제의 제안 설명은 이상으로써 끝내겠습니다.

경성(森安敏暢군) 제1 의제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많고, 적절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요약하면 인쇄물에 써놓은 여러 가지 점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전부를 본 대회에서 채택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伊達四雄군) 지금 森安敏暢군의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제안 전부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써 끝내겠습니다.(박수치다).

의장(伊達四雄군) 이상으로써 오전 중의 행사를 끝내고, 이만 잠시 휴계를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50분 휴계

44) 임금이 아랫사람의 형편을 걱정함.



오후 1시 5분 다시 시작

의장 (伊達四雄군) 오전에 이어서 개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2 의제를 상정하겠습니다.

“대동아전쟁이나 피차 결전양상의 처참(悽慘)가열(苛烈)화에 비추어, 더한층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조선에서 필승신념의 양양, 전력증강과 전시생활의 확립을 한층 심화하고 철저하는 건설적인 의견”

### 제2 의제에 대한 제안

#### 제2 의제에 대한 제안

1. 대조(大詔)봉답가(奉答歌) 및 대동아전쟁 필승 제정(制定)(목포부, 평북도, 포항읍)
2. 적개심 양양(인천부, 함흥부, 경남도, 춘천읍, 황주읍, 공주읍, 북청읍, 예산읍, 순천읍, 평북도, 경성부, 만포읍, 광주부, 방어진읍, 안성읍, 안동읍, 온양읍, 평강읍, 진영읍, 충북도, 차호읍)
  - (가) 미, 영에 대한 철저한 적개심의 양양
  - (나) 현 정국 상, 황군의 필승불패태세확립의 선전과 미, 영 귀축성(鬼畜性)<sup>45)</sup>의 폭로선전.
  - (다) 대동아전쟁이 화해와 타협을 허락지 않는 사유의 주지철저.
3. 국민개로(皆勞)의 철저, 노동능률의 향상 및 노력(勞力)사용의 통제강화(평북도, 평남도, 순천읍, 춘천읍, 경기도, 목포부, 평강읍, 방어진읍, 신포읍, 진영읍, 경성부, 북청읍, 안성읍, 안동읍, 충북도)
  - (가) 여자 및 유희노동력의 이용과 징용제 실시.
  - (나) 인구의 도시유입 저지.
  - (다) 체위향상과 영양지도 및 이것의 확보.
4. 전시 국민생활 간이화의 여행(勵行) 및 이것의 철저.(대구부, 평강읍, 공주읍, 함흥부, 경성부, 황주읍, 영흥읍, 진영읍, 순천읍, 목포부, 평북도, 방어진읍, 춘천읍, 연안읍, 안성읍, 평남도, 북청읍, 신포읍, 조치원읍, 부산부, 경북도, 충북도, 전북도)
  - (가) 전시하의 의례준칙의 개정 및 이것의 여행 철저화.
  - (나) 관혼상제 전시하의 철저.
  - (다) 국민 의식주생활의 간이화 및 무장화.
  - (라) 향락부분의 박멸 또는 정화.
  - (마) 반도인 생활개선 및 후방국민으로서의 정신(挺身)태도의 강화.
  - (바) 호사낭비생활의 철저한 교정.
  - (사) 전시생활 전 및 강습회개최.
  - (아) 전시생활 실천자 및 증산전사의 추천.
  - (자) 시간 여행 및 능률증진.
  - (차) 수송력원활화의 협력.
  - (카) 지도자계급의 회식과 향연 철폐.
5. 일상생활필수품의 배급의 적정화.(경성부, 공주읍, 방어진읍, 연안읍, 안성읍, 신포읍, 북청읍, 연안읍, 거창읍, 전북도)

6. 암거래의 근절을 도모할 것(경성부, 진영읍, 거창읍, 황주읍, 북청읍, 전북도)
7. 관공리 및 유식계급의 술선수범 실천.(평북도, 안동읍, 연안읍, 청주읍, 경성부, 경남도, 방어진읍, 안성읍, 경기도, 북청읍)
8. 식량증산촉진 및 이것의 정신대 조직(영흥읍, 공주읍, 방어진읍, 춘천읍, 강계읍, 전북도)
  - (가) 지주계급의 귀농
  - (나) 농업단체의 통합 및 토지교환 분합(分合)
  - (다) 군수산업의 증강 및 산업의 과학. 기계화 응용
9. 금속 따위의 철저한 회수(예산읍, 북청읍)
10. 국민저축의 제고(提高)와 장려(춘천읍, 북청읍)

본제에 대한 제안은 73건이 있어서, 그 내용은 각자 앞에 배포한 인쇄물에 기재한 대로입니다. 이것을 일괄상정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참조)“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음.)

의장 (伊達四雄君)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안낭독은 생략하고, 즉시 제안자의 설명으로 들어가고자 생각합니다.

경성 (森安敏揚君) 제안자가 73건이라는 많은 것이라면 제안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지명으로 한 사람 15분 이내의 설명을 부탁하기로 동의를 제출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君) 지금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설명하는 사람은 의장이 지명하기로 하고, 약15분 이내에 설명을 부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춘천읍회의 宮內幾太郎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宮內幾太郎君 등단).

춘천 (宮內幾太郎君) 저는 매우 무례하게도 인사를 생략하고 즉시 강원도 춘천읍회의원이 제안한 본 의안에 대한 사항을 3항으로 나누어서, 축차로 설명 드린 다음에 그것들의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끝내고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1항의 필승신념의 양양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첫째 반도 반도민중에 대해서는, 더한층 적극적으로 필승신념을 품게 하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관공리 기타 지식계급에서는 현하 대동아전쟁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필승신념도 역시 상당히 강렬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중에게는 패도(霸道)적인 견제력으로 어쩔 수 없이 뇌동하는 것과 같은 부박(浮薄)경조(輕佻)하는 자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중에 대해서는 대동아전쟁이 동아민족의 생존을 완전하게 하고, 미, 영의 세계제패의 질곡에서 일탈하는 유일 무이한 싸움인 것의 의의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적어도 매월 몇 번씩의 상회(常會)를 개최해서 전쟁의 현 단계의 심각하고 가열(苛烈)된 상황, 기타 군관과 일반의 방침 등을 명백하게 숙지 인식시키고, 더한층 민중이 참으로 마음속 깊이에서 울어 나오는 필승적인 결의를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45) 야만적이고 잔인한 짓을 하는 자들의 특성.

둘째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전쟁에 비협조적인 심리의 싹을 되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모든 물자가 이후 한층 궁핍하게 되며, 후방국민의 생활은 장차 더욱 더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보아 민중 중에는 교전의 영향을 경원해서, 전쟁의 승부여하를 불구하고 오직 전쟁이 끝나기만을 염원하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민중이 있다고 한다면 후방의 결속은 자꾸 흐트러져 적의 모략이 침투하게 되며, 저기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싹은 미연에 이것을 극력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서는 애국반의 조직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쟁의식의 양양에 노력하며 비전적(非戰的)인 분자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노력하는데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제2항의 전력증강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첫째로 반도민중 전부를 통틀어 전력증강을 위하여, 이것을 지도하는 기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민중 중에는 아직도 자산에 의지하며 건장한 심신을 갖고 있으면서 무위도식하는 자가 결코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때에 완전히 등록시켜서 체력의 정도와 지능의 우열에 따라서 각각 직장을 지정하여 노무보국의 보편적인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농민의 노동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작기술의 발달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에는 내지에 비하여 인적자원이 매우 풍부해서 농업에 의한 전력증강의 방도는 정말 쉬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발휘가 충분하지 않아서, 수확의 실적을 검토해 보면 지나사변 전, 대동아전쟁의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은 상당한 세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량은 도무지 증식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평화시대의 숫자보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발생에 의한 것이 물론 크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비의 부족, 농업기술의 미숙 등에 따르는 인위적인 농법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생산의 증강을 도모하여, 전력증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먼저 첫 번째 농가 전 가족의 개로(皆勞)성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국(母國) 일본에서는 농가의 전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무보국에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인조비료의 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학비료의 구입은 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되도록 퇴비나 기타 인조비료의 조성에 노력하며, 시비(施肥)를 충분히 함으로써 증수를 도모하고 전력증강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에는 경작기술의 향상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방책으로서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로 내지의 양농(良農)을 2, 3집을 전조선 각 읍면에 이주시켜서, 그들의 모범적인 농법을 통하여, 반도농가의 경작개선에 도움을 줄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래에 반도농법의 지도는 지도원인 관공리의 구두지도나 혹은 지도하는 청년의 양성 또는 우량청년의 내지파견 등에 의하여 오로지 귀에서 귀로 전달하는 지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효과는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부근의 아이치(愛知)농장, 혹은 평강군 평강면의 산업조합 등, 말하자면 모범적인 농장부근에서 농민의 농업기술의 향상, 기타 노무의 실효 등을 대조해보면, 전조선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기술의 낮음은 참으로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양농의 이주로, 소위 목격함으로서 실효를 거두어 보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3항의 전시생활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으로서는, 먼저 첫째 요리점이나 음식점 등의 통합과 개폐를 단행할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운을 걸고 싸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금도 아직 미, 영의 향락적인 주식(酒食)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필승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으로 유감천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향락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통합과 개폐를 실시하여 1억1심 필승신념을 향하여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둘째 번에는 통화팽창에서 생기는 악폐를 막기 위하여 팽창통화의 회수에 노력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도회지와 시골의 구별 없이 통화팽창의 엄청난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그 결과 상품 또는 농산품 혹은 노임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양등을 보여서 암거래행위가 항간에서 중중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듣는 것은 대동아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으로 유감천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팽창통화를 가끔 정세에 맞추어서 끊임없는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그 통화회수의 수단으로서는 국민저축의 강화철저를 더 한층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상의 제안사항은 이렇게 심각하고 가열(苛烈)한 유사 이래 전무후무의 대전에 이겨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느냐, 저서 굴욕을 감수할 것인가, 바로 황국의 흥폐에 관한 중대시국에 즈음하여 대전시작 이래 대첩(大捷)을 계속하고, 장기필승의 성전을 위하여 즉시 실천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의 일단인 것입니다. 이미 논의만 하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즉시 단행이라는 한 글자가 있을 뿐입니다. 반도 2천5백만 동포도, 모국일본의 동포도, 먼 신의 세상인 옛날부터 동종동근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 어엿한 천손(天孫)민족인 것입니다. 모국일본의 동포가 만년을 배제하여 거국일치 결전필승의 대전에 매진할 때, 반도동포만이 편하고 침착(晏如)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박수치다).

반도의 천지개벽의 옛날에, 농업의 신이 쌀의 원산지가 아니었던 이 반도의 천지에 토요아시하라(豊葦原: 일본국의 별칭)가 지나로부터 쌀을 옮겨 심어 오늘날의 반도곡창을 세우거나, 식림(植林)의 신으로서 조선(造船)의 재목, 기타 반도의 천지를 심어서 오늘날의 세계의 기초를 세워서, 어찌면 만민을 구제하셔서, 반도개발의 위업을 달성하신 것은 외람되게도 황조(皇朝)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남동생이신 스사노오오노미코토(素戔鳴尊)인 것입니다. 그 스사노오오노미코토는 대대로 습명(襲名)한 뒤 17대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반도를 천수 백년간 통치했다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권위 있는 학자의 학설로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 울리다). (“잘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 일족의 흐름을 움켜쥐는 천황들의 우리들 숭고한 역사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징병제의 실시를 기회로 국체의 본의에 침투, 투철함과 동시에 신국(神國)일본의 신국반도를 현출(現出)하여 성려(聖慮)에 대해 받드는 동시에 미, 영 격멸의 성전완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며 매진할 것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박수치다).

의장(伊達四雄군) 등단 자에게는 물론, 등단하지 않는 분에게도 말씀드리건대,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 바랍니다. 15분 이내에 설명하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방어진읍회의 大串 獯를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大串 獯군 등단).

방어진 (大串搞郡) (박수) 저는 경상남도 방어진의 大串입니다. 지명을 받아서 제안도 극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 영 격멸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조선에서의 필승신념의 양양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정신양양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이미 2천6백년 이 사이에 한번이라도 외국의 모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황조(皇祖)황종(皇宗)의 위업(偉業)과 아래로는 국민 사이에 옛날부터 충성스런 일본정신이 넘쳐흐르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본정신만 국민사이에 철저히 있다면 모두 이것으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동포사이에는 종래 자유시대의 단 것을 잊지 못하고, 지금 아직 전시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이기주의의 결과 상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결의를 망가트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러한 행위는 소위 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시 하에서 이적행위는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독일쪽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는 아직도 미온적인 느낌이 있으므로, 이것을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통일입니다만, 미, 영쪽에서는 사상전을 무력전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진 것도, 또 이번에 우리의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한꺼번에 패한 것도, 사상전에 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 교훈으로서, 이후 검토해서 삭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첫째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방법으로써 철저히 국체관념을 국민에게 주입한다. 둘째는 영화나 그림연극을 함으로써, 성전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물교육을 한다. 셋째는 비국민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관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민중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총력연맹의 말단인 애국반, 또는 경방단으로 하여금 적발 기능이나 의무를 주며, 네 번째에 사치품, 기호품과 같은 직접 전력에 관계가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생산을 축소한다. 그리하여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의 중세를 부과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길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증강, 전시생활의 확립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맨 처음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식량증산입니다. 식량증산은 지금까지 이미 장려가 되었으며 착실히 실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새삼스럽게 제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만, 아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지면적 같은 것, 그것은 첫째로 식량증산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면적확장은 아직도 상당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의 구석구석을 보면 적으면서 매우 부정형(不整形)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경계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갖는 토지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자신의 손으로 그다지 비용도 기술도 필요치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토지의 면적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척지, 미개간지, 공한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작지로 고치면, 꽤 많은

면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 안 될 것은 농도(農道)정신의 양양입니다. 내지의 탄당(反當)<sup>46</sup> 수확에 비하여 조선의 탄당 수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농도정신의 부진(不振)에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지의 적정 배분입니다. 대농가는 상당히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으나, 어떤 가정은 한 집안을 지탱해 나가는데도 모자라는 것과 같은 극히 적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를 교정하며 가정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정하여 적절한 배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해 두겠으나, 지주계급의 토지를 압수하여 마음대로 소작인에게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배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의 부지런함도 나오게 되고, 또한 노력도 과부족이 없으며, 소작인도 불안이 없어지고, 증산원인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류의 증획(增獲)입니다. 생선이 식량배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 없겠으나, 이 어류자원은 우리나라의 주위에 대단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비료도 필요 없거니와, 한해, 수해도 관계가 없으며, 수시로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법령에 의하여 어류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구역의 해변은 어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어족번식의 뜻이 담겨 있겠지만, 이제는 나라를 통틀어 총력체제의 이 시대에, 그러한 불합리한 법령은 대폭 축소하든지, 혹은 전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령 우리나라의 일부라도 적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된다면, 그러한 규정은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은 장래에 생각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유한(有閑)자의 동원, 여급(女給)폐지, 또는 여자 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요는 그것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징용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것을 생각하여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君) 다음은 공주읍회의 大谷善一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大谷善一군 등단).

공주 (大谷善一君) (박수) 지명에 의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미, 영을 격멸할 결의를 새로이 하고, 조선에서 필승신념의 양양방법이라고 하나, 무엇보다도 현재 상태를 일반 2천5백만 민중에게 주지를 철저하게 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상태의 선전영화반의 동원입니다. 현재도 가끔 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서는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철저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전에 경험이 있는 현역군인을 각지에 파견하여 크게 그 실상을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46) 토지면적의 단위. 약 991.7 평방미터.

있지 않는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들겠으며, 다음으로는 전력증강인데, 전력증강은 무엇보다도 식량증산이 첫째이며, 기타 전장에 필요한 광산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러한 것의 증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에는 수 년 전부터 누차 천재에 의하여 상당한 감수(減收)를 가져왔으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치산치수의 방법을 철저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조금 더 이것들의 시설에 비용을 낮게 지출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척지의 개발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간척지는 지금까지 달리 이용되지 않았던 곳에 새로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실제생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산수량조사의 적정화입니다만, 현재 농촌의 노동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실제 상태에서는 생산수량의 조사가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식량에 부자유를 느껴서 전 능력의 발휘가 약간 곤란한 것이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생산수량의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농촌 자체로 하여금 식량의 확보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와 돼지의 사육을 철저히 장려하여 자급비료의 증산을 꼭 많이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현재는 화학비료가 좀처럼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생산은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급비료를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만 만들어라, 만들어라고 말은 해도 보통의 퇴비를 만들기만 해서는 완전히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소나 돼지는 되도록 많이 길러서 자급비료를 만들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비료의 생산에 대해서도, 전 능력을 가능한 한 발휘해서 증산하고 일반에게 증시(增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화학비료를 상당히 많이 써서 생산액을 늘려왔던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화학비료가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증산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도회지의 광산물 공출철저입니다. 시골에서는 가정의 광산물 공출이 상당히 철저히 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대도회지야 말로 가정 광산물, 공공시설, 그러한 곳에 공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철저히 공출시킴으로써 전력을 증강하면 좋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농지령의 개정, 당국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으나, 현재 조선의 농지령은 제일 먼저 오히려 악덕지주와 같은 지주 중에는 소작인을 지나치게 괴롭힌다고 하는 견지 아래 소작인을 옹호하며 소작인과 지주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목적 아래서 조선농지령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소작인들 중에는 자칫하면 무지한 자가 있어서 법령으로써 소작인을 옹호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나 적지 않은가 하고 말을 할까요, ……어폐가 있겠으나, 아무튼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태도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종종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최근 수년 동안 한해를 입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조금 양수(揚水)가 부족해도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모내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에도 대작(代作)을 하면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그래서 모내기를 일부로 포기한다. 그러한 소작인은 지주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지주가 증산에 협력하고

자 해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농지령을 개정하여 지주와 소작인이 더불어 공존공영 아래 생산증강에 협력할 수 있도록 당국의 고려를 바라며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전시생활의 확립입니다. 전시생활은 무엇보다 간결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녀자의 각성이 첫째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래도 부녀자의 강습회나 유식부녀자를 하여금 강연회를 개최케 한다. 혹은 대일본부인회의 협력으로 자각이 모자라는 부녀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 다음에는 생활필수품의 적정한 배급의 결정입니다. 현재에도 당국은 매우 고심을 하고 있어서, 생활필수품의 배급적정을 피하고 있으나, 이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실제상태 즉 민도에 적합한 배급을 해 주셔서, 가능한대로 생활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제안한 것은, 이상의 사항을 철저히 현재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실행하면 충분히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의장 (伊達四雄군) 다음으로 인천부회의 小谷益次郎군 등단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小谷益次郎군 등단)

인천 (小谷益次郎군) 적절하고 강력한 정치적인 시책의 실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수치다). 저는 건설적인 구제안을 이 한점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할 것인가 죽음이냐는 엄두(巖頭)에 서 있습니다. 승리냐 죽음이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말이 단순히 말만으로 그치고, 관념상에만 있다면 승리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부의장 四元嘉平治군 의장석에 앉다).

미, 영 격멸 미, 영 격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혼은 춤을 춥니다. 우리들은 심한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만,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적개심, 단순한 결의에 그친다면, 미, 영 격멸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미, 영에 대하여 타격을 줄 수가 없으며,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적개심, 이 결의를 굳힌 것으로서 이것이 철폐가 되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들의 머리 위에 꽂히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철폐가 되고 날카로운 검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즉 생산증강이며, 능률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생산의 확충이라는 것은 가장 그들을 격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결전에 이길 수 없는 이상 무력결전에 승리를 얻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강력한 정치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시책은 금세 우리들의 행동을 담당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만, 전쟁은 최후의 5분간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을 의미를 바꾸어 말하면 최대의 고통을 돌파하는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승리를 가득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조선에 특수사정이 있다고 하여, 쉬운 것을 구하고 또 반전사상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어디까지나 돌파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외치고 싶다, 우리들에게 고통을 다오, 우리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스스로 고통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에는 강력한 정치적인 시책발동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써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박수치다).

부의장 (四元嘉平治군) 다음은 경성부회의 德山白洵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德山白洵군 등단).

경성 (德山白洵군) (박수) 저는 지금 상정 중인 제2제에 관하여, 그 의제의 내용을 이루는 각 항목에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하리라고 인정되는 바의 국민의 감격, 특히 조선에 있어서 국민의 감격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하건데 동아영원의 평화를 나타내고,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목적으로 전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승신념의 양양, 전력증강 기타 사상모략의 방압(防禦), 방첩반공의 실천, 전반적인 전시생활의 확립은 참으로 국민의 단결력에 의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국민단결의 요체는 첫째로 내선일체의 철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연성(鍊成)의 보편적인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내선일체라거나, 또 국민 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정당국의 시책에 의해서 전조선 각지에 걸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바이며,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지난날에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내체제 강화에 관하여 중대한 성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의회를 소집하기로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 단결에 대해서, 특히 조선의 국민 단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여, 이렇게 강화를 철저하게 꾀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굳이 제안을 시도한 것입니다.

먼저 내선일체의 철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지와 조선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혈연, 문화연이 있어서 이 역사적인 필연성이 자연 감정으로 내선일체가 용인되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선의 합체(合體)는 정치의 힘이 아니고 역사상의 필연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이 세계개조의 대변혁적인 시국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실현시켜, 철저화를 도모하는 것은 급선무 중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의 철저화를 도모하는 데는 반도동포에 대해서는 바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발분(發奮)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 내지동포에 대해서는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는 국민으로서 금도(襟度)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동포의 황국신민다운 자각이라는 것은, 첫째는 조선인이 황국신민이 되는 이외에는 소생(甦生)의 길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선인은 황국신민화에 의해서만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미, 영에 의존심을 갖는 것은, 서로가 조선인의 앞길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일본을 떠나서 조선의 의존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는 황국신민화는 주동(主動)으로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할 것을 자각하여 참다운 일본인적인 인생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지동포에 대한 대 국민적인 금도(襟度)의 양성은, 내지는 반도를 내지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학문상으로 조선의 지위와 성질을 논할 때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이 있겠지만 조선을 식민지라고 하는 관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고, 마찬가지로 폐하의 적자(赤子)이다, 조선인도 똑같이

일본 동포로서 포용하여, 서로 친하며 정의(情誼)를 두텁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셋째는 반도의 인정과 풍속과 말일 지라도, 일본정신과 합치하는 것은 존중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이 내지 및 조선동포가 취해야 할 자각과 태도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선일체의 철저화에 관한 실시방책으로서, 그것의 첫째는 총독부 안에 오로지 내선일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박수)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목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조선의 총력운동은 내선일체의 철저화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박수) 셋째는 내선은 동조동근이므로 일체화의 필연성을 일반에게 주지철저 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선인의 생활을 본연(本然)히 일체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어의 상용, 주택개량, 옷의 통일 따위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선일체화에 지장이 되는 사항은 전부 이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내선일체의 철저 화에 관한 의견의 개요입니다.

다음은 국민 연성(鍊成)의 보편적인 강화입니다만, 이제야 각국은 전쟁의 승패는 국민의 연성여하에 달려 있다는 견지로 볼 때, 국민 연성에 최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실정입니다. 특히 조선에는 특수사정으로 보아서, 국민적인 소양의 함양, 일본적인 생활지도, 내지(內地)식의 예법, 생활양식지도, 국체, 군사훈련의 철저를 기한 다음에, 연성의 보편적인 교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강화를 도모하는 시책으로서, 첫째 연성을 의무제로 해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연성할 것, 둘째는 연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셋째는 연성은 국민의 협력유지태세의 확립을 주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내선일체의 철저화와 국민연성의 의식적인 강화를 피한다면 조선 민중은 일치단결하여 전시생활의 확립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도인의 입장에서 이 기회에 한마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요즘 반도인의 유식자간에서 조선에 참정권을 주라고 요망하거나, 그 외에 내지인에게만 주어진 은전(恩典)제도의 철폐 등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을 운운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징병제를 기회로 삼고, 상감 한 분에게 충성을 다 하여, 몸을 받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이때 의장 伊達四雄군이 의장석에 앉다).

……황국신민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국민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이러한 것은 조선에서 공직자로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2천5백만 민중을 하여금 황국신민화에 몸을 받칠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를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몹시 부득요령입니다만, 이것으로써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시 열 때는 종을 쳐서 알려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0분 휴식

오후 2시 30분 재개

의장 (伊達四雄군) 그러면 재개하겠습니다. 제2의제에 대한 등단설명자를 지명하겠습니다. 함남도회의

公山基弘군을 지명하겠습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함남(公山基弘군) (박수) 저는 함경남도의 마츠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도 우리들 2천5백만 민중이 꼭 실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시는 이 기회에, 사정에 따라 의제에 대한 제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이었는데 인쇄물에 신지 못하게 되었으나, 우리들로서는 모든 것을 제치고 이것 하나만을 확실하게 실천하면 모든 안건은 스스로 해결되리라고 확신하는 안건이므로,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지금 매우 간단하게 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이나 제2는, 양쪽에 관련한 근본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건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일본정신의 현현(顯現)을 중핵으로 하는 도의적인 가정생활의 실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반도 2천5백만 동포가 완전한 일본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현(顯現)하는 목표로서 첫째, 천황귀일(歸一)의 일본정신을 가정생활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족간에 건전하고 화락한 신 도의를 확립하여 가정단란(團欒)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녀자의 각오를 촉구하여, 황국신민으로서 검소하고 강건한 자녀양육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대한 요강으로서 (1), 궁성요배(遙拜) 및 신단(神壇)배례(拜禮)의 실행입니다. (2), 식사습관의 개선입니다. (3), 국어 상용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 세 번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실천요강을 세 개 말씀드린 것은 각지의 민도실정에 맞추어 실천해야 되겠으나, 아까부터 선배 여러분이 적절한 의견을 발표하신 것과 거의 관계하기 때문에 실천요강 중 가정의례의 쇄신, 식사습관의 개선에는 거의 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인의 식사습관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말씀드려서, 꼭 이것이 쇄신을 도모하고 개선을 꾀하며 대일본제국의 정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도민중의 가정생활을 우리들이 볼 때에, 가정의 화락, 가정의 평화를 봄바람이 불듯이 여유롭게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부녀자는 일반적으로 존재가 매우 낮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남녀는 각각 별도로 생활하고 있다. 식사는 위아래가 함께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자가 온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도 아무런 즐거움이나 아무런 위안도 가정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내지 쪽의 가정생활에서 엿볼 때에, 식탁을 둘러싸고 호주도 주부도 아이들도 노인도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에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또한 신문을 읽고 라디오에서 들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상식을 넓히며 또한 내일의 활동에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도민중의 생활은 앞에서도 말한대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자 쪽은 위안을 밖에서 구하고 더욱더 이리함으로써 마음은 거칠어져서 점점 비생산적이고 비국가적인 행위가 우러나오기 쉬운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독특한 고유의 제도로서, 일본국민의 도의생활이 모든 가정생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 "알았다, 알았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제야 반도는 징병제가 퍼져서, 반도동포는 폐하의 건장한 방패가 되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성전완수의 기초를

하는데 진충(盡忠)을 철저히 하여, 일본정신을 끝없이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여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과 상당한 간난(艱難)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하나, 아무리 시일이 걸려도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서 실행해 나가주도록 절실히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전라남도회의 松永東允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松永東允군 등단).

전남 (松永東允군) 긴급하게 허락을 받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문도 제2문도, 그 내용은 거의가 민중의 지도계몽과 연성에 관한 시설사항으로, 요는 그 진가(眞價)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실행기관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과 표리일체인 조선연맹의 부, 군 연맹 임직원이 이러한 지도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민간추진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문의 징병제도를 맞이하여 그 완벽을 다 함과 동시에 고마우신 성지(聖旨)를 2천5백만……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은 제2제입니다.

전남 (松永東允군) 이것은 제목 설명입니다. 침투(浸透)시키고 철저히시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2 의제의 필승신념의 양양, 전력증강과 전시생활의 확립이라는 것도, 요는 그 인식이나 의의(意義)의 양양보다도 어떻게 이러한 것을 실천을 철저히 구체화해서 민중에게 침투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며, 민중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중의 인식이 부족하면 인식은 있어도 가정생활이 전쟁생활에 철저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 지도자로서 또 민간으로서, 추진대나 정신대를 만들어, 연맹의 기구 안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서, 이 운동으로 일반인식을 깊게 하며, 크게 기뻐하여 공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골 깊숙이 가면 아직도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골사람에게 지금 어느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어 보았자, 저 미운 미, 영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너 자식을 군대에 보내라고 해 보았자 전혀 요령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운동을 철저히시키고, 그 실행기관인 연맹의 기구를 꼭 강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1문과 제2문에 함께 관련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함으로써 본 대회 의의도 유의의(有意義)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긴급동의로 하고 본 대회의 결의로서 취급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평안북도 용암포읍의 吉田雅一군을 지명합니다. 등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吉田雅一군 등단)

용암포 (吉田雅一군) (박수) 저는 지금 소개받은 용암포읍의 吉田입니다. 조선의 서북부, 압록강 하류에 살고 있는 관계로, 의안을 보낸 것이 때를 맞추기로 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전보나 우편 등이 매우 늦어지는 때에, 특히 조선의 구석에 살고 있는 관계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한 마디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제안은 인적자원 활용을 위하여, 극히 간단한 기계의 발명 장려를 바라는 건입니다. 기계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알겠지만, 제가 절실히 느끼고 제안한 것은, 간단한 도구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로서는, 현 시대의 소모전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물적 자원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증강에는 많은 인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이 비상시를 전기(轉機)로 하여, 1억 국민의 노력(勞力)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전에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노력을 가급적으로 기계에 전환하여, 능률을 몇 배로 하는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 시대의 물자 생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조금도 진보하지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서 쓸데없이 노력이 비능률적으로 흡사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는 말씀드리지 않으나, 이러한 비상시에 기계발명을 장려하고 그 우수한 여러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하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두뇌를 회전시킴으로서 대단한 노력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신문을 보았을 때, 큐슈 철도국에서 화차를 입환(入換)하기 위해서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인부가 하나의 화차를 밀고 있다. 이것에 대신하여 소를 한 마리 쓴다면 한량의 화차가, 거기에다가 시간도 반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大峯丙朝군이 의장석에 앉다). 그렇게 되면 소 한 마리가 120명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잘했군, 이와 같이 머리를 써서, 또 기계를 작동하여,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것을 개량하여 발명을 하면, 능력은 완전히 몇 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힘 즉 잉여 노력을 생산 확충에 전환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여 여러분의 경청을 바랐던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제 제안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박수치다).

부의장 (大峯丙朝군) 함경북도회의원 四元嘉平次군……(四元嘉平次군 등단)

함북 (四元嘉平次군) (박수) 저는 함북의 四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을 인연으로 오래도록 알고 지내도록 바랍니다.

저도 지금 吉田군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멀리서 철도고장이 있어서, 불통이 되었으나, 제가 2일전이나, 3일전에 와서 제출해 주었으면, 설명을 완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의논했던 바, 4일전에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의견서에는 반드시 그대로 적을 테니, 그 밖에도 많이 있으므로 참아 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참은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므로 그 사이에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제2의제에 대하여 金山도의(道議)가 하기로 된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승의 신념의 양양, 전시생활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과 합치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생략하고, 전력증강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화급하게 국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즉 결전에 필요한 비행기, 군함, 무기, 탄약 및 이러한 것을 운반하는 선박 기타 모든 군수생산의 비약적인 증산입니다. 현재 모든 생산증강은, 이것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력증강이 아닌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에서 필요한 것은 식량 확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과 기타 양식의 증산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선의 실정을 감안하여, 영구적인 증산책과 소극적인 증산의 여러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는 지방농촌에서 즉각 이 대책을 수립하여, 한 되라도 두 되라도 많은 곡물을 수확하도록, 지주와 농민이 일치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중

산보국의 뜻을 철저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선에서는 철·석탄·경금속을 비롯하여 군수기계에 가장 필요한 각종 특수 광물, 지하자원의 개발과 정련(精鍊), 그 증산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또 전력증강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증산하는 데는 하나에도 사람 힘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총력의 결과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전 유제(類制)로 편성하고 완비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이며, (의장 伊達四雄군 의장석에 앉다)

내지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틀림없이 노무징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자의 취직제한과 금지직종을 규제하고 여자의 징용도 하기로 하며 비상노무관리가 실시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도 이러한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노무관리의 강화실시가 매우 긴급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쪽의 함경북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전력증강에 관련하는 중공업과 화학공업이나 기타 공업이 갑자기 강하게 되어, 철광, 인조석유, 조선, 섬유공업을 비롯하여, 이러한 중요산업의 능력 즉 석탄, 시멘트, 전원개발 사업 등, 특수사명을 띠는 대기업의 산업 및 특수강 물자의 급속한 개발 및 국방상 가장 필요한 철도건설과 개량, 항만의 수축과 운용, 방위관계 등 착종(錯綜)해서, 이러한 것에 필요한 노무원 수가 실로 2십수만 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노무원은 어떤가 하면, 영주하고 있는 자가 11만여 명, 밖으로부터 전입해 온 자가 3만 명, 일용(日傭)이 1만수천 명, 합쳐서 15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십만 명이 부족하므로, 이것으로는 도저히 증산을 생각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 노무자수는 다만 수만 늘린 것으로, 그 질은 점차 내려가는 경향으로, 능력은 60~7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직자는 탄광 분야에서 1년 동안에 200%, 토건분야에서는 100%, 공업 분야에서는 50%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선 방면에서 온 노무자는 수개월 동안에 80% 이상의 이직자를 내는 것은 보통입니다. 이것의 방지책으로서 식량의 매출표(買出表)와 전 거주지의 부, 읍, 면의 퇴거증명서를 반드시 전선(全鮮)적으로 통일해서, 노무자의 성실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노무원의 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징용령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징용령이 실시 안 된다면, 만주에서 징병검사에 불합격한 자들을 적어도 1년간씩 근로봉사를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안 된다면, 현재 함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봉사를 활용하기로 하고……이것은 지금은 2개월간이지만, 4개월 씩으로 꼭 시행 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박수치다).

경성(森安敏暢군) 제2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많이 남아 있으나, 시간관계상 유감이지만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박수치다).

의장(伊達四雄군) 지금 森安敏暢군의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을 인정하여, 제2의제의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써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경성(森安敏暢군) 더욱이 제2의제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적절하고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요약하면 인쇄물에 쓰여 있는 조건과 관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본 대회에서 채택하기로 동의(動議)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박수치다).

의장(伊達四雄군) 지금 森安敏暢군의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전부를 채택

하기로 하겠습니다. (中本弘鍾군 등단).

경성 (中本弘鍾군) 본 대회에서 채택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틀림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에게 부탁하고, 그 위원 수 및 지명하는 방법은 정 부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 中本弘鍾군의 동기가 있었으나, 동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동의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본 대회에서 채택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틀림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에게 부탁하는 일, 그 위원 수 및 지명방법을 정 부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휴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7분 휴게

오후 3시 40분 재개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 부의장에게 일임한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실행위원으로서, 충북의 立野新五郎군, 三井爽熙군, 충남의 芝山祺군, 沼田虎次郎군, 전북의 片桐和三군, 金田英武군, 전남의 松井邑次郎군, 高島在渭군, 경북의 大峯丙朝군, 杉原長太郎군, 笹川恭三郎군, 方義錫군, 함북의 四元嘉平次군, 金山龍能군, 경기의 石原磯次郎군, 元村肇군, 賀田直治군, 경성의 石原憲一군, 石原久彌군, 森安敏暢군, 中村郁一군, 中本弘鍾군, 夏山茂군, 梁川在昶군, 이달(伊達)의장, 경남의 杉村逸樓군, 富士山隆盛군, 황해의 三島承一군, 上村篤實군, 평남의 大山晃군, 森幸次郎군, 평북의 岡利晃군, 神保信吉군, 강원도의 和氣孫吉군, 松岡世宗군 이상 35명의 분에게 부탁합니다. (石原憲一군 등단)

경성 (石原憲一군) 징병제 시행 감사(感謝) 및 적 미, 영 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는, 전선에서 대표 430명, 이 자리에 회동하여, 결의를 새로이 하고, 또한 이것을 양양함과 동시에 천황에게 귀일하며 받들어, 도의조선의 확립으로 추진하여, 솔선궁행, 신도(臣道)실천, 직장봉공에 매진하여, 바르고 밝게 일해 나갈 것을 본 대회에서 맹서를 하고자 합니다. 즉 공직자의 맹서를 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 石原憲一군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의는 성립했습니다.

경성 (森安敏暢군) 방금 성립한 맹서결정에 대한 동의는, 이것을 9명의 특별위원에게 부탁이 되고, 이상 9명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 森安敏暢군의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하기로 하고, 위원은 나중에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성 (森安敏暢군) 다음은 합의사항의 결정입니다.

경성 (梁川在昶군) (박수) 제1, 제2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것의 의견을 개진하여, 각각 채택

된 것이나,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들의 합의사항을 결정해서, 우리들 자신이 실천함과 동시에 그 관철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의(動議)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박수가 일어나다.)

의장 (伊達四雄군) 지금 梁川在禎군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며 찬성이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이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그대로 취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성 (森安敏暢군) 지금 성립한 합의에 대한 동의는, 특히 이에 앞서 결정한 맹서결정과 동일한 특별위원회에게 부탁하기로 동의합니다. (“찬성”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방금 森安敏暢군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의장 (伊達四雄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하기로 하고, 5분간 휴식합니다.

오후 3시 50분 휴게

오후 3시 55분 재개

의장 (伊達四雄군) 속개합니다. 맹서 및 합의에 관한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천 小谷益次郎군, 전북 金田英武군, 충북 立野新五郎군, 평남 大山晁군, 충남 沼田虎次郎군, 개성 孫園禮次군, 해주 上野行義군, 경성 梁川在禎군, 경성 石原憲一군,

이상, 9명에게 부탁합니다. 맹서 및 합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휴게하겠습니다.

오후 3시 57분 휴게

오후 4시 5분 재개

의장 (伊達四雄군) 속개합니다. 먼저 맹서에 대한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石原憲一군 등단)

경성 (石原憲一군) 위원에게 일임하신 맹서의 문안을 밝히겠습니다.

#### 맹서

- 1.우리들 공직자는, 천황폐하에게 모든 것을 받들어 바친다.
- 2.우리들 공직자는, 솔선공행(躬行), 바르고 밝게 일을 해 낸다.
- 3.우리들 공직자는, 협력일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낸다.

이상입니다.(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맹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에 대한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梁川在禎군 등단)

경성 (梁川在禎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봉투에 넣어서 드린 전선공직자대회 합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안”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9명의 특별위원들이 결정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선공직자대회

합의사항

1. 본 대회의 결정사항은 이것을 반드시 실시하여 관철할 것.
2. 비행기 공직자호를 육해군에 헌납할 것.
3. 대회출석자는 신속하게 각각 보고회를 열어 그 목적달성에 매진할 것.

이상입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합의사항도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성 (森安敏暢군) 다음은 관계요로에 타전(打電)건입니다. (林昌洙군 등단)

충남 (林昌洙군)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 및 적 미, 영 격멸결의양양에 대한 우리들의 철석(鐵石)과 같은 결의를 피력하기 위하여 본 대회의 이름으로 관계요로에 전보를 타전하고자 합니다. 또 전문안 및 발송처를 의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아무쪼록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치다.)

의장 (伊達四雄군) 방금 林昌洙군이 동의한 관계요로에 감사전보발송 건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요로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징병제시행 감사결의전문,

본 대회는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대망(待望)한지 오래된 징병실시에 대한 감사의 성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것의 성과를 거양(擧揚)하는데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 징병제시행감사 적 미, 영 격멸선양전선공직자대회.

보낼 곳은 내각총리대신, 육군대신, 육군총모총장, 해군대신.

다음으로 황군(皇軍)에 대한 감사결의전문.

본 대회는 여기에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황군의 위훈(偉勳)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포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성전을 이겨 나갈 것을 맹서한다.

보낼 곳은 내각총리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대본영육군부, 대본영해군부가 되겠습니다만, 대본영육군부, 대본영해군부에 대해서는 그 문구 다음에 “각 방면 임시 최고지휘관에 대해서 잘 부탁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첨부합니다. (박수치다.)

이 전보는 즉시 발송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국신민의 서사제창, 일동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中村郁一군 등단)

경성 (中村郁一군) 대단히 외람되지만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

경성 (森安敏暢군) 다음은 오늘 결정된 맹서의 제창을 부탁드립니다. (맹서 제창)

의장 (伊達四雄군) 제창을 부탁드립니다. (맹서 제창)

의장 (伊達四雄군) 이번 대회를 맞이하여 불초 부족한 사람이 대회준비위원이 되어 계속해서 의장이라는 중임을 맡아서 충심으로 또 참으로 부끄러운 점이 있었으나 다행이도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동정 어린 지원과 협력으로 큰 과오 없이 큰 책임을 다하게 해 주셔서 이틀간에 걸친 대회도 평온하게 화기에애한 가운데 모두를 의료(議了)하게 된 것은 함께 기뻐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

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대회는 이 회의로써 일이 끝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회는 소위 일의 시작으로, 지금부터 서로 공직자에게 부과된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회에서 채택 또는 결정된 사항은 이것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이상 충분한 검토를 더 한 후에 이것을 실행에 옮겨 가기로 되어 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력한 여러분의 열의가 있는 협력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후 더한 층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모처럼 제출하신 명론(名論)탁설(卓說)도 충분히 그 뜻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등단해서 설명한 의견은 물론, 그 외의 의견도 나중에 인쇄해서 각자에게 배부할 것이며, 또 총독부, 군부 기타 관계방면에 보내서 참고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또 의견을 제출할 때에 설명은 대회에서 말하겠다는 분도 있었으나, 대회가 끝난 뒤에도 상관이 없으니, 그러한 의견을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그러한 것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까지 그러한 분의 의견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시국이 점점 긴박해지는 때에, 여러분은 아무쪼록 더 한 층의 자중과 분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명치유신 때의 지사(志士) 清川八郎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보다 실행을 하라, 게으른 무사가 중요한 곳을 판청(판전) 하는 바보” 우리들 공직자는, 이렇게 중대한 시국에, 쓸데없이 논의에 빠져서 실행을 게을리 하는 무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나라의 대사를 판전하는 것과 같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이후 한층 충분히 서로가 분투해 나가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치다.)

경성(森安敏暢군) 군산 樋口寅藏씨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樋口寅藏군 등단)

군산(樋口寅藏군) 저는 전북의 樋口입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본 회를 끝막음 가까이 선언에 접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대회에 참가한 공직자 430명이, 주최지인 고장 경성부 및 본 대회에 비상한 알선을 해주셔서 노력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외람되나 일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치다.)

의장석을 뒤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이크 관계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직자대회를 이곳 경성부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참으로 현하 깎긴한 목적양양으로, 혹은 적개심의 양양을 위하여, 이와 같이 430명의 의원이 즉시 전조선에서 모여든 이 기운, 이것은 완전히 대회의 취지에 맞추어서 쫓아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시의(時宜)를 얻은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회의원 여러분은 침식도 잊고 이것의 준비에 분주하시며, 부의 각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와 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신명을 바쳐 준비 해 주심으로서, 지체 없이 제목과 같은 양양에 도움을 주었으며, 필요한 결의를 해 냈으며, 우리들 공직자로서는, 전선에 25,000명이 있는 것이나, 서로가 바로 지금 의장이 표시하신 취지를 체득하여 돌아가서, 각각 지방에 가서 부르짖는다면, 새로운 각도로부터 한 층 이 시국에 대한 인식의 양양은 물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효과 여하는 참으로 위대하였다는 것을 감격하고, 또한 이러한 준비를 갖춘 당국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이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부 당국 및 준비위원 여러분, 이후 실행하실 각 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삼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대신 하는 바입니다.  
 경성(森安敏暢군) 만세삼창을 하겠사오니 일동 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총력 하다(波田) 총장각  
 하의 주창(主唱)을 부탁드립니다. (총원 기립)(만세삼창)  
 의장(伊達四雄군)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 대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수치다.)  
 오후 4시 32분 폐회

### 회원제출 의견 적록(摘錄)

#### 제1의제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여 그 완벽을 기함과 동시에, 고마움, 성지(聖旨)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시  
 키고 철저하게 한다.

경기도회 의원 津田興一

정오(正午)의 묵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마음 속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황군(皇軍)의 무운장구를  
 빌고 영령에 감사하며 징병제실시의 감격을 새로이 하여 후방의 봉공을 맹서한다.”

×

충남 장항읍회 의원 白江重元

반도 2천5백만 민중은, 과반수가 무식자로서 영광이 있는 징병제 실시를 맞이해도 고마움과 성지를  
 모르며, 또 시국을 인식 못하는 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시급히 각 면장에 거물을 두고 각 구장에  
 부락의 최고 인격자에게 담당을 시켜, 자주 무릎을 맞대고 강화나 좌담회(알기 쉬운 이야기로)를 열어  
 서 면민 또는 부락민이 면장과 구장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면장이나 구장이 명령이  
 나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복종할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거나 또 공직자가 면장이나 구장을 보좌하  
 여 강화나 좌담회에 협력할 것.

×

경기도회 의원 德泉溶

우리 2천5백만 민중에게 고마운 성지침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정당국자는 물론, 각 총력연  
 맹 및 대일본부인회의 간부 및 지방의 선각자들로 하여금 민심계도의 책임을 맡겨 상당한 계획 아래에  
 강연회나 좌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여 징병제 실시에 관한 중대한 의의를 두루 알리며 명심시키는 것이  
 가장 긴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

평남도회 의원 平沼憲

1. 반도청소년에게 국토적인 기풍을 적극적으로 떨치게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사회지도계급이 항상 뜻을 여기에 쓰며 지도와 교양에 몸 바치지 않  
 으면 안 된다.

2. 경신(敬神)숭조(崇祖)의 생각을 양양함과 동시에 내선일체의 이념을 투철하게 할 것.

결전하 조선에서 비협력, 제3자적이거나 미, 영 숭배의 정신단체를 선도함과 동시에 반도민중을 하여금 신속하게 국체의 본 뜻을 투철시키고 아울러 내선이 동조동근이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주지 철저 시킬 필요가 있다.

×

황해도 황주읍회 의원 金城秀松

1. 완벽을 기하게 하는 근거

가. 정신적인 측면

반도동포는 징병제 실시로 일시동인의 성지를 실현, 참다운 황국신민이 되어, 직접 폐하의 수족이 된 데 감격해서 신명과 재산 이것 모두를 위 한분에게 받칠 일본인의 각오를 하고, 새로운 세계역사의 창조 실천인으로서 세계최고의 도의 건설자가 되며, 동등한 대동아의 지도자가 될 마음가짐과, 국가 없이는 개인도 민족도 없으며, 동아전쟁을 이겨내는 일본정신의 함양을, 부, 군, 읍, 면, 국민총력연맹의 임원들이 추진대가 되고, 당분간 계속해서 애국반상회를 지도해서 앞에 적은 정신을 청장년 및 부모형제에까지 철저하도록 지도할 것.

나. 시설적인 측면

호적정비와 충실 (정비위원의 활동 촉진) 청년훈련소에 입소촉진.

전조선의 국민학교, 중등학교는 이것을 모두 공립으로, 전문학교 이상은 관립으로 하여 청소년학동을 하여금, 일본정신 함양교육을 철저하게 할 것, 단, 현재의 각 사립학교는, 서서히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이나 지방비에 기부시켜 관립이나 공립으로 승격시켜서, 종래의 기독교계통의 미, 영 숭배정신의 색채가 있는 교원들은 모두 이것을 도태시키며, 그렇지 못한 교원들은 각각 관리들로 충당시킬 것.

2. 성지(聖旨) 침투철저하게 하는 사안(私案)

가. 각 부, 읍, 면, 단위로 공직자 제1차 대회를 개최하고, 전선공직자대회에서 결의사항을 결의시킬 것.

나. 각 부, 읍, 면, 단위의 1944년도 징병자격자, 보호자, 제2차 대회를 개최하여 지도와 선전을 할 것.

다. 각 부, 읍, 면 공직자, 적령보호자에게 군 막사 및 지원병훈련소를 견학과 순시를 시킬 것.

라. 각 부, 읍, 면, 단위의 군사후원회를 조직하고, 그 활동으로서 입영 중에 있는 군인 영예의 집의 생활안정과 기타에 대하여 후원을 할 것.

마. 전선공직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행기기념호를 육해군에 각 1 대씩을 헌납할 것(전선공직자호 이름으로).

×

충북 청주읍회 의원 芳湖敏浩

조선의 현실은 만주사변 이래 국가의식이 비약적으로 양양되어 왔다고 하나 아직도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이 성스러운 영예의 제도실시를 맞이하여, 그것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을 통감하는 바이다. 그것의 한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1. 반도동포는 오랫동안에 걸쳐 지나의 왕도사상 내지는 역성(易性)혁명사상 등의 영향으로, 일본적

인 충효관에 부족한 것이 있다. 따라서 병역이라고 말하면 곧 바로 죽음을 연상하여, 부모를 앞서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불효가 된다는 관념이 강한 것 같다.

2. 장정을 격려하여 전장에 내보내야 할 부모 특히 어머니층에 징병제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다. 그 외에도 장애가 있으나 우선 이상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요는 국체관념을 철저히 함으로써 징병제의 정신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고마운 성지(聖旨)에 감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계몽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해 왔으나,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즉 신문, 라디오 등에 의한 지도와 선전, 명사의 강연, 또는 좌담회 등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의 실패를 보면 결국 일부 유식자 계급을 상대로 한 지도와 선전에 끝난 느낌이 있다. 유식계급에 대한 지도와 선전은 물론 필요하지만, 조선의 현상을 감안하여 신문도 라디오도 모르는 계급의 계몽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민중계몽 특히 교육정도가 낮은 계급의 계몽은 보통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 차례의 좌담회나 강연회로 일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속단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그때 공산주의가 왕성하였을 때 그들 공산주의자가 농촌을 파고들어 와서, 직장에 파고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과 같이 동지를 양성하여, 동지를 획득한 것과 같은 열성과 집착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바라는 것이다.

#### 1) 관공리의 재교육

조선의 현상을 감안하여, 무엇이라고 해도 관공리가 민중 지도의 중핵이며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관공리의 직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을 통해서도 그러하다. 그러하니 관공리 자신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징병제의 참다운 정신에 투철하고 있는지 없는지, 민중의 계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때에 따라서 그 공적인 언동과 사적인 언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것 같은 사례는 없는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관공리의 재교육을 철저히 해서 국체관념을 투철하게 함으로써, 전선의 애국반을 발판으로 지도와 계몽에 몸 받치게 하는 것이다.

#### 2) 지도자동원

참으로 애국의 열정에 불타는 소위 우국지사라고 말하는 인물을 통합하고, 지도정신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이들에 의하여 종래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 청중을 몰아 넣는 것과 같은 좌담회, 강연회식과 같은 것을 고쳐 소위 일터 마다에 파고 들어가서 농도 짙은 지도를 해 보는 것이다.

×

강원도 철원읍회 의원 大野孝太郎

종래의 상의하달 및 하정상통을 강화하여, 즉 면, 주재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념의 철저 보급을 꾀하게 되는 것은 첩경의 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총독부에서 적당하게 정신을 함양 및 전의(戰意)를 양양하도록 할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극히 통속적으로 기재한 소책자로 간행해서 각 부, 군에 배포하며, 부, 군에서는 면, 주재소 및 학교의 주석을 적절히 초집(招集)하여 강습을 실시함으로써 민중에게 주지와 선전에 노력하도록 할 것.

×

경남 통영읍회 의원 諸岡泰彦

1. 우선 지방에서 신망이 두터운 식견이 탁월한 선비(지방에서 상당한 유림 중에서) 및 현역 중의 지원병사와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 신진청년들을 짝 맞추어, 지방연맹의 주최로 방방곡곡 한 부락도 빠트리지 말고, 순회강연을 개최하여, 직접 일반민중과 무릎을 맞대고 친절하게 설득하는데 있다고 믿는다.(‘국어’ 미해독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선말로써 충분히 알 수 있도록)

2. 다음은 지방 국민학교부형회 및 모자회를 이용하여 이 제도의 참다운 실체를 보급할 것.

종래에 당국의 지도 아래에서 가끔 각지에 이러한 종류의 강연회나 기타의 행사도 있고, 또 신문지상에 게재도 되었으나 강연회 같은 것은 교통이 편리한 도회지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으며, 또 신문, 잡지와 같은 것은 식자계급에게만 유효하였으며, 오랜 동안 거의 병무에 관념이 없던 일반대중에게는 불철저한 느낌이 있다.

×

함남 북청읍회 의원 金本裕屹

1. 진충보국의 정성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영화, 극, 강연회, 좌담회 등으로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도록 노력할 것.
2. 특히 부인층의 계몽에 노력하고,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깊이하고 제국군인의 어머니다운 교양을 높일 것.
3. 학생, 생도, 아동을 통하여, 일반민중의 징병제실시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지도할 것.
4. 징병제 실시에 따르는 군사후원회를 조직시켜 민중전반에 걸친 징병제정신의 보급의 철저 및 후원의 철저를 꾀할 것.
5. 징병제실시에 따른 서화나 노래를 제정하여 보급할 것.
6. 청년훈련소의 기구강화확충과 청년단 지도강화의 법령화.
7. 반도출신 군인으로서 일반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의 찬양과 선전.
8. 징병제실시기념헌금 등의 행사.
9. 적령자신고, 기류계(寄留屆) 등 애국반을 중심으로 그 철저한 보급.

×

황해도 연안읍회 의원 長城圭亮

谷口市二

1. 가정부인층의 교도와 능력이 높은 조직을 만들 것.

설명

반도일반가정의 부녀자는 정숙하고 얌전하나 항상 가정이라는 껍질 속에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아직도 낡은 관념으로 매미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성이나 사회성이 모자란다. 대동아 전쟁의 참 뜻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자는 적으며, 말하자면 반도의 고마우신 징병제도의 성은조차, 그러나 전쟁의 승패가 가정부인의 각오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은 고금동서에 그 예가 적지 않다. 그래서 반도가정의 부녀자의 낡은 조선병사의 멸시관념을 철저히 씻어내서 징병제의 참 뜻을 두들겨 넣으며,

미, 영 숭배 사대주의적인 관념을 배어내고, 미, 영 격파의 전의를 더욱 더 앙양하는 등 이들 부인층을 교도할 지도와 계발능력이 높은 조직을 만들고, 애국반 단위로 강습회, 좌담회, 국어강습회 등을 빈번하고 농도 짙게 또한 진지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

2. 징병제실시상의 여러 가지 수속에 애국반장의 협력을 구할 것.

×

경기도 안성읍회 의원 松井秀浩

1. 부, 읍, 면에 군인교관을 배치할 것. 최근 조선청년특별연성 각 집단에서 일터연성의 확충강화를 꾀함으로써 군사사상이 갑자기 보급했으나, 국민개병화에는 현역군인의 전임교관을 부, 군, 읍, 면에 배속하여, 청소년과 일반애국반원의 교련지도를 담당하여 문약(文弱)한 국민성의 시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입영응소자의 직업보장, 가정원호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것.

제1회 징집입영자의 직업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입영자직업 보장법의 취지를 일반에게 주지를 철저히 하고, 노동력을 철저히 하며, 군인원호정신이 박약한 농민대중에게, 총력운동을 통하여 잔류 가족에 대한 노무보조, 생활보호, 정신위안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입영자를 하여금 뒤돌아 볼 걱정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농촌부인의 군 막사, 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하게 한다.

제1회 징집예정자의 어머니와 누이로 하여금 일반지도자다운 부인을 읍은 2명, 면은 1명씩의 비율로 집합시켜 가까운 군 막사, 지원병훈련소를 자세히 견학을 시켜, 병농(兵農)일치의 사상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청년이 조선 밖으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할 것. 황민(皇民)으로서 연성을 다한 유능한 반도청년의 내지, 만주방면의 비약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해 왔으나, 이제는 남방(南方)공영권에 반도청년의 진출을 권장하며,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지도에 한층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정신의 투철(透徹)방책.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의 유구한 역사적인 사실 및 천황이 친히 통솔하시는 일본병역제도의 연혁을 강연, 영화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주지를 철저히 하며, 충효일치, 병농(兵農)이 같다는 사상을 배양할 것.

×

원산부회 의원 湖山祚鳳

부, 읍, 면에 징병제도 감사보덕회를 조직시켜서 취지를 철저히 한다.

(가) 보덕회는 징병제실시에 대하여 성지(聖旨)의 봉답(奉答)정신을 앙양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보덕회는 부, 읍, 면의 지도하에 민간유지로서 조직하고, 징병에 관하여 민중의 훈화(薰化)교양에 노력하고, 또 보덕기념사업을 하기로 한다.

(다) 보덕회는 징병자의 격려 또는 유가족의 위안과 부조사업을 하기로 한다.

×

충남 예산읍회 의원 成井觀永

반도민간지도자의 총결기.

본 제도시행은 하나에 관계하는 것으로 일시동인의 어심(御心)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어심에 따라 받들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것은, 참으로 본 제도가 의기(意氣)가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에 관계하여 반도청소년 및 일반민중의 이후 충성 여하에 있으며, 먼저 본 제도가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느냐고 하는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군이나 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반도민중이 존경하는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반도의 민간인 스스로가 이것을 맡아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면 도회지 등에서 지기(志氣)양양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강습회나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또한 농산어촌 깊숙이 들어가서 무릎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며 알아듣게 설득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야 반도 민간지도자는 모두 총결기해야 하는 가장 긴급한 때이며, 또 당국에서도 이러한 총동원을 하는 것에 저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경성부회 의원 山中大吉

그 고마운 성지를 구현하는 대중적인 창작현상모집을 하고 이것을 영화화할 것.

우리 반도에 징병제실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천5백만 민중에게 알려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고마운 성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 즉 황국신민으로서 최대의 영예임을 아직 철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이 점을 철저히 침투하게 하는 것은 한 마디 말의 설명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자신의 피로 하여금 감격을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옛사람의 가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나, 고마움에 눈물이 난다”라고 노래한 것은 대체로 설명에 따르지 않는 피를 통한 감격이라고 할 것이다. 일의 발단은 목소리가 없는데 소리를 듣고, 정중동(靜中動)이 있는 불가사의한 사상은 동양인의 독특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도 철저히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 사상은 깊고 멀어서 강연이나 설명으로서는 이해의 영역에 도달할지라도, 나의 것, 나의 피 끓는 감격으로서는 문학사상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작자의 구상과 이 작품을 기대하는 대중의 심리란, 그 기초를 만들고 지반이 되어, 침투철저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을 영화화해서 방방곡곡까지 미칠 때, 비로소 징병제도실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

전남도회 의원 高鳴在涓

민간의 유식계급 또는 공직자가 관의 시책에 서로 호응하여 스스로 분기(奮起) 순행하여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부락좌담회나 강연회를 개최하여 계몽의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바란다.

×

충남 온양읍회 의원 中畑武男

각 도, 부, 읍, 면마다 본 취지의 취지를 철저히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자대회를 개최하고, 각 부락 애국반의 세포분자 한 사람 남김없이 본 획기적인 성사(盛事)를 철저히 침투 시켜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최상의 대책이라고 믿는다.



×

전남 공주읍회 의원 大谷善一

大西幸吉

1.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여 그 완벽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호적정비의 철저를 하는 것이다.
2. 고마운 성지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침투 철저하게 하는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 (1) 계통적으로 총력연맹선전부의 활약을 강화하여 선전을 철저하게 할 것.
  - (2) 민간에서 신망이 두터운 유지를 동원하여 지방강연회를 열고 주지 철저에 노력할 것.
  - (3) 전 애국반을 통하여 충분한 주지를 시킬 것.

×

경성부회 의원 伊藤奉圭

1. 황군의 본질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 (가) 군인에게 주신 칙어 및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연혁 등에 대하여 알기 쉬운 해설로 황군의 본질을 이해시킬 것.
  - (나) 군대생활의 실상을 인식시킬 것.
 

군대가 단순한 무기(武技)연마의 수련장일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강건한 일본신민의 연성도야의 좋은 도장으로서는, 군대교육이 치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는 사유를 인식시킴으로써 자진해서 징병에 응하도록 지도할 것.

    - (다) 상층의 유식자 자제로 하여금 자진해서 병역 지원을 하게 할 것.
 

옛날부터 조선에 전해 내려오는 군대에 대한 근거 없는 천시(賤視)관념을 근본으로부터 타파 불식하여 앞의 2항에 의하여 황군의 본질은 지나인의 소위 “좋은 식은 치지 않고, 좋은 사람은 병사에 안 맞다”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심신이 함께 소질이 우수한 자만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상층의 유식자 중에서 우량한 자제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지원 시킬 것.
    - (라) 제대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고려할 것.
 

병역에 복무한 자가 제대 후 징병 전의 직업을 잃거나 또는 징병 당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심한 대우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진해서 제대자에 대해 관민을 불문하고 이들을 우대하도록 조치할 것.
    - (마) 후방후원 기타 황군(皇軍)병사에 대한 국가의 특별대우를 잘 알게 할 것.
 

징병 때문에 가계가 곤란에 빠진 가족에 대하여 국가의 원호나 상병(傷病)이나 죽은 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대우 특히 전몰자는 야스쿠니신사에 봉사(奉祀)되어 영원히 국가최고의 숭경(崇敬)을 받는 영예 등을 깨달아 알도록 함.
2. 철저하게 하는 방법
  - (가) 이름 있는 자, 군사전문가의 강연, 라디오방송, 영화, 연극, 종이 연극, 전람회, 디오라마 등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환등, 종이 연극, 아마추어 연극, 이동 전람회, 시국사진 전시 등은 실시하기가 비교적 쉬우며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나) 신문, 잡지의 취재론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

(다) 반도출신의 육해군장병, 특별지원병출신자 및 부대에 있는 자 등에 의한 순회강연, 이동좌담회를 실시할 것.

(라) 국내에 있는 징병미담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집하여 이것을 소개하거나 공영권 내의 청소년의 군사에 대한 정진(精進) 상황 등을 소개하여 군사의식을 자극하고 그것의 발분(發奮)을 촉구할 것.

(마) 아이들의 유희 또는 학교 및 일반의 운동경기에도 사기를 앙양하여, 모르는 사이에 군사의식이 배양되는 종목을 고름으로써 아이들의 이러한 의식이 육성됨과 동시에, 한편 군가, 시음(詩吟), 가요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해당 의식을 주입 앙양함으로써 확고한 황국신민적인 기풍을 순치(馴致)하고 전승시킬 것.

### 3. 지도대상

지도는 좁게 일반민중을 대상으로 하나, 특히 징병적령자 이하의 청소년 및 그 부형 특히 어머니와 누이에 대한 지도에 중점을 둘 것.

×

경북 안동읍회 의원 三達正武

1. 장정이 있는 읍, 면민으로써 상설단체를 만들어 인식의 철저, 감은(感恩)보사(報謝)를 도모할 것.
2. 병역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징모자(徵募者)뿐만 아니라 그 부형과 어머니와 누이에게 일정한 휘장을 패용(佩用)시켜서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

×

경북 안동읍회 의원 松下嘉次郎

생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의 연성에 의하여 사람이 된다. 그러나 반도부인의 고래풍습은 안방생활에 있었으나, 요즘은 시대의 요구로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야 국민도(國民道)의 원천으로서 장차 또한 군국의 어머니로서 요구받는 바가 매우 급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민이 쫓기하여 부도(婦道)정신의 교양을 떨치는데 매진함과 동시에 제도실시에 앞서서 신속하게 군인원호기관의 확대강화를 꾀할 것을 요망하고자 한다.

×

진주부회 의원 富士山隆盛

국민총력 정(町), 동, 리 연맹의 지도원 설치.

종래에는 국민총력 정(町), 동, 리 연맹 및 대일본부인회 정(町), 동, 리 분회에서 각각 지도하여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러한 자가 반드시 책임자였었다고 볼 수 없었다. 단체 안에서 인망이 두텁고, 또한 열의가 있는 자를 지도자로 삼고, 이 사람에게 일정한 강습연성을 실시하고 지도책임을 맡겨서 한편 지도자의 우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평북도회 의원 黃原觀河

징병시행감사기념탑의 건설 및 징병시행감사기념장(章)을 제정할 것.

반도의 중심인 경성부의 역전광장에 웅혼(雄渾)장대한 징병제시행감사기념탑을 건설하여 2천5백만

민중으로 하여금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성을 감사하는 일대 표징(表徵)을 함과 동시에 징병제시행감사 기념장을 제정하여 적령자는 물론,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패용, 감명 깊게 하는 것으로서, 기념탑의 건설은 민간이 이것을 만들고, 기념장은 특히 신중하게 하는 의미로 그것의 제정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

×

함남 영흥읍회 의원 小室千代吉

1. 이번 발기인으로 전선공직자를 망라하는 징병제 성지침투철저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
2. 각도를 단위로 하는 지부설치, 각 군에 위원분회를 둘 것.
3. 지방분회위원은 도지부의 지도에 따르며, 제1선에서 반장이나 부락연맹 이사장과 협력하여 이것의 완수에 노력할 것.
4. 지방에서도 각 관공의 여러 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며 유감이 없도록 할 것.
5. 경비는 각 회가 자담하기로 한다. 단, 별도 양해가 있을 경우에는 기부를 받을 수 있기로 한다.

×

경남도회 의원 김동준(金東準)

징병제 실시에는 국민교육보급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완벽함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당국 계획의 의무교육을 한층 철저히 속히 실시해 나가는 것이 급무 중의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이 철저히 보급됨을 보기에는 금후 오히려 상당한 세월을 요할 것인바 마땅히 응급책으로 실시 중인 국민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특별연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청년훈련소의 확장, 청년대의 강화 등 일층 분투할 필요가 있다. 대개 이런 취지를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은 강연 정도만으로는 아직 일반에서는 철저하게 싫어함이 있으니까 이 제도 보급의 어려움, 성지가 머뭇바를 조선글로 간명하게 인쇄하여 애국반에게 배부선전함을 요한다고 생각한다.

×

황해도 황주읍회 의원 井上改平

1. 다음의 여러 사항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하게 하고자 유식 인사를 위촉하여 직재(直裁)간명하고 조리정연한 평이한 문장으로 소책자를 간행하고 이를 전 조선 각 학교, 관공서에 배포 혹은 구입케 하여 지도계급에 있는 자의 근본이념을 키우게 하되 특히 학교의 아동생도에게는 교과외의 일부로서 충분히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가. 무력없는 국가는 자주독립의 자격이 없음.

나. 조선민중이 황국무력의 일단을 부담함은 2,500만 민중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절체요건인 점.

다. 대동아전쟁은 절체절명 타협의 길이 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결전이란 점.

라. 현대 전쟁이 국민총력전이란 점.

마. 우리 국체는 만방무비 국민총력 결집상 이상적이란 점.

2. 조선에서 구안달식(具眼達識)<sup>47)</sup>의 사(士) 특히 초등학교 우량교원 중 사회의 신망있고 황민으로서의 자각이 충분한 자를 선발하여 남방공영권 내에 파견하여 각 국민이 우리 대 일본제국을 맹주로 하

여, 동아민족해방 미영격멸을 위해 어떻게 분투 노력해 나가야 하는가를 시찰케 하여 귀환 후 아동생도를 통해 혹은 직접 일반민중에게 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전남 순천읍회 의원 溱京吉  
金光相洙

1. 강연 및 영화, 환등, 종이연극 등에 의한 주지(主旨) 철저책(策).

(실시방책)

관공리, 공직자 중에서 인격과 식견이 모두 고매한 선비를 선택하여, 반도인도 폐하의 팔다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강연하고, 동시에 종래의 지원병 훈련 및 황군의 군대생활과 아울러 전투실황 등을 영화, 환등, 종이연극 등으로 관람을 시켜, 이것으로 침투철저를 도모하는 것으로 함.

2. 성지(聖旨)봉체(奉體)에 관한 표어, 혹은 선언 등의 형식에 의한 철저책.

(실시방책)

가. 표어 걸기에 의한 철저책.

나. 징병제실시감사선언(가칭)을 청소년층, 일반층, 부인층으로 나누어서 제정하고, 이것을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의 기회에서 제창(齊唱)을 시킴으로써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성은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게 함.

3.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연성의 강화에 의한 철저책.

(실시방책)

가. 의무교육의 촉진.

조선에서 의무교육은 1946년도부터 실시할 취지이나, 시국의 요청에 따라서 만난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실시하여, 민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 목적을 완수하는데 가장 긴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나. 청소년연성의 의무제 실시.

조선에서 남녀청소년연성은 현재 실시 중이나, 의무제가 아님으로 그 성적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볼 수 없는 느낌이 있으므로, 이때에 신속하게 의무제를 시행하여 징병제실시를 맞이하여 그 완벽을 기하고자 함.

×

함남 영흥읍회 의원 이가승룡(李家昇龍)

애국반별 연성.

황군위문과 유가족의 위문.

출병위문금.

1944년도 입영 적령자제가 있는 모친들로 군 막사 또는 군대견학단을 조직하여 파견 할 것. 면 단위로 부인들로 하여금 군인원호회의 어머니회 같은 것을 조직케 할 것.

47) 사리에 밝은 견문과 학식, 사물의 시비를 판단하는 식견과 안목을 갖추고 있음.

×

강원도회 의원 고산재동(高山裁東)

저번에 실시된 징병령은 조선에서 옛 시설이 되었으나, 반도민중은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도회지의 민중은 잠시 두기로 하고 지방에 사는 민중은 본 제도가 아직 어떤 것인지 인식하는 자가 적고, 특히 높은 조부모부형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민중의 인식을 깊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당장 국민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각 부락마다, 10세 이상의 남자가 있는 가정의 최연장자를 집합시켜 본 제도의 취지를 천명하고 가정을 통하여 그 자제들을 교양시킴으로써 본 제도를 철저히 주지 시키는 것이 첫째 요체(要諦)라고 믿음.

×

경성부회 의원 芝村定宰

1. 중년층 이상의 남자 반도인에 대한 계몽운동.

가. 도시나 읍에서는 조(組)단위, 지방의 이(里)단위 마다 군인원호회를 결성할 것.

나. 국어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책을 강구할 것.

2. 중년 층 이상의 여자 반도인에 대한 계몽운동.

가. 1에 준(準)하는 이외에 모성의 힘의 중요성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를 들면 사실(史實)이나 이야기에 의하여 인식시키기 위하여 책자 같은 것을 배포.

나. 징병적령자가 있는 내선여성의 정기적인 간담회의 개최.

3. 학생층에 대한 계몽운동.

가. 중등학교 상급생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군인에게 주신 칙유(勅諭)를 쉬운 강연으로 반복할 것.

나. 중등학교의 하급생이나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전장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후방의 미담을 주지 시키는데 철저히 할 것.

다.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국어사용을 철저히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어디에서든지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 생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충고를 허용할 것.

×

전주부회 의원 元村炳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이 건민(健民)보다 건병(健兵)을 선택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현재의 반도의 의식주나 위생사상을 살펴볼 때는 건병을 얻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의무교육이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의식주가 배양(培養)된 위생사상이 보급되지 않는 한, 체력이나 체능에 있어서 불건민(不健民)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지도자는 반도의 의식주 개선에 특단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평양부회 의원 水原進

반도청소년의 연성(鍊成)강화를 요망한다.

징병제가 실시되어 반도청년도 물론 바다로 하늘의 황군군인으로서 대동아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영예를 잃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이들 청소년을 연성하여 참다운 황국신민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청소년의 연성에 대해서는 청년특별연성소와 같은 강력한 법령 아래에 출석을 독려하여, 반도 청년으로 하여금 보다 더 연성을 더하기를 요한다.

×

광주부회 의원 岩橋朝一

1. 재향군인회가 주체가 되어 군대 및 국민총력과 여러 단체 후원 아래에 현역군인 약간의 참가를 요청하여 각 부, 읍, 면 기타 적당한 곳에 이러한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연습을 실시하거나 또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군인이 군복을 입은 자세로 활동하는 상황을 일반 민중에게 보고 듣는 방도를 강구 하여, 이것을 상당한 기간 및 횟수를 반복해서 실시토록 할 것.

2. 부, 읍, 면에서 그 내부의 유력자로 하여금 징병령취지철저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들을 각 부락의 상회(常會)에 출석시켜 그 취지를 펴도록 연출시키는데 철저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강원도 평강읍회 의원 齊藤壽

1. 각지의 부인회를 불러들여서 철저하게 할 것.

즉 기타의 부인회나 여자청년단 등의 회합을 할 때는, 읍, 면 직원이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부락대표, 유지 등 적어도 2명 이상은 반드시 이 회합에 출석하며, 그 때마다 징병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시키는 것이다. 또 이 회합에는 장래 건민(健民)강병(強兵)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책무인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2. 청소년으로서 최대의 명예가 있는 군인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할 것.

3. 좌담회 개최

군, 읍, 면 및 경찰관리와 부락의 유지, 유식자를 망라한 좌담회를 5반 내지 10반(애국반)마다 개최하여 반원 전부를 집합시켜서, 징병제의 완벽사항을 설득함과 동시에, 고마우신 성지를 철저히 침투 시킬 것.

4. 순회 강화회(講話會)의 개최.

읍, 면은 상당한 경비를 계상하여 순회강사를 채용해서 각 부락에 월 1회 이상 순회강화를 하게 할 것.

×

강원도 김화읍회

1. 현재 조선의 민도와 실정을 감안하여 부, 읍, 면마다에 징병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병역기피방지과 적령자의 질병구로 및 입영자의 빈곤가정 및 본 제도 실시상 필요한 협력과 원조를 하게 하여, 본 제도 실시의 완벽을 기하고자 한다.

2. 고마우신 성지를 2천5백만 민중에게 철저히 침투하게 하기 위하여 신사 및 신사(神祠)정내에 조선 징병제실시기념탑의 건설 또는 8월 1일을 동 기념일로 제정하기 바란다.

3. 1면1사(祠)의 조영(造營)을 신속하게 실현시킴과 동시에, 행정말단기관의 기구 확충과 인재양성을 꾀하고 민중에 대한 지도와 이해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본 의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

강원도회 의원 平沼昶鎬

1. 야학 또는 강습회 등의 개최로, 특히 일반여자에 대한 국어의 보급을 철저하게 꾀할 것.
2. 힘껏 입소생의 증가와 내용정비에 힘씀으로써 준비교육의 만전을 꾀할 것.

×

함남 신포읍회 의원 西原正雄

1. 군사후원회의 기구(機構)를 확충 강화함으로써 유기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군인과 민중과의 유대적인 역할을 나타내도록 했으면 한다.
2. 반도에 육해군 관계학교를 설립하여 일반의 군사의식을 교육적으로 양양시켜 청소년의 눈앞에 그 용감한 모습을 보여 그 생활과 기풍에 젖게 하도록 했으면 한다.
3. 부녀자의 인식여하는 가정이나 사회 시정(施政)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으로, 특히 영화나 종이연극 등의 시각교육을 부녀자 층에 베풀고 그 인식을 떨치도록 해야 한다.

×

평북 만포읍회 의원 妻木國雄

威元泰夫

1. 지나사변 발발 후, 특히 대동아전쟁에 들어 온 이후, 방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방단원이나 방공감시 초원(哨員) 등 청장년층에 대한 훈련이나 최근의 청년특별훈련생의 교육 등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데에 감안하여, 이후는 전반적인 청장년층에 대하여 철저한 훈련을 실시하여 군인정신의 양양에 노력함이 좋을 듯 하다.
2. 1.의 훈련실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 중 읍, 면장, 경찰서장 등의 관계 공서(公署)장은 만사를 제폐(除廢)하고 임석하고, 부락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고마우신 성지에 대한 훈화나 대동아전쟁의 근황 등의 강연을 하게 하고, 황국신민다운 정신을 체득하게 할 것.

×

함남 북청읍회 의원 金澤聖明

1. 군부, 조선총력연맹, 각 행정 교학기관의 협력과 통제 아래 지도자 및 내선의 유식한 남녀계급에 확고한 신념과 인식을 주어서, 지도자인 간부의 분발을 꾀할 것.
2. 선전과 강연을 겸한 전람회나 순회영화반 또는 종이연극 등을 앞에 든 지도기관의 통제와 협력하에 조직하고, 도시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또한 문화시설이 빈약한 농산어촌의 벽지에 이르기까지 순회시킴과 동시에 경비와 시일여하에 따라서는 지방과 지구의 행정문화기관인 경찰관 주재소, 부, 읍, 면사무소, 정(町), 동, 리(里)사무소, 학교와 강습소, 서당, 기타 집회소, 또는 시기에 따라서는 달이 밝을 때 광장 같은 것을 널리 이용하여, 대중에게 취지의 철저한 보급을 꾀함과 동시에, 각 지도기관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남녀계급을 총동원하여 징병적령자의 가정방문이나 부락좌담회를 열어서 문맹과 고집 센 자와 개별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2천5백만 민중의 말초까지에 이 일시동인의 고마움과 성지의 침투철저를 꾀하여 본 제도 실시의 완벽을 기하기로 함.

×

충남 조치원읍회 의원 田中陳平

제1. 징병제도의 실시를 맞이하여 그 완벽을 이루기 위한 방법.

(가) 종래의 신화론이나 추상적인 국체론과 같이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보다 지금 한 걸음 현실적인 일본의 가족제도 중에서 자연히 군신(君臣)의 길을 풀어나가는 노력의 방법으로 백성인 우리의 감념(感念)을 끌어오르게 할 것.

(나) 그 지름길에는 무어라고 해도 먼저 상급 국민학교의 생도는 물론이지만 청훈(靑訓)이나 청소년 연성소원 등 전문지도원을 넣을 것.

×

부산부회 의원 池田佐忠

일본정신에 전력을 쏟고 그 진수를 체득시키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1) 연성으로 보은 감사와 정사(正邪)의 이념을 수득(修得)시킬 것.

(2) 일본정신의 훈도(薰陶)의 교재를 정비할 것.

(3) 국민학교와 청년학교의 지도자를 재교육할 것.

×

부산부회 의원 金山竣源

첫째, 군의 어머니인 자에게 건민(健民)건병(健兵)의 정신을 체득시킬 것.

구체적인 시책

대일본부인회, 국민학교 모사회, 기타 조모(祖母)들에게 일시동인의 어심(御心)을 받들게 하고 맡은 바 책무를 자각시킬 것.

×

부산부회 의원 大潭泰昇

원래 인간의 감정은 동작보다도 말로 좌우되기 때문에 내선인 사이의 교제상은 물론, 그 외의 기록이나 용어상에 있어서 초센징(조선인), 한토징(반도인), 여보, 캉코로(한인) 라고 말하거나, 또 내지인, 일본인, 왜사람, 왜놈이라고 부르는 일은 이후 일체 이를 엄금하여, 반드시 내지동포, 조선동포라고 부르면 친애하는 정이 저절로 끌어오르게 되어 있으며 내선이 일체가 되어 다함께 고마우신 성지에 대하여 감읍(感泣)하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국가권력으로써 이행시키도록 간절히 바란다.

×

경남 진영읍회 의원 靑柳種吉

吉本正成

(1) 학교생도에 대하여 학교당국으로부터 징병제실시를 맞이하여 성지의 고마우신 이유서를 상세하고 간절하게 가르쳐서, 그 생도가 각 가정 마다에 반드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주지시키는 방법.

(2) 부, 읍, 면에 전문선전부원을 상설하여 두거나, 또는 부회, 읍회, 면협의회원 안에서 식견이 깊은 자나 학교장, 주재소 수석 등을 동원하여 그 취지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

(3) 특별지원병 안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에게 취지를 충분히 교양을 시켜, 그 출신지의 고장에 파견하여 철저하게 주지 침투시키는 방법.



(4) 기타 애국반, 부락연맹 상회(常會)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례가 끝난 직후, 성지의 고마우신 이유 등을 말하며, 또 취지를 철저히 지키는 부락애국반 등의 공로자 표창 등.

×

강원도 원주읍회 의원 植原正義

징병적령장(章)을 제정할 것.

이유

징병적령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령장을 패용(佩用)시켜서 타와 구별하며, 어느 정도 우선 취급을 하여 본인과 그 가족을 하여금 병역에 복역하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감사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숙과 자중을 시키는 한편, 일반민중은 적령 장의 패용을 공경하는 대상으로 함으로써 징병제를 주지철저를 하게 하는 동시에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일상적으로 이것을 패용하고 있는 자를 적절하게 지도와 격려를 하게 될 것이다.

×

강원도 평강읍회 의원 島田秀一

이러한 감격과 감사는 징병제 실시일인 8월 1일을 징병제기념일로 설정함으로써 넓고 커서 끝이 없는 황은을 자자손손 영원히 전해서 철저히 침투하도록 하고자 한다.

×

경성부회 의원 朝野晴義

징병제실시에 따라 창설된 병무과에, 특히 앞 의제에 관한 사항의 완벽하고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을 증원하여 선전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영화, 연극 등을 통해서 반도민중으로 하여금 진충보국, 한 죽음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꽃과 같이 지는 이 영광에 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우선 현재의 적령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그 부모인 아직도 시국에 눈뜨지 못한 민중에게 그 사상을 깊숙이 심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전북 남원읍회 의원 國定 豊

1. 적령자 및 그 주택에 일정한 표어를 붙이게 할 것. 적령자에게는 휘장(마크)을 패용시키고 그 주택에는 깃발 또는 문패 같은 것으로서 일정한 표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은 적령자 및 그 가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감을 깊게 함과 동시에, 한편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경모심(敬慕心)을 배양시킴으로써 자타가 함께 징병제에 대한 개념을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 총력연맹을 통하여 연맹단위 또는 부락단위로 적령자 및 적령자가족의 원조회를 조직할 것. 이번 차례의 적령자는 고마우신 성지의 아래에 본 제도에 대한 반도 2천5백만 민중의 선구자이다. 이것을 원조하고 이것을 보호하여 이것을 구호하는 것은 균등한 반도 민중의 성지에 보답하는 책무가 된다. 이러한 관념 아래에서 자신의 연맹 또는 부락 내에서, 적령자 및 그 가족의 원조회를 조직하여 물자배급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며, 연성 등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전하고 또 연맹 또는 부락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시책 아래에 약간의 비용을 엄출하여 연성 기타 수련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연맹단위 또는 부락단위에 기념비 또는 기념탑 같은 것을 세울 것. 그 연맹 또는 부락에서 제1회의 징병자를 낸 것은 그 연맹이나 그 부락의 영예로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야할 것으로, 쓸데없이 번잡하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며 영구성을 가지는 돌 비석이나 탑을 부락의 적당한 장소에 세우며, 그것에 징병자의 이름 같은 것을 표기해 두는 것이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

충북도회 의원 三井奭熙

#### 1. 취지천명강연회의 구체안적인 개최

종래에 이러한 종류의 강연회는 개최되어 왔으나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상적인 느낌이 있었다. 보다 낫은 구체적인 조직 즉,

(가) 지도자에 대한 지도강습회 개최.

군의 사회로 각계의 층별로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소집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그 수강자는 세포적으로 관계하는 분야에 대해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취지철저에 힘을 쓴다.

(나) 일반강습회

군의 사회로 2, 3개 읍, 면의 합동단위로 연맹이사장, 애국반장, 공직자들을 모셔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다) 각 부, 군에 군인, 군인다운 자, 군을 이해하는 자를 축탁하여 정례적인 계몽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이것의 개최는 징병검사 앞에 한번, 입영하기 전에 한번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 2. 게시판설치 및 게시동원

전조선 각 부락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징병관계상황의 게시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게시용 포스터나 뼈라, 화보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각 부락에 배포하며 항상 청신하고 발랄한 국가의 의지를 민중에게 통달하며 계몽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인 이러한 계기에 그러한 인쇄물의 경비를 쓰는 것은 이것의 몇 배로 돌아올 효과를 올릴 것이다. 대영단을 가지고 널리 민중에게 보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3. 자막(字幕)특설

반도에서 영사하는 모든 영화에는, 그 어떤 부위에 선전가치가 높은 자막을 특별히 설정하여 끊임없이 계몽에 도움을 준다.

#### 4. 그림연극의 제작보급.

#### 5. 신문잡지에 군관계의 표어를 게재시킨다.

#### 6. 연습(演習), 행군 등의 실시.

군대의 각종 연습을 민중에게 보이는 것은 스스로 군대를 이해하는 것을 높이며 동경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데 이를 것으로 믿는 바이다.

#### 7. 1일 입영, 입소, 입교실시.

학교생도, 청년단원, 관청직원 등을 군 막사, 지원병훈련소, 군 관계 학교나 군함에 1일 입영, 입소, 입교의 기회를 주어서, 군대생활의 일단(一端)을 체험시킨다.

8. 국방경기의 보급철저.
9. 모형항공기 제작 장려 및 경기대회 및 모의전 등의 개최.

×

충북 제천읍회 의원

1. 황민연성의 강화
  - 1) 청년층의 연성
  - 2) 노, 장년층에 대한 계발
2. 징집준비사무의 정비
3. 징병제 실시 취지의 침투 철저
  - 1) 침투 철저의 주안점

본 제도의 실시 취지를 반도 2천5백만 동포에게 철저히 침투 시켜서 징집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파악시키는 것은 민지(民智)의 현상을 볼 때 초미(焦眉)의 급선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것의 주안점은,

- (가) 황국신민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입는 길이라는 것.
- (나) 다년간 반도동포의 애국심 발로(發露)에 의한 열원(熱願)이 달성된 것이라는 것.
- (다) 내선이 동조동근의 옛날로 복귀한 것이라는 것.

2) 침투 철저방법

본 취지의 침투 철저방법은 반도에서는 지식정도가 어수선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식정도에 의하여 유식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무식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누고,

- (가) 유식계급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소책자, 라디오, 강연회 좌담회 등으로 침투 철저를 도모하고,
- (나) 무식계급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강연회, 종이연극 등에 의하여 침투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경남 거창읍회 의원 菊田鏞禧  
大山重穆

먼저 군인의 어머니인 반도여성의 소질을 크게 향상시켜, 일본군인의 전형적인 모성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진주만공격의 아홉 군신(軍神)의 어머니의 정신을 체득시키는 교육이 가장 긴요한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을 웃으며 전송하고 텅 빈 집을 군세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부인단체를 활용하여 회합의 기회를 만들어 국체(國體)관념과 일본인의 도(道)를 부식(扶植)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 일은 내지부인과의 접촉을 빈번하게 하며, 내지부인으로부터 감화를 얻게 함이 1석2조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일반국민에게는 군인 원호사상의 양양과 원호사업의 강화도 급선무인 것이다.

×

전남 여수읍회 의원 延原昌熙

1. 본 제도의 운영을 철저하게 함에는 부형과 식자의 협력에 의한 바 막대한 것이 있다. 때문에 각

정(町), 동리, 부락의 중심인물, 특히 유림과 지식층, 양반계급 등 지금도 아직 구 풍습에 사로잡히기 쉬운 인사를 초빙하거나 강습회, 좌담회, 영화회, 아마추어극 등의 교화와 선전으로, 나라를 위하여 태어나서 폐해를 위하여 살며 신업(神業)을 위하여 죽는 영예와 기쁨을 충분히 감득(感得)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국가의식, 황도정신의 양양에 노력한다.

2. 국가의식의 발로는 먼저 국어수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면, 국어전부를 이해하는 운동을 한층 강화하여 각 부락별로 정기적으로 국어강습회를 개최하며 지방공직자들도 힘껏 강사가 되어 이것을 철저하도록 꾀한다.

3. 부, 읍, 면단위에, 황도선양, 군사사상의 보급, 시국정세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력이 있는 전임직원을 배치할 것.

4. 건민강병이 되어야 할 각지 청년대의 지도에 각 부, 읍, 면단위로 지도력이 왕성한 전임대장을 배치하고, 반도의 중견층이 청년대원의 지도를 한층 강화한다.

5. 반도출신으로 근적이 있는 자를 각지에 파견하여 좌담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그 감격담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동 제도의 고마운 성지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그 영광된 느낌을 분기(奮起)시킨다.

×

강원도 춘천읍회 의원 山中 巽  
池田秋藏

1. 반도민중에게 영예를 깊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유

반도민중은 예부터 군인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으며, 자칫하면 이를 멸시하였던 것과 같은 흔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시대의 군인은 무반이라고 부르며, 문관인 문반보다 아랫자리의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지능이 우수한 인물은 문반에 참가하였으며, 무반에 참가한 군인은 그 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군인에 대한 관찰을 잘 못해, 군인다운 영예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이 옛날 무사의 후신으로서, 또한 외담되게도 천황폐하가 친히 인솔하셔서 그의 손과 발로서 국방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사유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 선전방법은 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종이연극 등 어느 것이나 좋으나 영화회나 종이연극에 의한 선전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2. 해마다 8월 1일을 조선징병제실시기념일로 정하여, 해마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여 그 영예를 축복해야 할 것이다.

3. 징병제도실시에 따라, 반도청년남자는 장래 황국의 군인이라는 명예를 획득한 이상, 그 정신적인 황국의 심혼(心魂)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 그 심혼의 배양수단으로서는,

(가) 반도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급히 실시할 것.

(나) 전 조선을 통틀어 국어 완전 이해의 강습설비를 확충 강화할 것.

(다) 내선 양족이 원래 동조동근의 혈족이었던 사유를 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황조신(皇祖神)시대에 조선을 통치하시고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의 성스러운 유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춘천읍 우두산(牛頭山)의 땅에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를 제신(祭神)으로 하는 신궁(神宮)을